

발간등록번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G000E74-2018-2

2018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제1편 의료급여사례관리 개요

I. 개 요 3

- 1. 사례관리(의료급여법 제5조의2) 3
- 2. 정의 3
- 3. 목적 3
- 4. 필요성 3

II.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체계 4

- 1. 수행체계 4
- 2. 의료급여관리사 5
- 3. 예산 10

제2편 의료급여사례관리 운영

I. 사업기획 15

- 1. 지역유형 15
- 2. 사례관리 관리인원 15
- 3. 사례관리 수행횟수 16
- 4. 사례회의 17

차 례

제3편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I. 개 요	21
1. 정의	21
2. 목적	21
3. 관리대상	21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21
5. 업무흐름도	22
II.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실제	23
1. 대상자 선정	23
2. 관리계획 수립 및 수행	25
3. 평가 및 종결	44
4. 종결 후 계속 관리	44

제4편 고위험군 사례관리

I. 개 요	49
1. 정의	49
2. 목적	49
3. 관리대상	49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50
5. 업무흐름도	50
II. 고위험군 사례관리 실제	51
1. 대상자 선정	51
2. 요구 사정	58
3.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66
4. 수행	68
5. 평가 및 종결	79

제5편 장기입원 사례관리

I. 개 요	87
1. 정의	87
2. 목적	87
3. 관리대상	87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88
5. 장기입원 사례관리 - 심사 연계	88
6. 업무흐름도	89
II.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실제	90
1. 대상자 선정	90
2. 요구 사정	94
3.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110
4. 수행	112
5. 평가 및 종결	118
III. 의료급여기관 사례관리	121
1. 의료급여기관 대상 선정	121
2. 협조 요청	123
3. 간담회 개최	126
4. 방문 및 모니터링	128
IV. 사회복지시설 사례관리	129
1. 사회복지시설 대상 선정	129
2. 협조 요청	132
3. 간담회 개최	133
4. 방문 및 모니터링	135

차 례

제6편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I. 개 요	139
1. 정의	139
2. 목적	139
3. 관리대상	139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140
5. 업무 흐름도	141
II.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실제	142
1. 대상자 선정	142
2. 요구 사정	143
3.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145
4. 수행	148
5. 평가 및 종결	149

제7편 자원연계

1. 개요	155
2. 목적	155
3. 내용	155
4. 종류	155
5. 연계대상	156
6. 연계방법	157
7. 기타 협조사항	158

제8편 서식 165

제9편 부록 187

2018년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신규대조표

구분	2017년	2018년
제1편 의료 급여 사례 관리 개요	<p>II.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체계</p> <p>나. 인력배치</p> <p>2. 의료급여관리사</p> <p>1) 시·도 의료급여관리사</p> <p>나) 인원 : 17개 시·도청 27명</p> <p>2)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p> <p>가) 배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자 3,500명 이하 : 1명 ○ 수급권자 3,500명 초과 ~ 9,000명 이하 : 2명 ○ 수급권자 9,000명 초과 ~ 15,000명 이하 : 3명 ○ 수급권자 15,000명 초과 ~ 20,000명 이하 : 4명 ○ 수급권자 20,000명 초과 : 5명 <p>※ 2016년 배치현원 보존하여 적용</p> <p>나) 인원 : 228개 자치구 시·군·구청 54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관리사의 퇴직, 임신, 출산 등의 사유 발생 시 시·도 및 시·군·구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 ※ 의료급여관리사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채용자격 및 보수기준은 기존 의료급여관리사의 채용기준 및 보수체계를 준용 	<p>II.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체계</p> <p>나. 인력배치</p> <p>2. 의료급여관리사</p> <p>1) 시·도 의료급여관리사</p> <p>나) 인원 : 17개 시·도청 <u>26명</u></p> <p>2)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p> <p>가) 배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자 <u>3,000명</u> 이하 : <u>1명</u> ○ 수급권자 <u>3,000명</u> 초과 ~ <u>6,000명</u> 이하 : <u>2명</u> ○ 수급권자 <u>6,000명</u> 초과 ~ <u>9,000명</u> 이하 : <u>3명</u> ○ 수급권자 <u>9,000명</u> 초과 ~ <u>12,000명</u> 이하 : <u>4명</u> ○ 수급권자 <u>12,000명</u> 초과 ~ <u>15,000명</u> 이하 : <u>5명</u> ○ 수급권자 <u>15,000명</u> 초과 ~ <u>18,000명</u> 이하 : <u>6명</u> ○ 수급권자 <u>18,000명</u> 초과 ~ <u>21,000명</u> 이하 : <u>7명</u> ○ 수급권자 <u>21,000명</u> 초과 : <u>8명</u> <p>※ <u>2017년</u> 배치현원 보존하여 적용</p> <p>나) 인원 : 228개 자치구 시·군·구청 <u>610명</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관리사의 퇴직,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사유 발생 시 시·도 및 시·군·구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 ※ 의료급여관리사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채용자격 및 보수기준은 기존 의료급여관리사의 채용기준 및 보수체계를 준용 (단,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

구분	2017년	2018년
제1편 의료 급여 사례 관리 개요	<p>라. 업무내용</p> <p>1) 시·도 의료급여관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사업 실행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시·군·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수행 및 지원 ○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수퍼비전 제공 및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교육 및 훈련 ○ 장기입원 사례관리 지원 <p>2)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홍보, 교육 및 사례검토 및 연계 서비스 회의 ○ 사례회의 및 유관부서와 회의 개최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p>마. 직무교육</p> <p>1) 경력 의료급여관리사 교육</p> <p>바. 사업수행인력 안전대책</p>	<p>라. 업무내용</p> <p>1) 시·도 의료급여관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특성을 고려한 <u>사례관리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u> ○ 시·군·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u>수행 지원</u> ○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수퍼비전 제공 및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u>교육</u> ○ 장기입원 <u>사례관리</u> <p>2)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례검토회의, 유관부서와 연계회의 등 개최</u> ○ 지역사회 협력체계 <u>구축을 위한 사업 홍보 및 교육</u> <p>마. 직무교육</p> <p>1) 경력 의료급여관리사 교육</p> <p>③ <u>교육내용 : 이론 및 실무교육</u></p> <p>※ <u>자살예방 교과목 필수</u></p> <p>바. 사업수행인력 안전대책</p> <p>- <u>안전사고 대비 의료급여관리사 상해보험 가입 포함 안전대책 수립</u></p>
	<p>3. 예산</p>	<p>3. 예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인건비 : 월보수액, 시간외 근무수당,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액 및 퇴직금 등 법정 부담금 지급</u> ※ <u>출장여비는 의료급여기금 행정경비 항목에서 지출</u>

구분	2017년					2018년					
제2편 의료 급여 사례 관리 운영	I. 사업 기획					I. 사업 기획					
	1. 지역유형					1. 지역유형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입원 고위험 지역	상대적으로 다빈도 입원과 장기입원자 수가 많고 다빈도 장기입원 발생 기관이 많은 지역				입원 고위험 지역	상대적으로 <u>입원 의료이용이 높고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u>				
사례 관리 지역	외래 고위험군과 입원 고위험군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				혼합 지역	외래 <u>의료이용</u> 과 입원 <u>의료이용</u> 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					
운영	외래 고위험 지역				외래 고위험 지역	<u>외래 의료이용이 높고 입원 의료이용이 낮은 지역</u>					
제3편 신규 의료 급여 수급자 관리	I. 개요					I. 개요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					
	관리군	사례관리 기간	목표관리 횟수			관리군	사례관리 기간	목표관리 횟수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1개월	전화	서신	집합교육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1개월	서신	집합교육	방문	전화	
		필요시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1회	필요시	
		※ 원스크린 조회					※ 방문 : 사례관리 대상자인 신규 수급자의 5% (예시 : 연간 신규 수급자가 200명인 경우 10명 방문)				
		※ 원스크린 조회하면 가능 여부는 보장기관별 행복e음 권한 부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업무 특성 상 시·도와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원스크린 조회 가능 범위 상이				
제4편 고위 험군 사례 관리	I. 개요					I. 개요					
	3. 관리대상					3. 관리대상					
	○ 질병대비 과다 의료이용자로 의료쇼핑, 비합리적 의료이용,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이 의심되는 대상자					○ 질병대비 과다 의료이용자로 의료쇼핑, <u>약물과다, 중복처방 등 비합리적 의료 이용이 확인되는</u> 대상자					

구분	2017년		2018년		
제4편 고위 험군 사례 관리	II. 고위험군 사례관리 실제		II. 고위험군 사례관리 실제		
	1. 대상자 선정		1. 대상자 선정		
	가. 대상자 명단 확보		가. 대상자 명단 확보		
	2) 물리치료 이용 상위자 통보		2) 일회용 점안제·물리치료 이용 상위자 통보		
	구분	하반기	구분	상반기	하반기
	통보시기	12월	통보시기	4월	10월
	진료연월	전년도 9월 ~ 당해 연도 8월	진료연월	전년도 7~12월	당해 연도 1~6월
	통보기준	보장기관별 물리치료 이용 상위자 50위	통보기준	일회용 점안제 : 6개월 누적1,800관 (조제사용량) 이상 처방받은 자 물리치료 : 6개월 누적 150건 (명세건수) 이상 물리치료 받은 자	
통보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지원단 → 시·도 → 시·군·구	통보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지원단 → 시·도 → 시·군·구		
		실적보고	6월	12월	
※ 구체적인 사항은 「2018년 일회용 점안제·물리 치료 이용 상위자 사례관리 실시 계획」 참고					
제5편 장기 입원 사례 관리	II.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실제		II.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실제		
	2. 요구사정		2. 요구사정		
가. 기초자료 수집		가. 기초자료 수집			
		1) 행복e음 활용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자 조회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장기입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자 조회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장기입원 >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관리 > 장기요양등급조회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장기입원 >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등록 > 인적사항 > 장기요양등급조회			
		③ 복지서비스 조회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장기입원 >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관리 > 복지서비스 조회			

구분	2017년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장기입원 >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등록 > 인적사항 > 복지서비스 조회 2) DW시스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u>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조회</u> ● DW시스템 > 진료내역 > 급여내역 > 개인별진료내역(심사결정기준)
<p>제5편 장기 입원 사례 관리</p>	<p>4. 수행 나. 서비스 수행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 관외 (장기)입원자 관리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re> graph LR A[주소지와 입원 의료기관 소재지가 시·도 기준으로 다른 경우] --> B[관할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사례관리 실시] B --> C[관내 관리] A --> D[입원 의료기관 지역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의뢰] D --> E[의뢰받은 지역 의료급여 관리사가 사례관리 실시] E --> F[관외 관리] </pre> </div> <p>예) 주소지는 서울시 서초구로 경기도 수원시에 입원 중인 수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서초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사례관리 한 경우 : 관내관리 · 경기도 수원시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의뢰한 경우 : 관외관리 	<p>4. 수행 나. 서비스 수행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 관외 (장기)입원자 관리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re> graph LR A[주소지와 입원 의료기관 소재지가 시·도 기준으로 다른 경우] --> B[관할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사례관리 실시] B --> C[관외 관리] A --> D[입원 의료기관 지역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의뢰] D --> E[의뢰받은 지역 의료급여 관리사가 사례관리 실시] E --> F[관외 관리] </pre> </div> <p>예) 주소지는 서울시 서초구로 경기도 수원시에 입원 중인 수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서초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사례관리 한 경우 : 관외관리 · 경기도 수원시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의뢰·수행한 경우 : 관외관리
<p>제6편 집중 관문 사례 관리</p>	<p>1. 개요</p> <p>3. 관리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대비 과다 의료이용자로서 단기간의 개입으로는 의료이용 행태가 변화되지 않아 지속적 관찰 및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 ※ 사례관리 대상자 통보명단의 질병대비 부적정 과다 의료이용 중 상위 30% 이내인 자 	<p>1. 개요</p> <p>3. 관리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대비 과다 의료이용자로서 단기간의 개입으로는 의료이용 행태가 변화되지 않아 지속적 관찰 및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 ※ 사례관리 대상자 통보명단의 질병대비 부적정 과다 의료이용 중 상위 30% 이내인 자 우선

구분	2017년	2018년																																																																																										
제7편 자원 연계	<p>6.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보건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해 자원연계 의뢰 양식에 의거하여 연계하고 회신 결과 확인 	<p>6.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된 지역과 보건소를 통해 자원연계 의뢰 양식에 의거하여 연계하고 회신 결과 확인 																																																																																										
제8편 서식	<p>[서식6]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사업 대상자 의뢰서</p> <table border="1" data-bbox="289 681 773 1090"> <thead> <tr> <th>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 필요 정도</th> <th>매우 필요</th> <th>약간 필요</th> <th>보통</th> <th>거의 필요 없음</th> <th>완전 필요 없음</th> </tr> </thead> <tbody> <tr> <td>① 식사하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② 세수하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③ 머리감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④ 화장실 사용하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⑤ 옷벗고입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⑥ 걷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 필요 정도	매우 필요	약간 필요	보통	거의 필요 없음	완전 필요 없음	① 식사하기	()	()	()	()	()	② 세수하기	()	()	()	()	()	③ 머리감기	()	()	()	()	()	④ 화장실 사용하기	()	()	()	()	()	⑤ 옷벗고입기	()	()	()	()	()	⑥ 걷기	()	()	()	()	()	<p>[서식6]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사업 대상자 의뢰서</p> <table border="1" data-bbox="808 681 1316 1185"> <thead> <tr> <th>일상생활 수행능력</th> <th>완전 자립</th> <th>감독 필요</th> <th>약간의 도움</th> <th>상당한 도움</th> <th>전적인 도움</th> </tr> </thead> <tbody> <tr> <td>① 옷벗고입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② 세수하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③ 목욕하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④ 식사하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⑤ 방 밖으로 나오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⑥ 화장실 사용하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장기요양등급 및 신청 여부</td> <td colspan="5">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 ⑥ 신청 중 ⑦ 미 신청 </td> </tr> </tbody> </table>	일상생활 수행능력	완전 자립	감독 필요	약간의 도움	상당한 도움	전적인 도움	① 옷벗고입기	()	()	()	()	()	② 세수하기	()	()	()	()	()	③ 목욕하기	()	()	()	()	()	④ 식사하기	()	()	()	()	()	⑤ 방 밖으로 나오기	()	()	()	()	()	⑥ 화장실 사용하기	()	()	()	()	()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 여부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 ⑥ 신청 중 ⑦ 미 신청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 필요 정도	매우 필요	약간 필요	보통	거의 필요 없음	완전 필요 없음																																																																																							
① 식사하기	()	()	()	()	()																																																																																							
② 세수하기	()	()	()	()	()																																																																																							
③ 머리감기	()	()	()	()	()																																																																																							
④ 화장실 사용하기	()	()	()	()	()																																																																																							
⑤ 옷벗고입기	()	()	()	()	()																																																																																							
⑥ 걷기	()	()	()	()	()																																																																																							
일상생활 수행능력	완전 자립	감독 필요	약간의 도움	상당한 도움	전적인 도움																																																																																							
① 옷벗고입기	()	()	()	()	()																																																																																							
② 세수하기	()	()	()	()	()																																																																																							
③ 목욕하기	()	()	()	()	()																																																																																							
④ 식사하기	()	()	()	()	()																																																																																							
⑤ 방 밖으로 나오기	()	()	()	()	()																																																																																							
⑥ 화장실 사용하기	()	()	()	()	()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 여부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 ⑥ 신청 중 ⑦ 미 신청																																																																																											
제9편 부록	<p>1. 의료급여법령 개정내용</p> <p>2. 감염병</p>	<p>1. 타 사례관리사업 현황</p> <p>2. 지역별 자살예방센터 목록</p> <p>3. 연도별 주요 연구용역 목록</p>																																																																																										



의료급여사례관리 개요

I. 개요

- 1. 사례관리(의료급여법 제5조의2) 3
- 2. 정의 3
- 3. 목적 3
- 4. 필요성 3

II.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체계

- 1. 수행체계 4
- 2. 의료급여관리사 5
- 3. 예산 10

I 개 요

1. 사례관리(의료급여법 제5조의2)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정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목적으로 수급권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건강 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3. 목적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

4. 필요성

- 수급권자의 의료욕구에 신속히 대응
 - 다빈도 복합상병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밀착상담 및 관리
 -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관리 정보 제공,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 연계지원
- 수급권자·의료공급자의 합리적 의료관행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

II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체계

1. 수행체계

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방향 기획 및 사업운영 총괄
- 의료급여사례관리 관련 정책 수립
- 의료급여사례관리 예산 지원 및 기금 관리

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관련 각종 계획 수립 및 집행상황 관리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실태조사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 교육 및 평가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지침 및 제도개선 지원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모형개발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사업평가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운영세척상 「지원단」 역할 및 기능
- 기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개발 및 사업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시·도 의료급여 담당부서

- 시·도 자체 사업 계획 수립 및 성과 보고
- 사업운영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예산 확보, 관리 및 운용, 결산 보고
- 시·군·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지도 점검

라.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

- 대상자 사례관리 수행
- 시·군·구 자체사업 계획 수립 및 성과 보고
- 보장기관 특성에 따른 특화사업 실시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 DB 구축
 - 진료비, 급여일수 등 의료이용 행태 자료 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사례관리 대상자 통보명단 및 의료이용 현황 제공
 - 총 급여일수, 총 진료비, 이용 의료급여기관 수, 의약품 중복일수, 외래 내원일수, 투약일수, 입원일수, 병용금기 등

2. 의료급여관리사

가. 역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3항)

- 1)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2)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 3)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 및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수급권자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 요양방법의 지도
- 4) 수급권자와 보장시설 등 보건복지자원과의 연계
- 5) 그 밖의 의료급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인력 배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이하 “의료급여 관리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인원을 배치하되, 보장기관의 수급권자 수, 수급권자의 질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더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 1명. 다만, 관할 시·군·구의 수가 15개를 초과하는 경우 1명을 더 배치할 수 있다.
2.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1명

1)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가) 배치기준

- 1개 ~ 15개 시·군·구청 이하 : 1명
- 16개 ~ 31개 시·군·구청 이하 : 2명
- ※ 2017년 배치현원 보존하여 적용

나) 인원 : 17개 시·도청 26명(세종특별자치시 포함)

2)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가) 배치기준

- 수급권자 3,000명 이하 : 1명
- 수급권자 3,000명 초과 ~ 6,000명 이하 : 2명
- 수급권자 6,000명 초과 ~ 9,000명 이하 : 3명
- 수급권자 9,000명 초과 ~ 12,000명 이하 : 4명
- 수급권자 12,000명 초과 ~ 15,000명 이하 : 5명
- 수급권자 15,000명 초과 ~ 18,000명 이하 : 6명
- 수급권자 18,000명 초과 ~ 21,000명 이하 : 7명
- 수급권자 21,000명 초과 : 8명
- ※ 2017년 배치현원 보존하여 적용

나) 인원 : 228개 자치구 시·군·구청 610명

- ※ 의료급여관리사의 퇴직,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사유 발생 시 시·도 및 시·군·구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
- ※ 의료급여관리사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체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채용자격 및 보수기준은 기존 의료급여 관리사의 채용기준 및 보수체계를 준용(단,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함)

다. 업무권한

- 전자결재 ID 부여 : 공문 발송 등 업무수행 체계의 효율성 확보
- 새울행정시스템 이용 ID 부여
- 공공기관용 외부 메일 계정 부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이용 ID 부여
-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DW) 이용 ID 부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이용 권한 공유
 - 홈페이지(<http://www.hira.or.kr>/바로가기서비스/보장기관/보장기관 사례관리 자료) 접속을 위한 보장기관별 ID 공유
- 의료급여관리사 신분증 발급
 - 방문상담,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시 채용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있는 자임을 표시
 - ※ 공무원증에 준하는 신분증을 발급

〈 신분증 : 예시 〉

- 전 면 -

사진 (반명함판)
홍길동
○○시

- 후 면 -

소속	○○시
직위/직급	의료급여관리사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00.00
	2000.00.00
	○○시장(직인)
의료급여시행규칙 제2조의3에 규정된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행된 것임	
☎ 031-123-1234	

라. 업무내용

1)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 시·도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시·군·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수행 지원
- 사례관리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보장기관 현장점검 실시 및 평가
- 보장기관 사례관리 실적관리·모니터링 및 보고
-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수퍼비전 제공 및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교육
- 장기입원 사례관리
- 시·도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화사업
- 지역사회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급여사례관리 홍보
- 사례관리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사례검토회의 등 개최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시·군·구와 업무 협력

2)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신규 수급권자, 외래이용자, 장기입원 관리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조건부 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 상해요인조사, 중복청구 업무 등
- 시·군·구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실적보고 및 자체평가 실시
- 사례검토회의, 유관부서와 연계회의 등 개최
- 보장기관 특성에 따른 특수사업 실시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홍보 및 교육
 - ※ 의료급여 자격관리, 처분사전통지,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 관련 업무는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이 수행(의료급여 사례관리와 관련 없는 업무를 의료급여관리사가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

마. 직무교육(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4항, 제5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 시간은 연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간,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경력 의료급여관리사 교육

- ① 대상 :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 ②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③ 교육내용 : 이론 및 실무교육
※ 자살예방 교과목 필수

2)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교육(배치 후 최소 분기 내에 이수)

- ① 대상 : 신규 의료급여관리사(경력 1년 미만인 자로, 신규 직무교육 미 이수자)
- ②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③ 교육내용 : 이론 및 현장실무(단, 현장실무교육은 시·도 의료급여관리사 주관)

3) 시·도 주관 교육

- ① 대상 :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 ② 교육횟수 : 연 1회 이상
- ③ 교육내용 :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관련 교육, 현장실무교육
(신규 의료급여관리사 대상)

4) 사이버 교육

- ① 대상 :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 ② 교육내용 : 의료급여사업안내, 약물의 이해 I·II·III

바. 사업수행인력 안전대책

- 보장기관 : 매년 초 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 시·도 및 시·군·구는 사건발생 대비 현장 대처요령 및 감염병 예방 교육을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실시
 - 위험이 예상되는 대상자 방문 시 반드시 사전 내부보고 및 2인 1조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 등) 방문 추진(협조)
 - 안전사고 대비 의료급여관리사 상해보험 가입 포함 안전대책 수립

3. 예산

- 인건비 : 월보수액, 시간외 근무수당,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액 및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 지급
 - ※ 출장여비는 의료급여기금 행정경비 항목에서 지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의료급여사례관리 운영

I. 사업기획

1. 지역유형	15
2. 사례관리 관리인원	15
3. 사례관리 수행횟수	16
4. 사례회의	17

I 사업기획

1. 지역유형

- 지역 및 수급권자 특성을 분석하여 아래 지역유형 중에서 선정

구 분	내 용
입원 고위험지역	상대적으로 입원 의료이용이 높고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
혼합지역	외래 의료이용과 입원 의료이용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
외래 고위험지역	외래 의료이용이 높고 입원 의료이용이 낮은 지역

2. 사례관리 관리인원

- 선정된 지역유형에 따른 연간 사례관리 목표 대상자 수 설정

〈 연간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 대상자 수 〉

지역 구분	(A) 장기입원	(B) 고위험군	(C) 집중관리군	신규 수급권자	총계
입원고위험	30~40명	50~60명	10명	전수관리(200명)	300명
혼합	15~25명	65~75명	10명	전수관리(200명)	300명
외래고위험	5~15명	75~85명	10명	전수관리(200명)	300명

※ (A) + (B) = 총합 90명 관리
 ※ 신규 수급권자 200명 이하 지자체의 경우 해당 인원만 관리

○ 월별·분기별 사례관리 대상군에 따른 사례관리 목표 대상자 수 설정

〈 월별·분기별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사례관리 대상자 수 〉

(단위 : 월, 명)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장기입원자	0~3	0~3	1~4	0~3	0~3	1~4	0~3	1~3	1~4	1~4	0~3	0~3	5~40
고위험군	4~7	4~7	4~7	5~8	4~7	4~7	4~7	5~7	4~7	4~7	4~7	4~7	50~85
집중관리군	3	3	4	연중 관리(12월 중 일괄종결)									10
소계	10	10	12	8	7	8	7	8	8	8	7	7	100
계	32			23			23			22			
신규 수급권자 (전체)	매월 선정된 전체 대상자 관리												200
총 계	300명												

※ 상기 인원은 종결기준이며, 지역유형 및 연간 목표관리 인원 수를 고려하여 분기별·월별·주별 사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대상자를 등록·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방문 포함)

※ 단, 집중관리군은 등록일자 기준

3. 사례관리 수행횟수

○ 대상자별 사례관리 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에 의거 연간 업무량 설정

〈 대상자별 사례관리 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

분 류	사례관리 기간	목표관리 횟수			
		방문	전화	서신	집합교육
장기입원자	6개월	2회 이상	6회 이상	수시	-
고위험군	3개월	2회 이상	4회 이상		
집중관리군	연중 관리 (12월 일괄종결)	대상자 특성에 따라 자율 수행하되 고위험군 수행서비스 기준 이상 개입			
신규 수급권자 (전체)	1개월	1회*	필요시 전화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 사례관리 대상자인 신규 수급자의 5% (예시 : 연간 신규 수급자가 200명인 경우 10명 방문)

4. 사례회의

복합적인 욕구 또는 문제를 보유한 대상자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사례관리 사업의 질(Quality) 향상 도모

가. 유관부서와 회의

- 의료급여 관련 부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 참여하여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축 마련 또는 개선방안 논의

나. 사례검토회의

- 보장기관 내 정기적인 사례검토회의 개최
 - ※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1명인 경우 해당 시·도 의료급여관리사와 함께 사례검토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I. 개 요

- 1. 정의 21
- 2. 목적 21
- 3. 관리대상 21
-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21
- 5. 업무흐름도 22

II.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실제

- 1. 대상자 선정 23
- 2. 관리계획 수립 및 수행 25
- 3. 평가 및 종결 44
- 4. 종결 후 계속 관리 44

I 개 요

1. 정의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을 최초로 취득한 자로서 1개월 이내인 자 또는 재 취득자 관리

2. 목적

의료급여수급권을 처음 취득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초기에 의료급여제도 및 적정 의료이용을 안내함으로써 잠재적 과다이용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위함

3. 관리대상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전체 대상자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가 연간 200명 미만인 지역에 한해서는 해당 인원만 관리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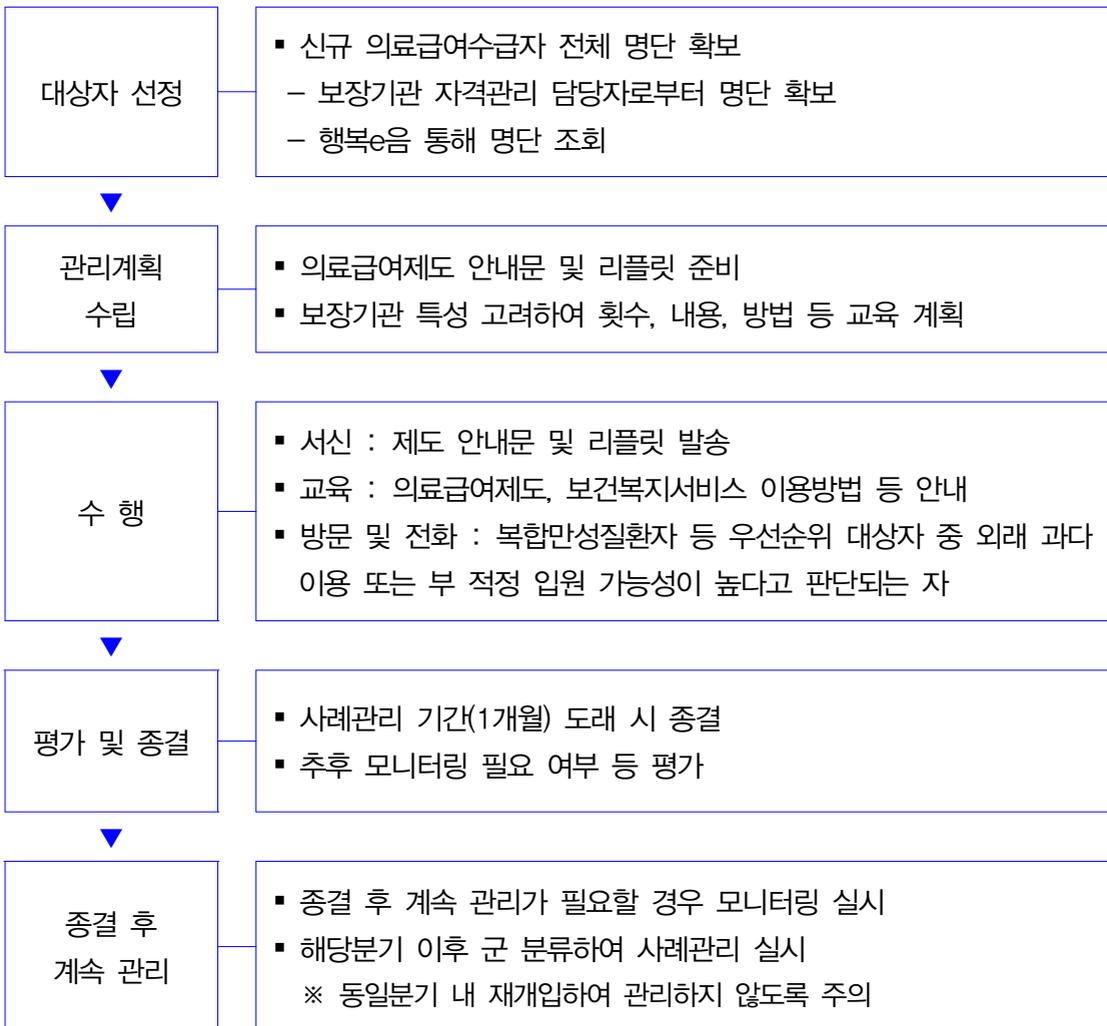
관리군	사례관리 기간	목표관리 횟수			
		서신	집합교육	방문	전화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1개월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1회	필요시

※ 방문 : 사례관리 대상자인 신규 수급자의 5% (예시 : 연간 신규 수급자가 200명인 경우 10명 방문)

※ 교육 : 보장기관 특성 고려하여 진행하되, 개최 시 '교육' 용어 사용(명시)을 지양할 것
 예) 의료급여 바로알기,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건강강좌 등

대 상	교육 횟수	교육 방법	내 용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	반기별 1회 이상	※ 아래 교육 방법 중 선택 • 집합교육/동별 순회 교육 • 소그룹교육 • 개별교육(1:1 방문교육)	• 의료급여제도 • 자가 건강관리 •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5. 업무흐름도



II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실제

1. 대상자 선정



- 1) 보장기관 자격관리 담당자로부터 월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명단 확보
- 2)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명단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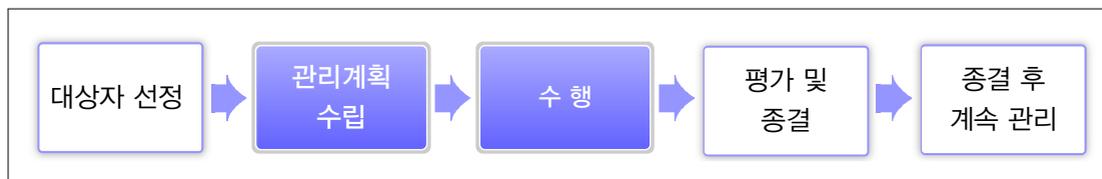


※ 월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전체 대상자를 관리 목표로 하되, 신규 의료급여수급자가 연간 200명 미만으로 관리인원이 부족할 경우 관외전입 및 보호유형 변경까지 포함하여 관리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목록 조회 : 행복e음 → 의료급여 → 자격관리 → 수급권자 목록 조회 → 관리행정동 및 취득일자 입력



2. 관리계획 수립 및 수행



가. 서신

- 매월 전체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 및 리플릿 등 발송
 - 의료급여사례관리 개요
 -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됨 안내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제도적 차이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시·군·구청명, 담당 부서명 및 담당자 연락처 등

 예시 : 『의료급여제도 안내』 소책자 발송 공문

의료급여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군·구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분들께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 및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해 『의료급여제도 안내』 소책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 책자를 받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 시·군·구청 ◇◇◇과(의료급여관리사 ○○○, ☎ 123-4567)로 문의바랍니다.

시·군·구청장

예시 : 의료급여제도 안내문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 비교

구 분	의료급여(1,2종)	건강보험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국가유공자, 새터민 등)	지역 및 직장 가입자
재원조달	조세(국고+지방비)	보험료(일부 국고)
급여절차	3단계 (의원 → 병원 → 3차 의료기관)	2단계 (의원, 병원,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자격증명	의료급여증, 신분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신분증명서 등

□ 1종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약국	CT, MRI	보건기관
외래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2,000원	2,500원	500원	급여비용의 5%	무료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1,500원	2,000원			
입원		없음					

□ 2종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약국	CT, MRI	보건기관
			만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				
외래 (등록암 환자 10%)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1,500원	급여비용의 15%	급여비용의 15%	500원	급여비용의 15%	무료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1,000원					
입원		급여비용의 10% (등록암환자 5%)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 의료급여일수 :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 받는 급여일수를 합한 일수입니다.
- 의료급여 상한일수 :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금으로 의료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로, 상한일수 초과 시 초과일수 해당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질환별 상한일수】

질환 구분	상한일수
등록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등록 중증, 희귀난치성 및 만성고시질환이 해당하지 않은 질환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 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장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조건부 연장승인 : 희귀난치성질환 중 한 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일 초과, 만성 고시질환 중 한 질환으로 455일 초과, 기타질환으로 545일을 초과하여 의료 급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지정한 병·의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정병원 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 받아** 이용해야 하며, 의뢰서 없이 이용할 경우에는 의료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의료급여중 타인 대여는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의료급여법 제3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00. 0. 0.

시·군·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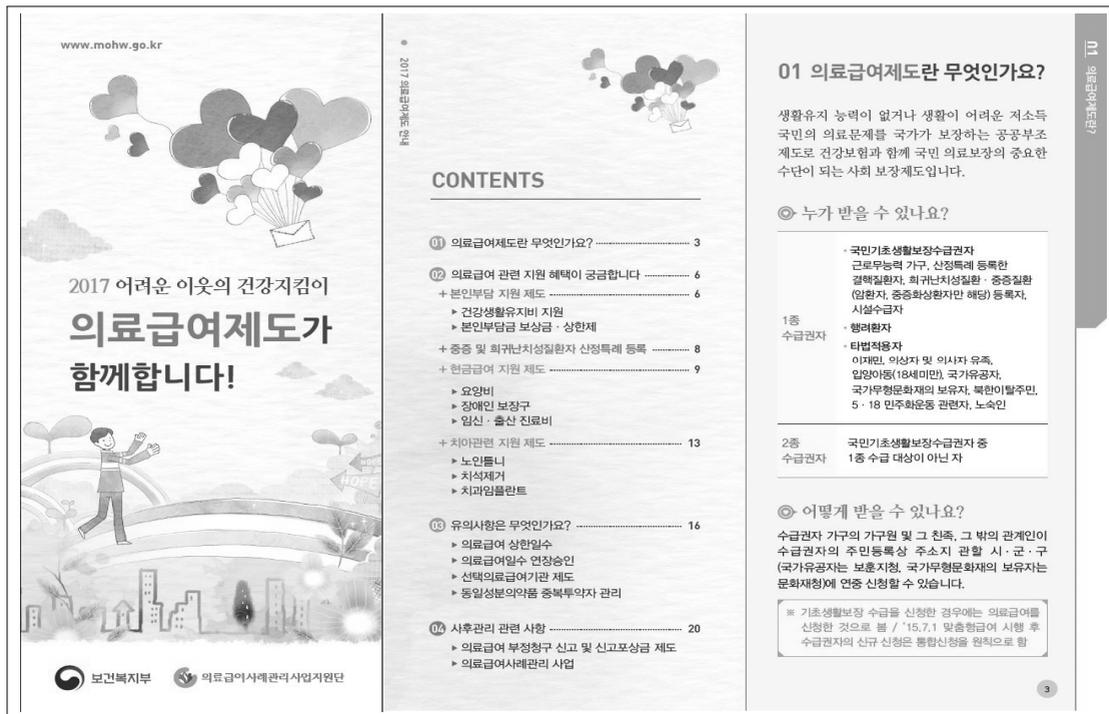
담당자 : ◇◇◇과 ○○○(☎ 123-4567)

리플릿 활용 :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또는 자체제작 자료

〈 『의료급여제도 안내』 리플릿 다운로드 방법 〉



의료급여제도 안내 리플릿



※ 「2018년 의료급여제도 안내」 리플릿은 추후 제작 예정임

예시 : 의료급여제도 안내문 및 리플릿 발송 공문

○○시·군·구

수신자 김◇◇ 외 ○○명

(경유)

제 목 의료급여제도 안내문 및 리플릿 발송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업무 지침 『20○○년 의료급여사업안내』

나. □□□과-○○(20○○.○.○.)“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실시 계획”

2. 위와 관련, 20○○년 ○월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의료급여제도 안내문 및 리플릿을 송부하오니 의료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년 ○월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명단

2. 의료급여제도 안내문 1부

3. 의료급여제도 안내 리플릿(별첨). 끝.

시·군·구청장

※ 일반기안으로 내부결재 시 수신자를 ‘별첨 안내’로 명시하고, 비공개 문서로 발송

※ 내부결재 득한 후 서신 발송

나. 교육

구 분	내 용
교육대상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전체 대상자
교육방법	○ 아래의 교육방법 중 보장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실시 - 집합교육/동별 순회교육 - 소그룹교육 - 개별교육(1:1 대면교육)

※ 교육은 교육방법 구분 없이 계획 및 결과 보고 등 반드시 내부결재 득할 것(실적인정 및 평가 시 증빙자료 제출)

1) 집합교육(권역별 또는 동별 집합교육)

가) 교육횟수 : 반기별 1회 이상

나) 교육내용

- 의료급여제도 안내
- 자가 건강관리방법
- 보건복지서비스 이용 안내(리플릿, 자체교육 등 자료 활용)

다) 타 부서와 연계

- 보건소 : 혈압·혈당 체크, 상담을 통해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의 중요성 등 교육
- 치매안심센터 : 치매조기검진, 치매증상 및 예방방법 등 교육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 ※ 타 부서 연계 시 협조문서 발송 전 사전 구두 협의 필요
 - ※ 의료급여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집합교육 장소에서 개별상담은 지양하며, 필요시 별도 면담 시행

2) 소그룹교육

가) 교육횟수 : 분기별 또는 수시

나) 교육내용 : 집합교육 참조하여 소그룹 특성에 맞게 제공

다) 교육방법 : 대상자 거주지 등 고려하여 2인 이상 대상으로 교육 제공

- ※ 지역면적이 넓거나 농어촌 지역으로 집합이 어려운 경우 실시

3) 개별교육(1:1 대면교육)

가) 교육횟수 : 월별 또는 수시

나) 교육내용 : 집합교육 참조하여 의료급여수급자 개별 특성에 맞게 제공

다) 교육방법 : 방문 또는 내소를 통한 1:1 교육 제공

🔄 집합교육 시 준비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교육 대상자 명단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을 통해 동별·권역별로 월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명단 정리 ※ 교육 당일 출석부로 활용 가능
교육 전 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 주민센터 시설 담당자와 교육 일정 등 협의(동별 순회교육 시) • 교육 장소 예약 • 설비 예약 : 노트북, 빔 프로젝트, 스크린, 마이크 등 ※ 필요시 공문 발송
교육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리플릿, PPT 등 자료 활용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홈페이지 → 자료실 → 홍보자료 참조 • 보장기관 자체 교육 자료 준비
교육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관리사 및 외부자원 활용 예시) 약물 오남용 교육 시 보건소 협조 요청
교육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기관 여건 등 고려하여 계획 수립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자료, 지역신문 등 활용 • 특별회계 담당자와 예산 확인 후 배너 및 현수막 제작
교육 당일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표지판 부착 • 전산 및 설비 작동 등 전반적인 제반사항 확인 • 출석부, 불펜, 음료, 홍보물 등 준비
교육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성취도, 만족도 등 설문 조사

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계획 수립 공문

○○시·군·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 □□□과-○○(20○○.○.○.)
2.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과 올바른 의료급여기관 이용방법 안내를 통해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붙임 1.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계획서 1부
2. 약물교육자료 1부. 끝.

시·군·구청장

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권역별)집합교육 계획서

『의료급여제도 안내』 집합교육 계획
- 20○○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과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방법을 알리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I. 개 요

- 근 거
 - 의료급여법 제5조의2 「사례관리」
 - 보건복지부 업무 지침 『20○○년 의료급여사업안내』
- 대 상 : 20○○년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 기 간 : 20○○.○.○.(화) ~ 20○○.○.○.(수)

- 장 소 : ◇◇동 주민센터
- 내 용
 - 의료급여제도 안내(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등)
 -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방법
 - 혈압·혈당 체크 등 대상자 기초건강조사 및 건강 상담
 - 질의응답 등
- 방 법
 - 0개동을 0권역으로 묶어 권역별 집합교육 실시
 - 리플릿 제공 및 PPT, 동영상 자료 활용

II. 세부 추진계획

- 권역별 교육일정

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동 별	003,8동	004,7동	005,6동	001,2동
날 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계획

시간	진행 내용	비고
10:00~10:10	의료급여제도 취지 설명	담당자
10:10~10:20	의료급여제도 안내(연장승인 신청,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의료급여관리사
10:20~10:30	만성질환 관리방법 안내 및 질의응답	보건소 만성질환관리담당
10:30~10:50	맞춤형 개인 기초건강조사(혈압·혈당 체크 등)	보건소 만성질환관리담당
10:50~11:00	총평	의료급여관리사

III. 소요예산

- 예상 소요예산 : 000,000원
 - 산출내역 : 현수막 000,000원 + 음료 00,000원
 - 예산과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과 ◇◇◇비

IV. 행정사항

-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담당자 교육지원 협조 요청
- 지역 특성상 차량 필요시 차량지원 협조 요청(해당 과)

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참석 안내 공문 (수신자 : 의료급여 수급자)

○○시·군·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참석 안내

1.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 시·군·구에서는 2000년 0월 ~ 0월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올바른 약물 복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많은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2000년 0월 ~ 0월까지 선정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나. 일시 : 2000.0.0.(목) 오전 10시

다. 장소 : □□□대회의실

라. 내용 : 의료급여제도 안내, 올바른 약물 복용법 등. 끝.

시·군·구청장

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약물교육 의뢰 공문 (수신자 : 보건소)

○○시·군·구

수신자 □□□과장

(경유)

제 목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약물교육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 안내, 자가 건강관리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으로, 귀 부서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의뢰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일정표 1부. 끝.

시·군·구청장

 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협조 요청 공문 (수신자 : 각 주민센터)

○○시·군·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협조 요청

1.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건강관리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자 하오니 대상자의 참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2. 교육 시 필요한 기기(스크린, 빔 프로젝트 등) 비치 여부를 20○○.○○.○○. (목)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계획서 1부
 2. 동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명단 1부
 3. 교육 일정 및 기기 확인 양식 1부. 끝.

시·군·구청장

 붙임자료 예시 : 교육 일정 및 기기 확인 양식

구 분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비 고
동 별	□□ 3,8동	□□ 4,7동	□□ 5,6동	□□ 1,2동	
장 소	□□ 3동	□□ 4동	□□ 5동	□□ 2동	
날 짜	20○○.○○.○○.	20○○.○○.○○.	20○○.○○.○○.	20○○.○○.○○.	
시 간	15시	15시	15시	14시	

장 소	빔 프로젝트	노트북	스크린	손 세정제
□□ 3동	○	○	○	○
□□ 4동	×	○	×	○
□□ 5동	○	×	○	○
□□ 2동	○	×	×	○

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전 보도자료 게재 협조 공문

○○시·군·구

수신자 홍보 담당부서

(경유)

제 목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강좌 개최 보도자료 제출

1.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건강강좌 개최 예정입니다.
2. 이에 관련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언론매체(주요일간지, 지역신문 등)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시·군·구청장

붙임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전 보도자료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시·군·구(시·군·구청장:○○○)는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건강관리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20○○년 ○월 ○일(목) ◇◇◇대회의실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방법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등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 내용과 자가 건강관리방법에 대한 것이며, 보건소 △△△과와 연계하여 올바른 약물 복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군·구는 이번 강좌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비용의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 정』

- ◆ 대상 : 20○○년 ○월 ~ 20○○년 ○월까지 선정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 ◆ 일시 : 20○○. ○. ○. (목) 오전 10시
- ◆ 장소 : ◇◇◇대회의실
- ◆ 문의 : □□시·군·청 △△△과 (☎ 123-4567)

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권역별)집합교육 결과 보고

『의료급여제도 안내』 집합교육 실시 결과 보고
- 2000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

I. 개요

- 참석자 : 2000년 0월 이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 추진일정

회차	일시	동별	참석 인원	장소
1	0월 0일(화)	00동	00명	00시·군·구청 대회의실
2	0월 0일(수)	00동	00명	00동 주민센터

- 교육 내용 및 강사

교육 내용	교육 강사
-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 차이 - 의료급여제도 안내(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 등)	의료급여관리사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치매 등) 관리 및 합병증 예방방법 - 혈압·혈당 체크 등 개인 기초건강 조사 및 건강 상담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담당자

II.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000,000원
 - 산출내역 : 현수막 000,000원 + 음료 00,000원
 - 예산과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00과 0000비

III. 향후계획

- 필요시 가정 방문·전화 상담 등 개인별 맞춤 교육 실시
- ※ 교육 사진

00회의실(2000.0.0.(화) 14:00~)



예시 : 교육 평가 설문지

연번	주요 항목	세부 문항	평가		
			만족	보통	미흡
1	교육 주제의 적절성	교육 주제는 적절하였는가?			
2	교육 시간의 적절성	교육 시간은 적절하였는가?			
3	교육 장소의 적절성	교육 장소는 적절하였는가?			
4	교육 내용의 유익성	교육 내용은 유익하였는가?			
5	교육 내용의 이해도	교육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는가?			
6	교육 만족도	교육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7	교육 요구도	앞으로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후 보도자료 게재 협조 공문

○○시·군·구

수신자 홍보 담당부서

(경유)

제 목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결과 보도자료 제출

1.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건강관리방법 안내를 위한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2. 이에 강좌 결과내용을 홍보하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를 ○○시·군·구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후 보도자료 1부

2.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동별 교육 사진(JPG 파일) 3부. 끝.

시·군·구청장

붙임예시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후 보도자료

□□시·군·구

보도자료

제공일자	2000년 0월 0일	
담당부서	◇◇◇◇과 (☎ 000-0000)	
과장		
계장		
의료급여관리사		
□ 사진 첨부 ■ 총 1쪽		

□□시·군·구,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건강강좌 개최

□□시·군·구는 지난달 0일 □□시·군·구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건강강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날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는 동영상 시청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 작성방법, 올바른 의료급여기관 이용방법 등 의료급여제도 전반적인 내용과 건강관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시·군·구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0명이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이용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전 예방하고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낭비되는 의료급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의료급여제도 안내 등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시·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다. 방문 및 전화

1) 대상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자, 복합만성질환자, 독거노인, 65세 이상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로 외래 과다이용 또는 입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

2) 대상자 선정

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 업무 특성 상 시·도와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원스크린 조회 가능 범위 상이

복지대상자 원스크린 조회 (시도용) : 행복e음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 원스크린(시도용)



복지대상자 원스크린 조회 (시군구용) : 행복e음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
→ 복지대상자 원스크린 조회



※ 소득재산 상세, 공제부채, 구비서류 반영, 신청조회, 조사결정 조회 권한은 없음.

나) DW시스템(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활용



DW시스템(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개인별 진료내역 화면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의료이용 내역이 없을 수 있으므로 추후 반드시 재확인 필요

3. 평가 및 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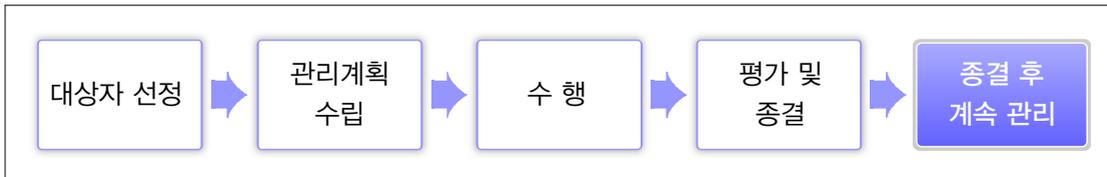


가. 추후 모니터링 필요 여부 평가

나. 서비스 수행 후 관리기간(1개월) 도래 시 종결

다. 행복e음 시스템 종결 처리

4. 종결 후 계속 관리



가. 종결 후 지속관리가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실시

나. 해당 분기 이후 군 분류하여 사례관리 실시

※ 동일분기 내 재개입하여 관리하지 않도록 주의



PART

4

고위험군 사례관리

I. 개요

1. 정의	49
2. 목적	49
3. 관리대상	49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50
5. 업무흐름도	50

II. 고위험군 사례관리 실제

1. 대상자 선정	51
2. 요구 사정	58
3.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66
4. 수행	68
5. 평가 및 종결	79



고위험군 사례관리

I 개 요

1. 정의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부 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 상담, 자원연계 등을 수행 하는 일련의 과정

2. 목적

질병대비 과다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재정 안정화 기여

3. 관리대상

- 질병대비 과다 의료이용자로 의료쇼핑,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 비합리적 의료이용이 확인되는 대상자
 - 사례관리 대상자 통보명단에서 총 급여일수, 총 진료비, 외래내원일수, 투약일수, 이용 의료기관 수, 의약품 중복일수, 입원일수, 주·부상병명 등 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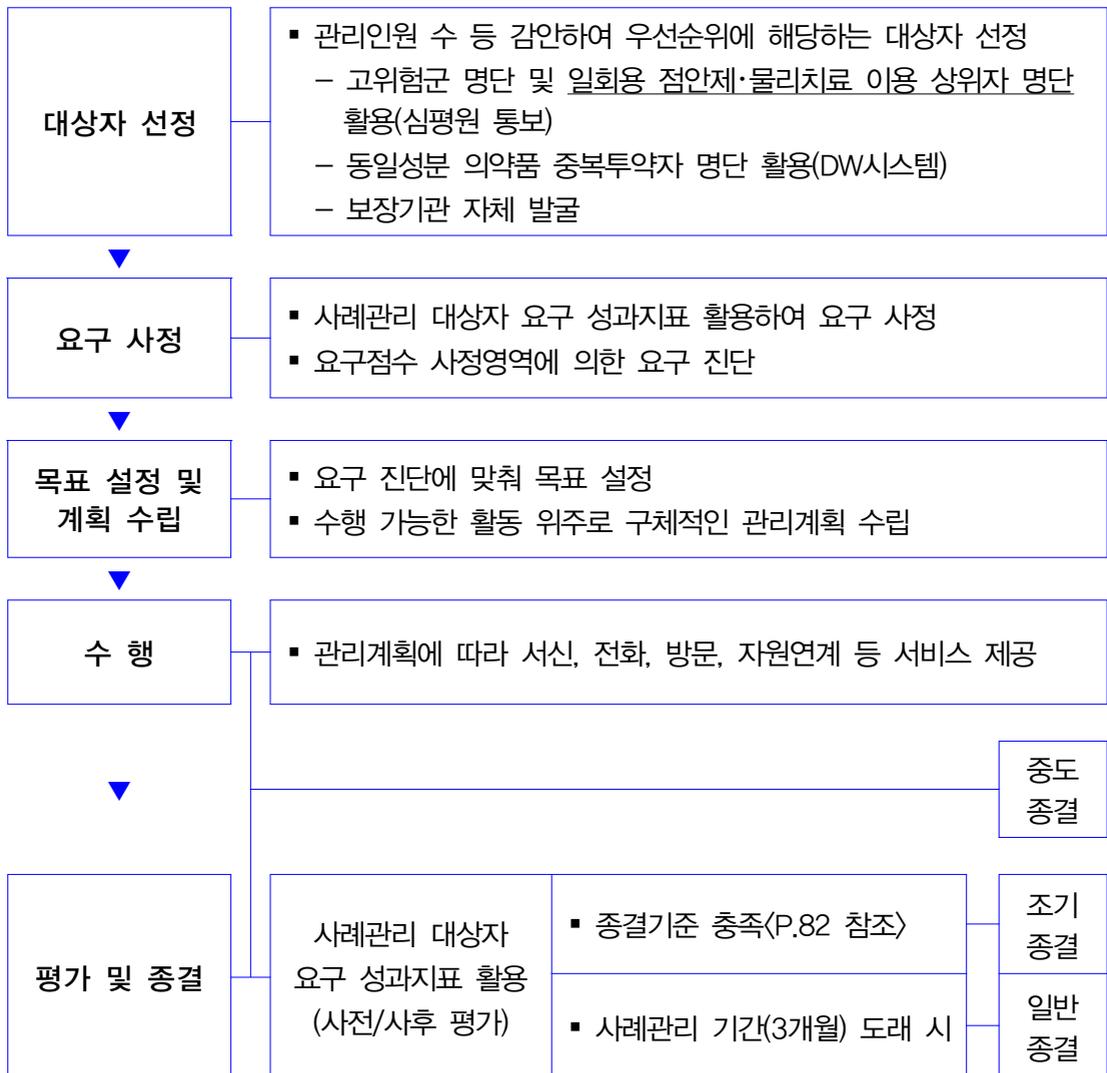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 고위험군 사례관리 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

관리군	사례관리 기간	목표관리 횟수		
		방문	전화	서신
고위험군	3개월	2회 이상	4회 이상	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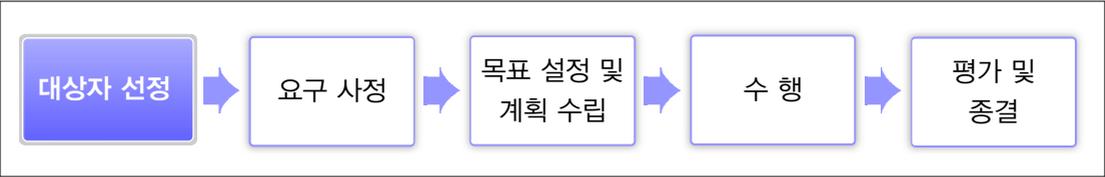
※ 신변에 위험이 예측되는 대상자를 가정방문 상담할 경우 개인의 신변보호에 각별히 유념 (공익근무요원 동행 등 2인 이상 방문)

5.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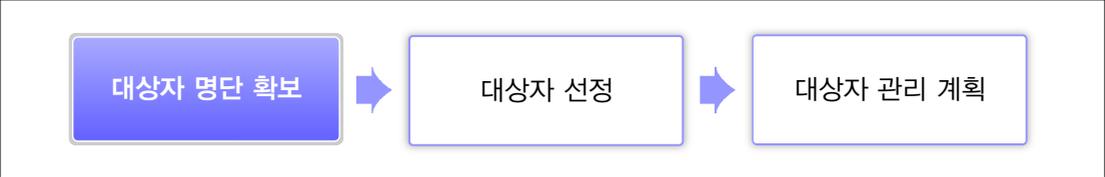


II 고위험군 사례관리 실제

1. 대상자 선정



가. 대상자 명단 확보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고위험군 명단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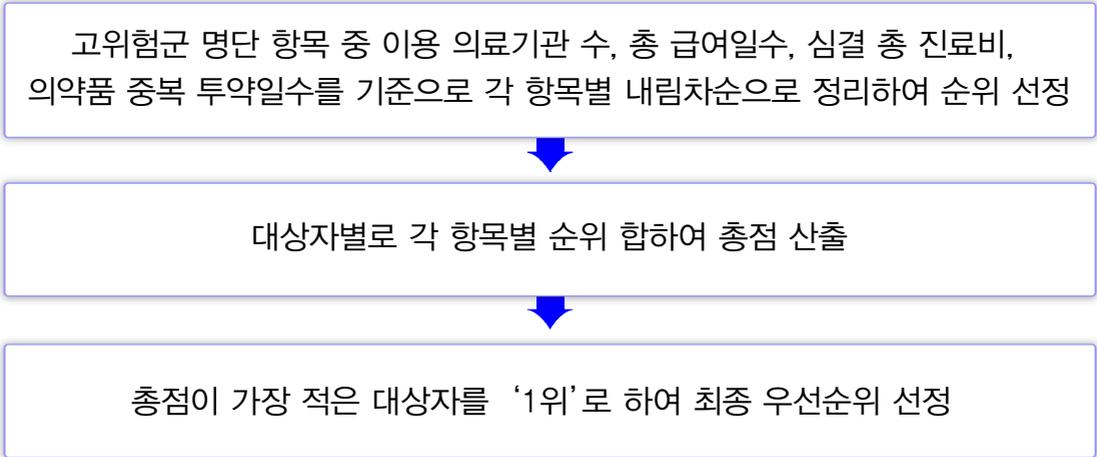
고위험군 명단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보장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보장기관서비스 → 고위험군 명단

The screenshot shows the HIRAS website interface for searching high-risk group members. The search form includes fields for '수급원자 구분' (Beneficiary Type), '선택하세요' (Select), '보장기관' (Insurance Company), '통보차수' (Notification Count), '소재지' (Residence) with radio buttons for various regions, '기관수' (Institution Count), '급여일수' (Benefit Days), '심결승진료비' (Decision/Progression Fee), and '의약품종류일수' (Medication Type Days). A '검색하기' (Search) button is located below the form. Below the search form, there is a table with columns: 보장기관 (Insurance Company), 주민번호 (Resident ID), 성명 (Name), 기관수 (Institution Count), 급여일수 (Benefit Days), 내원일수 (Visit Days), 심결승진료비 (Decision/Progression Fee), 약국투약일수 (Pharmacy Medication Days), 의약품종류일수 (Medication Type Days), 병종급기 (Disease Category), 순위 (Rank), 이견제공여부 (Disagreement/Correction), and 정신과임내원일수 (Psychiatry Inpatient Days). A note at the bottom indicates '조회건수 : 0건 (- 주민번호 클릭 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umber of search results: 0 cases (- click on resident ID to view detailed information)).

○ 고위험군 명단 통보 기준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통보시기	3월	9월
진료연월	전년도 6 ~ 11월	전년도 12월 ~ 당해 연도 5월
총 급여일수	350일 이상자	350일 이상자
통보인원 수	조건에 해당되는 인원 수	좌동
통보방법	심평원 홈페이지 ➡ 보장기관서비스 ➡ 고위험군 명단 ※ 읍면동 구분 없음 ※ 보장기관 공인인증서 필요	좌동

🌀 우선순위 선정방법(대상자 명단 통보 시 우선순위 자동 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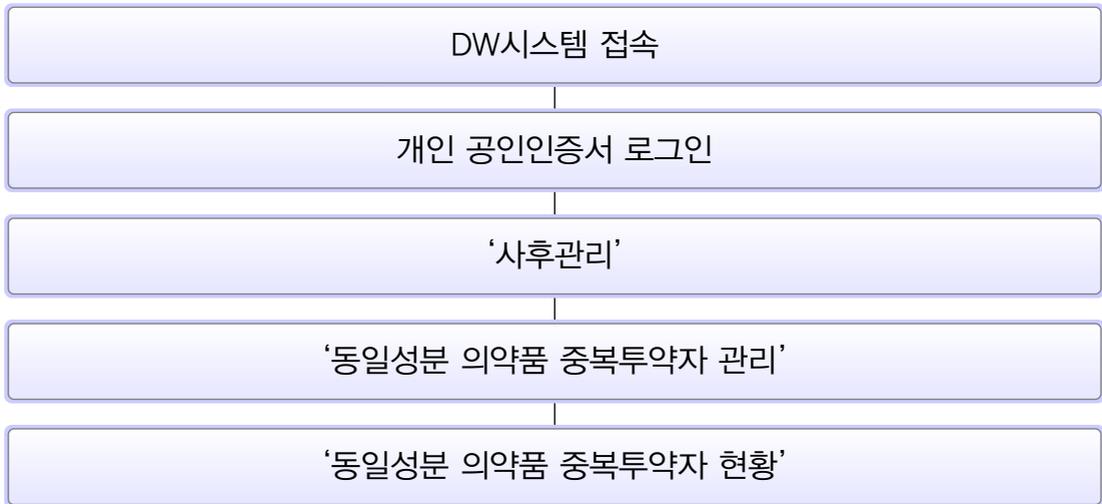
※ 의약품 중복 투약일수 선정방법 : 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심평원 통보명단 관련 제공내역 및 유의사항(2011.03.16)」 참고

2) 일회용 점안제·물리치료 이용 상위자 통보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통보시기	4월	10월
진료연월	전년도 7 ~ 12월	당해연도 1 ~ 6월
통보기준	일회용 점안제 : 6개월 누적 1,800관(조제사용량) 이상 처방받은 자 물리치료 : 6개월 누적 150건(명세건수) 이상 물리치료 받은 자	
통보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 시·도 → 시·군·구	
실적보고	6월	12월

※ 구체적인 사항은 「2018년 일회용 점안제·물리치료 이용 상위자 사례관리 실시 계획」 참고

3) DW시스템(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에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명단 확보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개인별 현황 : DW시스템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후관리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현황 → 발체년월 입력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현황

발체년월 : _____ 출력일: _____ 페이지: _____

발체년월	수진자주민번호	수진자명	구분	본인부담 기간
			대상자	

4) 보장기관 자체 발굴

- 고위험군 명단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전입 신규 대상자 중 주·부상병명, 질환군별 급여일수, 총 진료비, 입·내원일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일수, 전년도 대비 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가율 등 종합적 검토 결과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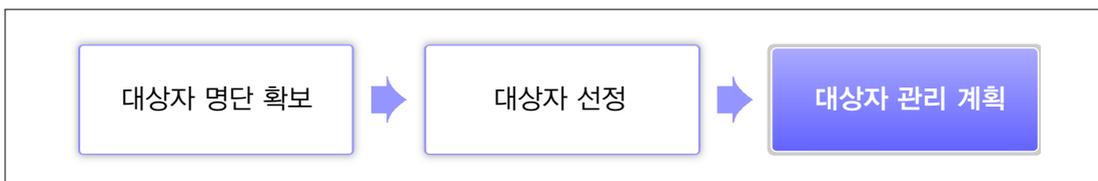
나. 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대상자 명단을 활용하여 질병대비 과다 의료이용, 의료 쇼핑, 부적정 의료기관 선택, 약물 과다복용 및 중복투약 등 비합리적 의료 이용이 의심되는 대상자 선정
- 확인된 대상자별 DW시스템 진료내역을 확인·분석하여 실제 개입할 대상자 최종 선정

다. 대상자 관리 계획



- 고위험군 목표관리 기준 업무량 등 고려하여 사례관리 계획표 작성

예시 : 고위험군(신규 의료급여수급자 포함) 사례관리 대상자 관리 계획서

20〇〇년 〇월 계획서

담당자 : ◇◇◇

관할동 : □□ 1동, □□ 2동

1. 개요

○ 기간 : 20〇〇.〇.〇 ~ 20〇〇.〇.〇

○ 인원

구 분	세부 내역	목표 인원	비고
고위험군	심평원 통보(3·9월)	〇〇명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20〇〇년 〇월 선정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〇〇명	
계		〇〇명	

2. 일반 현황(〇〇.〇월 기준)

○ 자격유형별

구 분	계		의료급여수급자								시설명	
			1종		2종		국가유공자		기타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계												
□□ 1동												
□□ 2동												

○ 성별, 연령별

구 분	종별		성별		연령별								비고	
	1종	2종	남	여	9세 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계													
□□ 1동														
□□ 2동														

3.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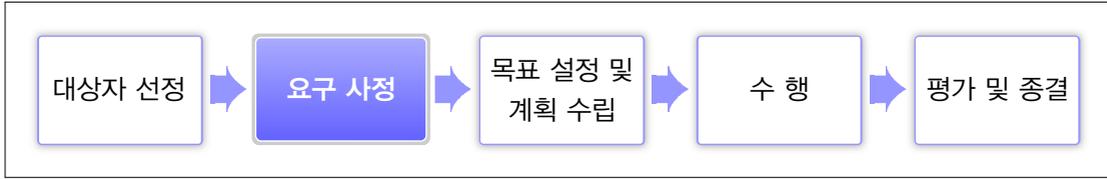
○ 주별 세부내용

월별	주별	내 용	비고
○월	1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제도 안내문 발송 • 20○○년 급여일수 365일 이상 연장승인 대상자 확인 및 상담 • 20○○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 교육(관련 실무자 등) 	
	2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대상자 전화 상담 • 조건부 선택병원 전환 대상자 안내 및 상담 • 20○○년 급여일수 365일 이상 연장승인 대상자 상담 	
	3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대상자 방문 및 요구사정 • 연장승인 신청서 미제출 대상자 독촉 안내 및 상담 • 조건부 연장승인 신청자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관련 상담 	
	4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승인 심의자료 작성 및 심의 개최 • 연장승인 심의자료 행복e음 입력 • 관련 부서와 사례검토회의 및 자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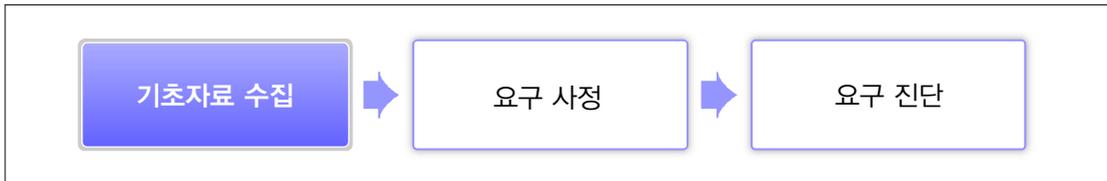
4. 기대효과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를 통해 잠재적 과다 의료이용 예방
-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통해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

2. 요구 사정



가. 기초자료 수집



- 행복e음 활용
 - (기초조사서) 주소, 연락처, 급여유형, 취득일자 등 대상자 기본 정보 확인
 - (통합조사 및 결정) 주거환경, 기초생활보장정보, 근로능력유무 등 파악
- DW시스템 활용
 - 사례관리 대상자의 질환별·의료급여기관별 의료이용 현황 파악

통합조사 및 결정 : 행복e음 → 조사·결정 → 통합조사 및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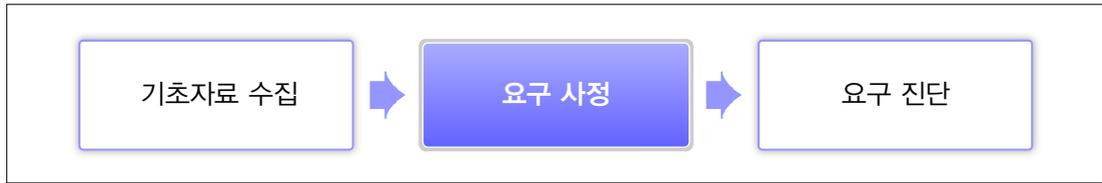
통합조사 및 결정

No	가구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거여부 및 미등거사유	연락처	의료급여 종류	장애통급 / 종합장애등급	부장애유형	차비지원 대상	근로능력 유무	근로능력 판정사유	질환명	부양여부 유무
1	가구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N	Y	근로능력없연령(연료)		Y

보장구분	가구원수 (보장가구수)	소득 인정액	소득구분	현재금액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사진행상태	조사자결정 요청자	보장결정 요청자
기초연금	1(1)	137,160	소득인정액	137,160	가구주			조사자결정 요청		
기초생활급여	1(1)	343,210	소득평가액	137,160						
기초의료급여	1	343,210	- 근로소득	0						
기초주거급여	1(1)	343,210	- 사업소득	0						
차상위본인부담	1	343,210	- 재산소득	0						

※ 통합조사 및 결정 조회 가능 여부는 보장기관별 행복e음 권한 부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나. 요구 사정



-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 성과지표에 의거하여 사정
 - 요구접수 사정은 영역별 세부 항목 내용을 토대로 '의료급여수급자 요구 사정 지표별 측정기준표' 및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 성과지표'를 확인하여 향후 사례 관리 개입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

요구접수 사정영역

영역	세부 항목
I. 제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제도 이해 정도
II. 합리적 의료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쇼핑 • 이용 의료기관 전문수준 • 이용 의료기관 수 • 중복처방 정도 • 전반적 의료이용의 합리성
III. 건강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상태 • 일상수행능력(ADL) • 통증 • 우울 • 신체증상관리 / 상태조절 • 약물 복용
IV. 자가 건강관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질병 이해 정도 • 건강관심도 • 생활습관 관리(흡연, 음주, 운동, 식이) • 위생 및 예방에 대한 관리 정도 (개인위생 청결 정도, 예방접종 유무, 정기 건강검진 유무)
V. 지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고립도 • 자원연계 정도
VI.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채광/환기, 냉난방, 부엌 상태, 안전 상태, 화장실/목욕시설)

의료급여수급자 요구 사정 지표별 측정기준표

<p>I. 제도 이해</p>	<p>1. 의료급여 제도 이해</p>	<p>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본인부담제,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대상자가 알아야 할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 정도(의료급여관리사 판단)</p> <p>1. 전혀 모른다 2. 잘 모른다 3. 보통이다 4. 잘 아는 편이다 5. 매우 잘 알고 있다</p>
<p>II. 합리적 의료이용</p>	<p>1. 의료쇼핑</p>	<p>동일 질병으로 3기관 이상 다른 의료기관을 중복 이용하는 등 의료쇼핑의 경향을 보임</p> <p>1. 매우 심하다 2. 조금 심하다 3. 보통이다 4. 거의 문제가 없다 5. 전혀 문제가 없다</p>
	<p>2. 이용 의료기관 전문수준</p>	<p>질병대비 의원급이나 1차 진료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주로 2·3차 병원 등 전문 진료를 이용함</p> <p>1. 매우 심하다 2. 조금 심하다 3. 보통이다 4. 거의 문제가 없다 5. 전혀 문제가 없다</p>
	<p>3. 이용 의료기관 수</p>	<p>단골기관 없이 많은 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함</p> <p>1. 매우 심하다 2. 조금 심하다 3. 보통이다 4. 거의 문제가 없다 5. 전혀 문제가 없다</p>
	<p>4. 중복처방 정도</p>	<p>대상자가 동일 질병으로 중복처방 받은 정도(의료급여관리사 판단)</p> <p>1. 3개 질환 이상을 1~2회 정도 중복처방을 받고 있거나 또는 1개 질환을 4회 이상 중복처방 받고 있음 2. 2개 질환을 1~2회 정도 중복처방 또는 1개 질환을 3회 중복처방 받고 있음 3. 1개 질환을 현재 1~2회 정도 중복처방 받고 있음 4. 1개 질환을 과거 한번 정도 중복처방 경험 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음 5. 중복처방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음</p>
	<p>5. 전반적 의료이용의 합리성</p>	<p>대상자의 질병상태 및 증상과 비교하여 의료쇼핑, 이용 의료기관 전문수준, 이용 의료기관 수, 중복처방의 적정 정도(의료급여관리사 판단)</p> <p>1~2점 : 위의 4항목이 모두 심한 경우 3~4점 : 위의 4항목 중 3항목이 심한 경우 5~6점 : 위의 4항목 중 2항목이 심한 경우 7~8점 : 위의 4항목 중 1항목이 심한 경우 9~10점 :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p> <p>1. 매우 불합리적 ~ 10. 매우 합리적</p>

Ⅲ. 건강 삶의 질	1. 건강상태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해 질문(대상자 주관적 판단) 1. 매우 나쁘다 2. 나쁘다 3. 보통이다 4. 좋다 5. 매우 좋다
	2. 일상수행 능력	일상수행능력에 대해 질문(의료급여관리사 판단) 1. 완전히 무력하다.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고, 전적으로 침대나 의자에 누워있어야 한다. 2. 단지 제한적으로만 자신을 돌볼 수 있다.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있거나 앉아있다. 3. 보행이 가능하고 자신을 돌보는 모든 일은 가능하지만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4.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은 제한 받으나 보행은 가능하고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다. 5. 제한 없이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3. 통증 정도	최근 일주일을 기준으로 통증에 대해 질문(대상자 주관적 판단) 1. 매우 심한 통증이 있다. 2. 심한 통증이 있다 3. 가벼운 통증이 있다 4. 아주 가벼운 통증이 있다 5. 전혀 없다
	4. 우울 정도	최근 일주일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정서 상태에 대해 질문(의료급여관리사 판단) 1. 자살을 자주 생각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다. 2.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희망이 없다. 3. 때때로 지루하다고 생각하나 그런대로 삶에 만족한다. 4. 희망적이며 주위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5. 매사에 활력이 있으며 삶에 만족하고 있다.
	5. 신체증상 관리/ 상태조절	질병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관리나 혈압, 혈당 체크 등 상태조절을 위한 관리를 어느 정도 의사 지시에 따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정도를 질문·관찰(의료급여관리사 판단) 1.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2. 가끔 관리한다 3. 보통이다 4. 잘 관리한다 5. 스스로 매우 잘 관리한다
	6. 약물 복용	약물복용 횟수, 양, 시간을 지시대로 이행하는지 질문(의료급여관리사 판단) 1. 전혀 처방을 따르지 못 한다 2. 가끔 처방을 따르지 못 한다 3. 보통이다 4. 잘 복용한다 5. 처방대로 매우 잘 복용한다

🔄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 성과지표 (사전·사후 평가용)

I. 자가 관리능력 (30점)										
1. 자신의 질병상태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2. 의료급여 제도 이해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3. 신체증상관리/상태조절	①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② 가끔 관리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관리한다	⑤ 스스로 매우 잘 관리한다					
4. 약물 복용	① 전혀 처방을 따르지 못 한다	② 가끔 처방을 따르지 못 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복용한다	⑤ 처방대로 매우 잘 복용한다					
5. 생활습관관리 (금연/절주/운동/식이)	①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② 가끔 관리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관리한다	⑤ 스스로 매우 잘 관리한다					
6. 위생 및 예방 (위생/청결/건강검진/예방접종)	①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② 가끔 관리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관리한다	⑤ 스스로 매우 잘 관리한다					
II. 합리적 의료이용 (30점)										
1. 전반적 의료이용의 합리성	① 매우 부적정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적정
2. 의료쇼핑	① 매우 심하다	② 조금 심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문제가 없다	⑤ 전혀 문제가 없다					
3. 이용 의료기관 전문수준	① 매우 심하다	② 조금 심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문제가 없다	⑤ 전혀 문제가 없다					
4. 이용 의료기관 수	① 매우 심하다	② 조금 심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문제가 없다	⑤ 전혀 문제가 없다					
5. 중복처방 정도	① 매우 심하다	② 조금 심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문제가 없다	⑤ 전혀 문제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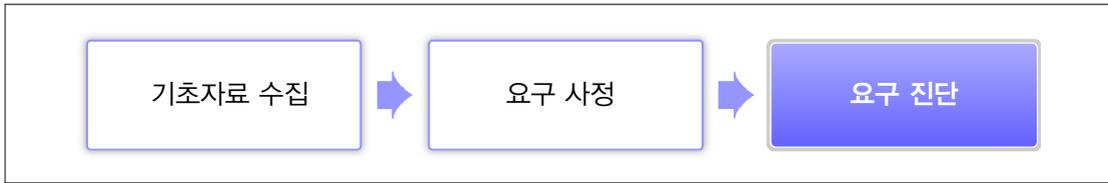
Ⅲ. 지지체계 구축 (10점)

	〈 점수 : 체크한 항목 개수 〉
1. 사회적 고립도	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②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할 사람이 있다. ③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도와줄 사람이 있다. ④ 밖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⑤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다.
2. 자원 연계	〈 요구에 대해 필요한 자원연계 정도 : 현재 상태를 판단 〉
	① 매우 부족 ② 약간 부족 ③ 보통 ④ 양호 ⑤ 매우 양호

Ⅳ. 건강 삶의 질 (30점)

1. 건강 상태	〈 최근 3개월간 대상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 판단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좋다 ⑤ 매우 좋다
2. 일상 수행 능력	〈 현재 상태를 판단 〉
	① 완전히 무력하다.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고, 전적으로 침대나 의자에 누워 있어야 한다. ② 단지 제한적으로만 자신을 돌볼 수 있다.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있거나 앉아 있다. ③ 보행이 가능하고 자신을 돌보는 모든 일은 가능하지만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④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은 제한 받으나 보행은 가능하고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다. ⑤ 제한 없이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3. 통증	〈 지난 일주일간 〉
	① 매우 심한 통증이 있다. ② 심한 통증이 있다. ③ 가벼운 통증이 있다. ④ 아주 가벼운 통증이 있다. ⑤ 전혀 없다.
4. 우울	〈 지난 일주일간 〉
	① 자살을 자주 생각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다. ②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희망이 없다. ③ 때때로 지루하다고 생각하나 그런대로 삶에 만족한다. ④ 희망적이며 주위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⑤ 매사에 활력이 있으며 삶에 만족하고 있다.
5. 건강 관심도	〈 현재 상태를 판단 〉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6. 주거 환경	〈 현재 상태 판단(양호한 경우 체크), 점수 : 체크된 항목 개수 〉
	<input type="checkbox"/> 채광·환기 <input type="checkbox"/> 냉난방 <input type="checkbox"/> 부엌 상태 <input type="checkbox"/> 안전 상태 <input type="checkbox"/> 화장실/목욕시설

다. 요구 진단



○ 요구 사정된 항목을 문제 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그에 따른 요구 진단을 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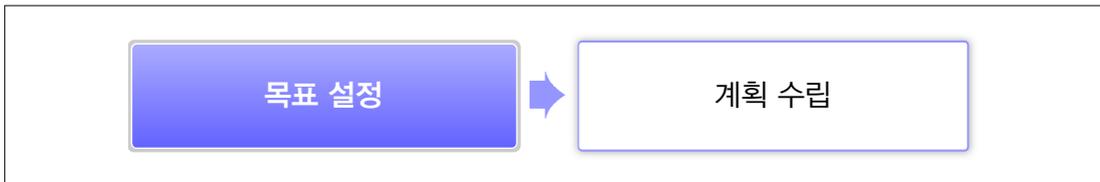
문제 영역별 요구 진단

문제 영역	세부 항목	요구 진단
1. 제도 이해	• 의료급여제도 이해 정도	• 의료급여제도 이해 부족
2. 합리적 의료이용	• 전반적 의료이용의 합리성 - 의료쇼핑 정도 - 이용 의료기관 전문수준 - 중복처방 정도	• 비합리적 의료이용
3. 건강 삶의 질	• 신체증상관리 및 상태 조절 • 약물 복용	• 부적절한 질병관리 • 약물 복용 불이행
4. 자가 건강관리 능력	• 전반적 질병 이해 정도 • 건강관심도 • 생활습관관리(흡연, 음주, 운동, 식이) • 위생 및 예방에 대한 관리 정도	• 질병에 대한 이해 부족 • 낮은 건강관심도 • 부적절한 생활습관 • 위생 및 예방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
5. 지지체계 구축	• 자원연계 정도	• 자원연계 부족
6. 생활환경	• 주거환경 • 보건의료기관 접근도	• 부적절한 생활환경

3.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가.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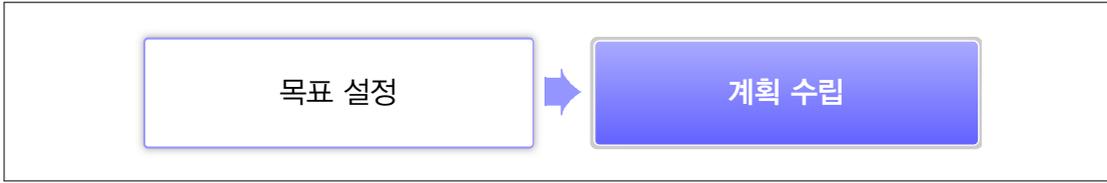


- 사정영역에 의거 요구 진단 목록 작성하여 목표 설정

🌀 요구 진단에 따른 목표 설정

요구 진단 목록	목 표
• 의료급여제도 이해 부족	• 의료급여제도 이해 향상
• 비합리적 의료이용 - 의료쇼핑 - 비합리적 전문 의료기관 이용 - 약물 중복처방	•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의료쇼핑 감소 - 합리적 의료기관 이용 - 약물 중복처방 감소
• 부적절한 질병 관리 - 낮은 치료 순응도(혈압/혈당 상태 조절 등) - 부적절한 증상관리(통증, 우울 등) - 합병증 발생	• 질병관리능력 향상 - 치료 순응도 향상 - 증상관리능력 향상 - 합병증 예방
• 약물 복용 불이행	• 복약 순응도 향상
• 자가 건강관리능력 부족 - 부적절한 생활습관 - 예방행위 불이행 - 낮은 건강관심도	•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생활습관 개선 - 예방행위 실천 - 건강관심도 증가
• 질병에 대한 지식 부족	• 질병에 대한 지식과 이해 증가
• 자원연계 부족	• 자원연계
• 부적절한 생활환경	• 생활환경 개선

나. 계획 수립



- 요구 진단별 설정 목표에 따라 수행 가능한 활동 위주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사례관리 기간, 수행방법 및 내용, 상담일 등 기재
- 계획 수립 후 세부 계획내용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 독려

예시 : 고위험군 사례관리 계획서 (주별)

< 대상자 사례관리 계획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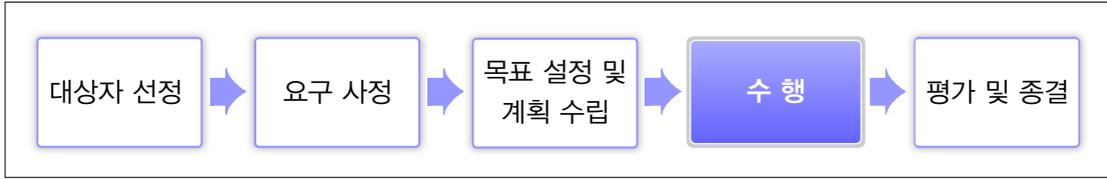
1. 사례관리 대상자 : □□□
2. 사례관리군 : 고위험군
3. 사례관리 기간 : 3개월(20○○년 1월 2일 ~ 4월 2일)
4. 사례관리 수행 계획표

구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서신	1차 서신				2차 서신							
전화	1차 전화			2차 전화			3차 전화					4차 전화
방문		1차 방문								2차 방문		
자원 연계			사정	계획 수립		연계				모니터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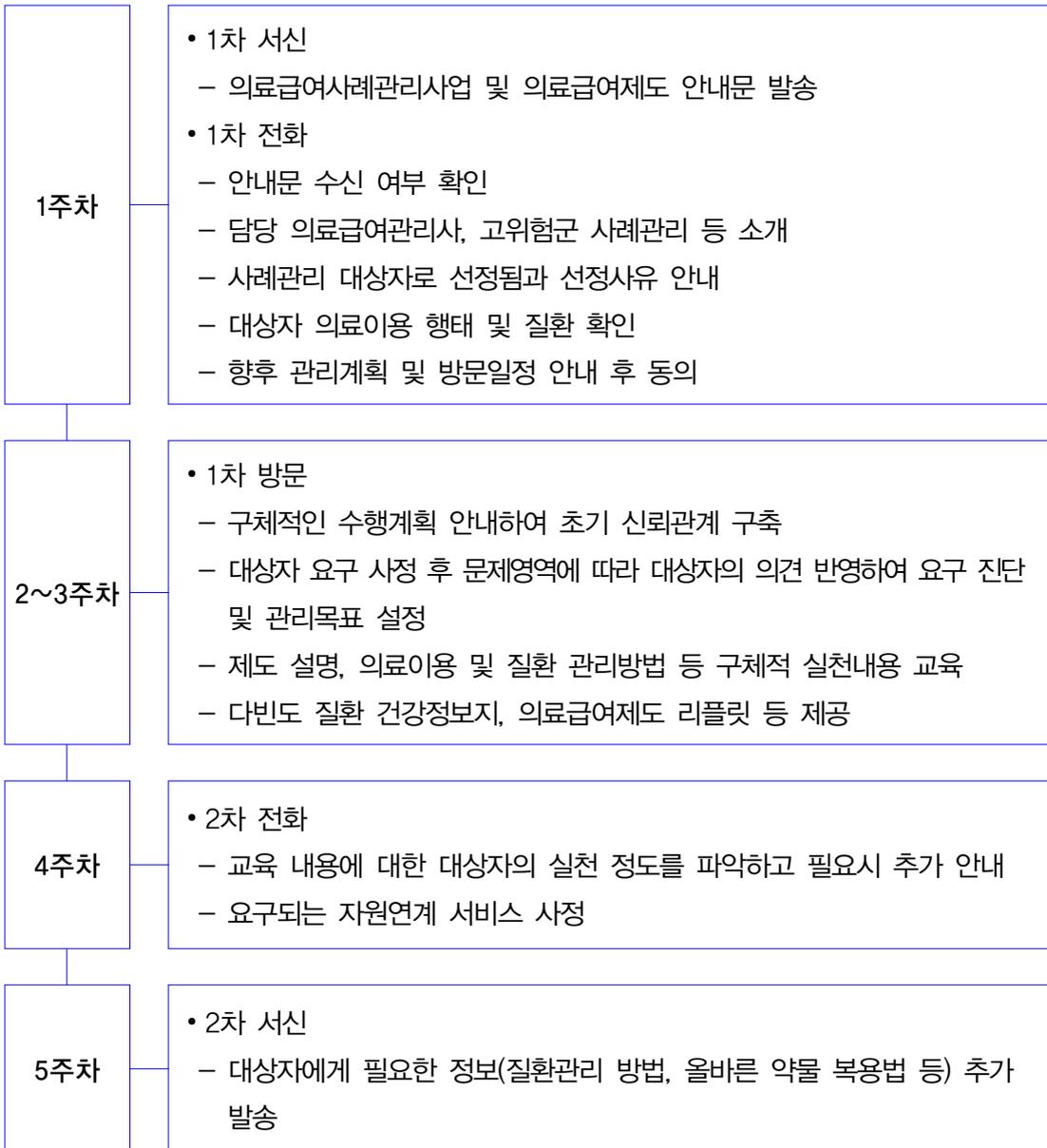
5. 사례관리 수행 계획 일자
 - 방문 횟수 : 2회(20○○.01.30. / 03.20.)
 - 전화 횟수 : 4회(20○○.01.02. / 01.31. / 02.10. / 04.01.)
 - 서신 횟수 : 2회(20○○.01.02. / 02.02.)
 - 마지막 평가일자(종결일자) : 20○○.04.02.

※ 수행절차 계획 수립 시 대상자 특성 및 보장기관 여건 등 고려

4. 수행



가. 서비스 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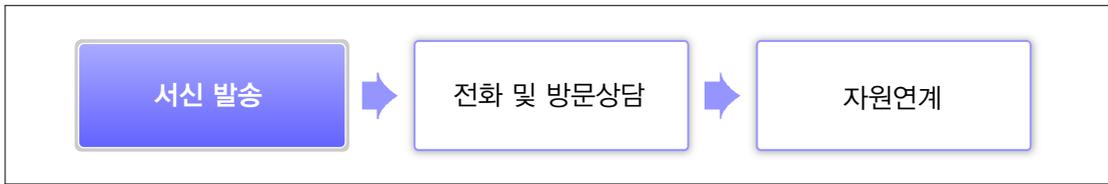


6~9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인식변화 여부 확인 -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 또는 새로 발생된 요구가 있는지 사정 - 필요시 계획 재수립 - 2차 방문에 대한 설명 및 동의 구한 후 방문 약속
10~11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현재 건강상태 점검 - 수행 내용에 대한 대상자의 실천 정도를 재확인하고 진행 정도에 따라 지지·독려 및 동기부여, 필요시 추가 안내 - 자원연계서비스 수혜 관련 모니터링 및 추가 요구자원 현황 파악
12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의료이용 행태변화 여부 확인(DW시스템 자료 활용) - 계획된 사례관리 기간 도래하여 종결함과 추후 요청사항 있을 시 지속적인 상담 가능함을 알림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이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례관리 재개입할 수 있음을 설명

※ 상기 내용은 표준 절차 예시로서 대상자 특성에 따라 서비스 수행내용 및 절차는 다르게 진행할 수 있음

나. 서비스 수행 내용

1) 서신 발송



- 의료급여제도 및 사례관리 대상 선정 안내문 발송

예시 : 의료급여사례관리 실시 안내문 발송 공문

□□시·군·구

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의료급여사례관리 실시 안내문 발송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군·구 ◇◇◇◇과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사례관리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에 근거하여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건강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포괄적인 서비스**입니다.
4. 이에 추후 귀 닥에 전화 및 방문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과(☎ 123-123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급여사례관리 안내문. 끝.

시·군·구청장

의료급여사례관리 안내문

우리 시·군·구에서는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에 의거, 만성복합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 및 의료기관 이용방법 안내, 건강 상담** 등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 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2000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로 통보 (신경계 및 고혈압 질환으로 총 000일 이용)되어 이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귀 댁에 전화 및 방문 상담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청 ◇◇◇◇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시·군·구청 ◇◇◇◇과 담당 의료급여관리사 (☎ 123-1234)

2) 전화 및 방문상담



- 사례관리 대상자와 방문일정 약속
- 방문 전 준비사항 숙지
- 구체적인 수행계획 안내하여 대상자와 신뢰관계 구축 및 참여 독려

방문 시 준비사항

- ◆ 대상자와 방문일정 협의 후 대상자 연락처, 주소 등 확인
- ◆ DW시스템 활용하여 급여내역, 상병명, 이용 의료기관 수, 급여일수, 의약품 중복 투약일수 등 의료이용 현황 파악
- ◆ 의료급여제도 안내문 및 질환 관리방법 등 자료 준비
- ◆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 여부 확인
- ◆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신변에 위험이 예측되는 대상자 방문 시 유의사항

- ◆ 가정방문은 지양하고, 동 주민센터 등 상담 장소 변경
- ◆ 보호자 등 가족 동반하여 상담
- ◆ 담당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등 동행하여 2인 이상 방문
- ◆ 대상자 방문 전 일정에 대해 부서에 반드시 사전 보고
 - 출장자, 방문대상, 방문시간, 방문장소, 방문목적 등
 - 예정에 없던 대상자 방문 시 유선 등을 통해 사전 보고 후 방문
- ◆ 방문 시 대상자 집 구조와 출구, 주변 환경 파악
- ◆ 상담 시 출입구 근처에 앉고 출입문은 항상 열어두기
- ◆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상담하며, 흥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치우기
-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호루라기 등 호신용품 항상 소지
- ◆ 휴대폰에 112 긴급신고 앱 설치하여 위급상황 시 신고자 위치 상황 제공
- ◆ 사고 발생 시 즉각적 보고 및 대응체계 마련 요청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3단계

- ① 하나. 단골 병 · 의원과 약국을 정해서 다니세요.
단골 병 · 의원을 정해서 가면 비슷한 의약품의 중복 처방을 방지해 줍니다.
- ② 둘. 현재 복용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반약, 처방약, 한약 등 현재 먹고 있는 모든 약과 과거에 경험했던 약에 대한 과민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해 의사 및 약사에게 알려주세요.
- ③ 셋.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해 주세요!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추가로 약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 의료이용 도모를 위해 건강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당 시군구청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연락주세요.

시 · 도 _____ 시 · 군 · 구청 _____

부서명 _____

담당자 _____

전 화 _____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보건복지부 X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약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증상을 경감시키고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지만 약의 무분별한 오남용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해를 입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 약! 바르게 알고 계신가요? 약에 관한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 ①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꼭 의약품 이름, 모양, 사용방법, 사용기한, 투여용량과 복용시간을 확인합니다.

- 약의 모양이 비슷하더라도 사용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약은 사용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②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 우유, 콜라, 자몽주스 등 주스류, 커피, 녹차는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③ 지시된 양을 지시된 기간 동안 확실하게 복용합니다.

- 약을 2배로 먹는다고 2배의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 ④ 개인의 상황에 따라 약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고 기존의 약과 중복 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비슷하다고 친구나 가족과 약을 나누어 먹지 않고 본인의 약만 복용합니다.



- ⑤ 의약품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다른 용기에 옮기지 말고 설명서와 함께 포장상태 그대로 보관합니다.



- ⑥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치료가 끝난 약, 어떤 약인지 알 수 없게 방치된 약은 가까운 약국의 폐의약품수거함에 버립니다.



- ⑦ 약을 복용 후 불편한 경우 (가려움, 복통, 설사, 어지러움 등)에는 의사, 약사에게 문의합니다.



「허리통증에 좋은 운동법」 리플릿

허리에 좋은 생활습관

아침에 일어날 때 기지개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 아침에 일어날 때는 팔과 다리를 쭉 뻗어 기지개를 켜고 몸을 좌우로 비틀어 경직된 허리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물건을 들 때는 다리 힘을 이용하세요.

- 다만 비틀어 물건을 잡는 동작은 척추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반드시 다리를 굽혀 들어 올립니다.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누워서 보는 습관은 척추질환을 유발합니다.

- 목을 받치고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습관은 척추를 옆으로 휘게 만들고 온몸의 근육과 인대, 척추 등에 압박을 주어 허리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허리와 등을 의자나 벽에 붙이고 고개를 앞으로 빼지 않는 곧은 상태로 시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 의료이용 도모를 위해 건강 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사제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당 시군구청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연락주세요.

시·도	시·군·구청
부서명	
담당자	
전 화	



국민번호119
합격률 100% 129

보건복지부 X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사제관리사업지원단

허리통증에 좋은 운동법

- 준비 자세에서는 숨을 들이마시고 동작을 할 때는 숨을 천천히 내뿜습니다.
-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무리하지 말고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며 진행합니다.
- 통증이 극심할 때는 운동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합니다.

1 누워서 허리누르기



15초간 유지, 5회 반복 | 동작을 취할 때 엉덩이를 들면 안 됩니다.

2 누워서 한쪽 다리 당기기



15초간 유지, 5회 반복(양측) |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3 등 아치 만들기



15초간 유지, 5회 반복 | 다리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면 운동을 중단합니다.

4 옆구리 늘리기



15초간 유지, 5회 반복(양측) | 상체를 기울일 때 가슴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5 누워서 엉덩이 들어 버티기



15초간 유지, 5회 반복 | 엉덩이를 너무 높이 들어 허리가 아치모양이 되면 안 됩니다.

6 엎드려 상체 일으키기



110초간 유지, 10회 반복 | 고개를 들 때 통증이 있으면 팔꿈치를 더 넓게 벌려 경사를 낮게 합니다.

7 누워서 상체 일으키기



15초간 유지, 5회 반복 | 허리는 바닥에 붙이고 머리와 어깨만 바닥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무릎관절염에 좋은 운동법」 리플릿

운동 시 주의사항

운동의 적절한 강도, 시간, 빈도 등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자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방법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 걷기, 수영, 물 속 걷기, 물 속 에어로빅 : 관절을 보호하여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 및 폐의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실내 자전거타기 :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에는 무릎이 완전히 펴지도록 높이를 조절합니다.
- 뛰기, 점프, 포크레 앉기 : 관절에 무리가 가며 관절 손상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한 체중 감량은 무릎관절염을 예방하고 관절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 의료이용 도모를 위해 건강 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당 시군구청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연락주세요.

시·도	시·군·구청
부서명	
담당자	
전화	



국민연금 119
찾아올면 1129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무릎관절염에 좋은 운동법

적절한 운동은 관절주변의 근육, 인대, 건 등을 풀어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이는 관절염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을 예방하고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슬개골 움직임 운동



- 1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슬개골(무릎뼈)을 부드럽게 발쪽으로 10초간 밀어줍니다.
- 2 슬개골(무릎뼈)을 부드럽게 허벅지 쪽으로 10초간 밀어줍니다.
- 3 슬개골(무릎뼈)을 부드럽게 반대편 다리 쪽으로 10초간 밀어줍니다.

하지 거상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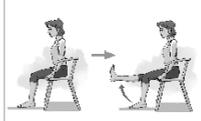
- 1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한쪽 다리의 발목을 들 쪽으로 당기며 바닥에서 30cm 높이로 들어 올립니다.
- 2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는 동작을 10회 3세트 시행합니다.

대퇴근육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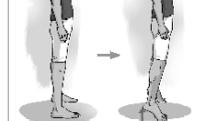
- 1 다리를 쭉 펴고 반대편 다리는 구부린 채로 바닥에 앉습니다.
- 2 무릎 부분을 바닥을 향해 10초간 누르듯 힘을 줍니다. 이 동작을 10회 3세트 시행합니다.

1 앉아서 허벅지 올리기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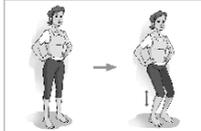
- 1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곧게 편 뒤 10초간 허벅지에 힘을 줍니다.
- 2 천천히 힘을 빼며 다리를 내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3세트 시행합니다.

2 발뒤꿈치 들어올리기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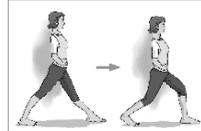
- 1 바른 선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 까치발로 섭니다.
- 2 자세를 2~3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 올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3세트 시행합니다.

3 스쿼트



- 1 양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의자에 살짝 앉는 자세로 유지한 후 다시 무릎을 펴고 섭니다.
- 2 상체가 앞으로 기울지 않게 5회씩 1세트 시행하고 30초간 휴식 후 3세트 시행합니다.

4 런지



- 1 한 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굽히고 반대편 다리가 바닥에서 10~20cm 떨어지도록 합니다.
- 2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한 뒤 반대편 발도 같은 동작으로 시행합니다. 양쪽을 5회씩 1세트 시행하고 30초간 휴식 후 3세트 시행합니다.

※ 운동 중 통증이 발생하면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빈도 질환 건강정보지(10종)」 리플릿

The image displays ten health information leaflets arranged in a 2x5 grid. Each leaflet is for a different common disease and includes the following sections:

- 당뇨병 (Diabetes):** What is it?, What are the symptoms?, What are the causes?, and What are the treatments? Includes a table for blood sugar levels.
- 관절염 (Arthritis):** What is it?, What are the symptoms?, What are the causes?, and What are the treatments? Includes a diagram of a joint.
- 고혈압 (Hypertension):** What is it?, What are the symptoms?, What are the causes?, and What are the treatments? Includes a table for blood pressure levels.
- 심장질환 (Heart Disease):** What is it?, What are the symptoms?, What are the causes?, and What are the treatments? Includes a diagram of the heart.
- 마음의 감기 우울증 (Depression):** What is it?, What are the symptoms?, What are the causes?, and What are the treatments? Includes a diagram of a person's head.
- 잠복성피부염 (Asymptomatic Skin Disease):** What is it?, What are the symptoms?, What are the causes?, and What are the treatments? Includes a diagram of a skin lesion.
- 기능성 위장관장애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 What is it?, What are the symptoms?, What are the causes?, and What are the treatments? Includes a diagram of the digestive system.
- 백내장 (Cataract):** What is it?, What are the symptoms?, What are the causes?, and What are the treatments? Includes a diagram of the eye.
- 전립선 비대증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What is it?, What are the symptoms?, What are the causes?, and What are the treatments? Includes a diagram of the prostate gland.
- 치매 (Dementia):** What is it?, What are the symptoms?, What are the causes?, and What are the treatments? Includes a diagram of a person's head.

※ 각 질환별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순서대로 발송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홈페이지 → 자료실 → 홍보자료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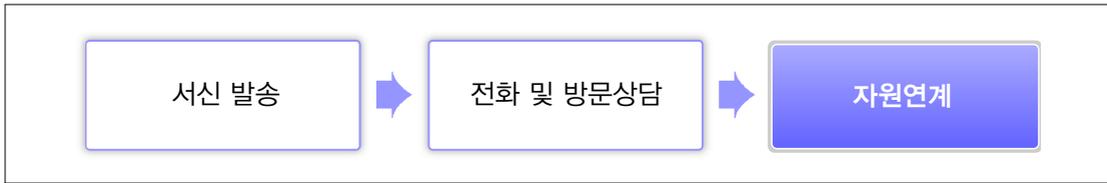
○ 대상자 요구 사정 참고하여 사례관리 수행내용을 행복e음에 입력

🔵 기초조사서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외래 → 외래기초조사서 관리 → 기초조사서 등록

🔵 수행기록지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외래 → 외래수행기록지 관리 → 수행기록지 등록

※ 수행기록지 입력 시 요구도 진단 부분은 수행 내용 체크 후 수행 평가 작성, 수행 차수별 수행 평가점수 변화 확인 후 자체평가서 이동하여 기록

3) 자원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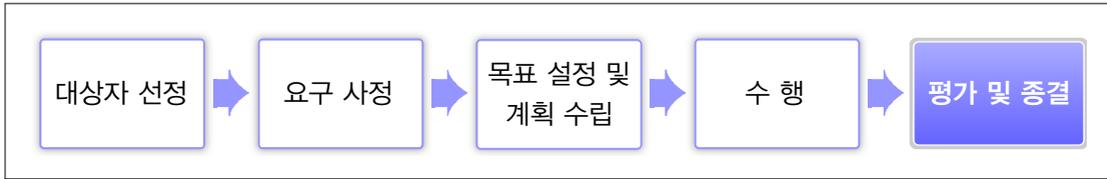
- 요구 사정 후 필요시 자원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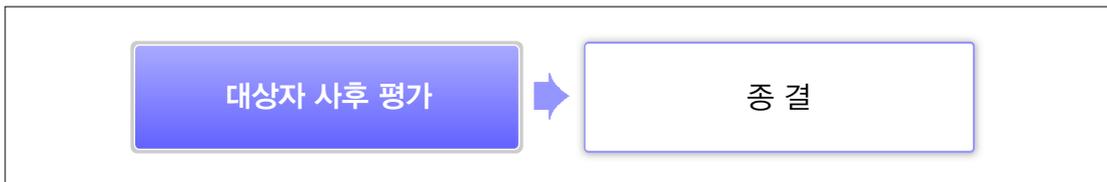
자원연계

- ◆ 자원연계 계획, 서비스 수혜 여부 동의 등 안내
- ◆ 자원연계 전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와 구비서류 목록 확인
- ◆ 지역사회 내 민간 복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는 서비스 경우 자원연계 의뢰서 [서식10] 작성
- ◆ 서비스 제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기본 정보 제공
 - ※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의거, 서비스 수혜자의 정보가 요청한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 ※ 위기가구 발견 시 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조치

5. 평가 및 종결



가. 대상자 사후 평가



-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사후 평가 실시
- 모든 수행 종료 후 대상자의 요구 변화를 최종 평가하고 사전 평가점수와 비교하여 문제영역의 목표달성 여부 확인
- 행복e음 자체평가서는 수행기록지 마지막 차수의 수행 평가점수가 최종 사후 점수로 기록되며, 합리적 의료이용, 지지체계 구축, 건강 삶의 질, 의료급여 관리자 전체 평가를 기록하여 최종 사후 평가 함

※ 요구 사정 부분의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 성과지표(p.63)' 참조

🔄 자체평가서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외래 → 외래자체평가서 관리 → 수행실적/평가항목 및 사전평가/사후평가

자체평가서 등록 ⊙ 기초조사서관리 ⊙ 수행기록지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행실적/평가항목 **사전평가/사후평가** 새로자료저장 추가점수반영 공단전송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례관리기간 ~

대상자분류 예정관리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종결형태 중도종결사유

형태별 평가(건)

방문 전화 서신 내소 자원연계 의뢰 집합교육

사후 평가 항목 입력

합리적 의료이용	이용기관 수	<input type="text"/>
지지체계 구축	사회적고립도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할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도와줄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밖에 나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다.
건강상태	<input type="text"/>	사후평가항목입력을 하지 않을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 삶의 질	일상수행능력	<input type="text"/>
	통증	<input type="text"/>
	우울	<input type="text"/>
관리사 전체 평가	<input type="text"/>	
기초조사서등록일	<input type="text"/>	의료급여관리사 <input type="text"/>

※ 의료급여관리사 전체 평가란은 총괄적인 의견을 핵심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록할 것

자체평가서 등록 ⊙ 기초조사서관리 ⊙ 수행기록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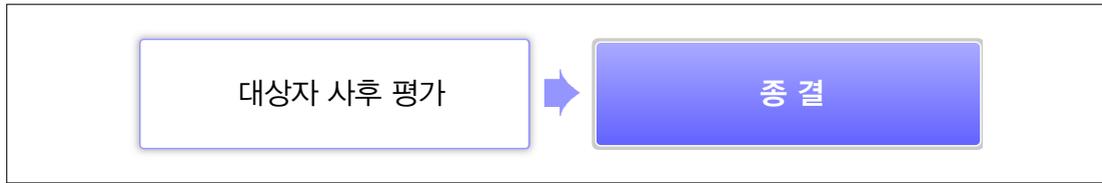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행실적/평가항목 **사전평가/사후평가** 새로자료저장 추가점수반영 공단전송

사전 평가 점수		사후 평가 점수	
자기건강관리능력 <input type="checkbox"/>	합리적 의료이용 <input type="checkbox"/>	지지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건강 삶의 질 <input type="checkbox"/>
자신의 질병상태 <input type="checkbox"/>	전반적 의료이용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고립도 <input type="checkbox"/>	건강상태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제도 이해 <input type="checkbox"/>	의료소평 <input type="checkbox"/>	자원연계 <input type="checkbox"/>	일상수행능력 <input type="checkbox"/>
신체 증상관리 <input type="checkbox"/>	이용기관 전문수준 <input type="checkbox"/>		통증 <input type="checkbox"/>
약물복용 <input type="checkbox"/>	이용기관 수 <input type="checkbox"/>		우울 <input type="checkbox"/>
생활습관 관리 <input type="checkbox"/>	중복처방 정도 <input type="checkbox"/>		건강관심도 <input type="checkbox"/>
위생 및 예방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 <input type="checkbox"/>
자기건강관리능력 <input type="checkbox"/>	합리적 의료이용 <input type="checkbox"/>	지지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건강 삶의 질 <input type="checkbox"/>
자신의 질병상태 <input type="checkbox"/>	전반적 의료이용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고립도 <input type="checkbox"/>	건강상태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제도 이해 <input type="checkbox"/>	의료소평 <input type="checkbox"/>	자원연계 <input type="checkbox"/>	일상수행능력 <input type="checkbox"/>
신체 증상관리 <input type="checkbox"/>	이용기관 전문수준 <input type="checkbox"/>		통증 <input type="checkbox"/>
약물복용 <input type="checkbox"/>	이용기관 수 <input type="checkbox"/>		우울 <input type="checkbox"/>
생활습관 관리 <input type="checkbox"/>	중복처방 정도 <input type="checkbox"/>		건강관심도 <input type="checkbox"/>
위생 및 예방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 <input type="checkbox"/>

※ 사전/사후 점수 변화에 유의하며, 필수 입력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종결 전 반드시 확인

나. 종결



1) 종결기준

- 일반종결
 - 사례관리 기간과 목표관리 횟수가 끝난 경우
- 조기종결
 - 사례관리 기간과 목표관리 횟수를 모두 채우지 않았지만 목표 달성이 되어 더 이상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즉 종결기준을 적용하여 충족되는 경우
 - ※ 종결기준 :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측정표 및 종결기준(p.82) 참조
- 중도종결
 - 대상자의 사망, 전출, 수급 중지 등으로 인해 사례관리가 어려운 경우
 - 의료급여관리사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적극적 개입에도 행태변화 가능성이 없어 의료급여관리사가 종결하기로 판단한 경우
- 강제종결
 - 행복e음에 사례관리 입력 오류 건을 삭제한 경우
 - ※ 강제종결 건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2) 종결기준에 따라 사례관리 종결 후, 행복e음 자체평가서에 등록

📌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측정표 및 종결기준

영역	분류		점수	종결기준
I. 자가 건강관리능력	지식	1. 자신의 질병 상태	5	3
		2. 의료급여제도 이해	5	3
	치료순응도	3. 신체증상 관리/상태 조절	5	3
		4. 약물복용	5	3
	건강행위	5. 생활습관 관리	5	
		6. 위생 및 예방	5	
	소 계		30	
II. 합리적 의료이용	1. 전반적 의료이용의 합리성		10	
	2. 의료쇼핑		5	3
	3. 이용의료기관 전문 수준		5	3
	4. 이용의료기관 수		5	
	5. 중복처방 정도		5	3
	소 계		30	
III. 지지체계 구축	1. 사회적 고립도		5	
	2. 자원연계		5	3
	소 계		10	
IV. 건강 삶의 질	1. 건강 상태		5	
	2. 일상수행 능력		5	
	3. 통증		5	
	4. 우울		5	
	5. 건강관심도		5	3
	6. 주거환경		5	
	소 계		30	
총계 (100점)			100	

※ □에 해당되는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3점) 이상을 종결자로 함



장기입원 사례관리

I. 개요

1. 정의	87
2. 목적	87
3. 관리대상	87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88
5. 장기입원 사례관리 - 심사 연계	88
6. 업무흐름도	89

II.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실제

1. 대상자 선정	90
2. 요구 사정	94
3.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110
4. 수행	112
5. 평가 및 종결	118

III. 의료급여기관 사례관리

IV. 사회복지시설 사례관리

I 개 요

1. 정의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부 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 상담, 자원연계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2. 목적

-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의 경우 외래이용 전환, 재가서비스 또는 시설 입소 등 자원연계를 통하여 수급자의 자가 관리능력 향상
- 질병대비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여 적정 의료이용 도모 및 재정 안정화 기여

3. 관리대상

- 장기입원자
 -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
- 부 적정 입원자
 - 1일 이상 반복 입·퇴원자
 - 숙식 목적으로 입원하는 자
 - 통원진료가 가능함에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입원하는 자
 - 입원 시 가족이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자
- 장기입원자 또는 부 적정 입원자가 있는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 ※ 의료급여기관 :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를원을 포함하여 관내 전체 의료급여기관
 - ※ 사회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서 정하는 보장시설 전체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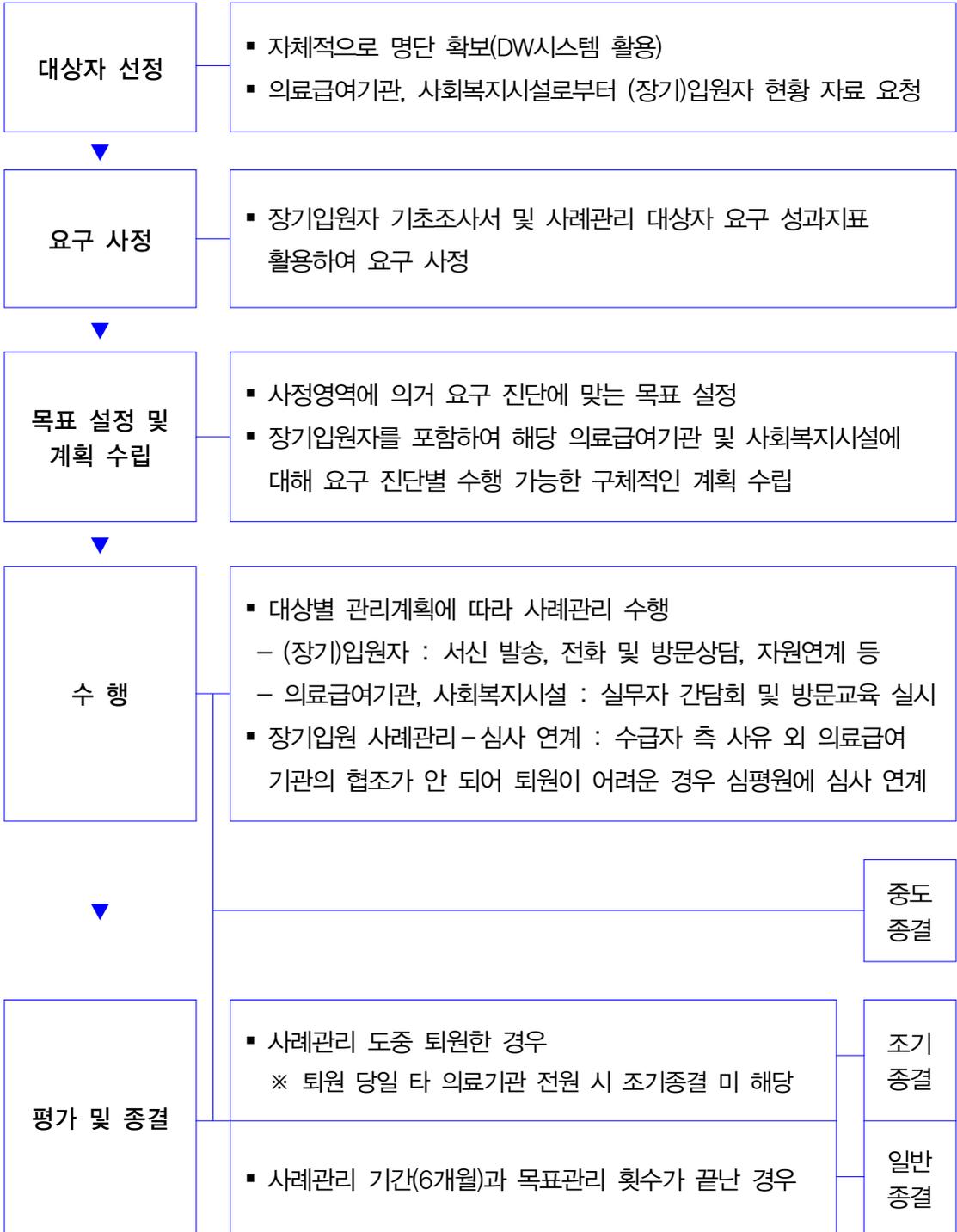
〈 장기입원 사례관리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

관리군	사례관리 기간	목표관리 횟수		
		방문	전화	서신
장기입원자	6개월	2회 이상	6회 이상	수시

5.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 연계

- 목적
 -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 증대
- 연계 대상
 - 장기입원 사례관리 중 수급권자 측면 사유 외에 의료급여기관의 협조가 안 되어 퇴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
- 연계 방법
 - 시·군·구는 의뢰서식(서식6)에 의거 의료급여기관 기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 후 매월 23일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는 파일 취합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의료급여실로 매월 25일까지 제출
 - ※ 연계대상 명단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계획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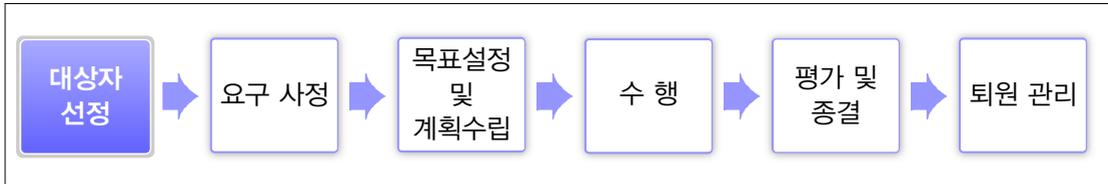
6.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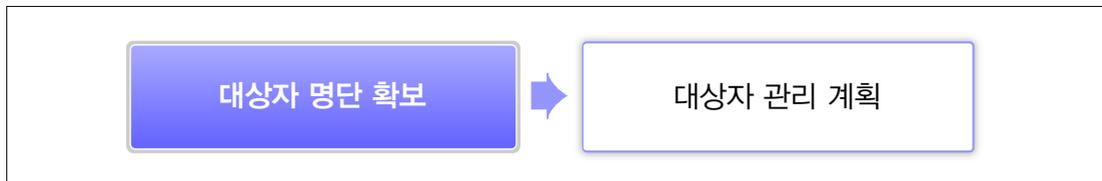
II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실제

1. 대상자 선정



가. 대상자 명단 확보



1) DW시스템(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에서 명단 확보

① 장기입원자 명부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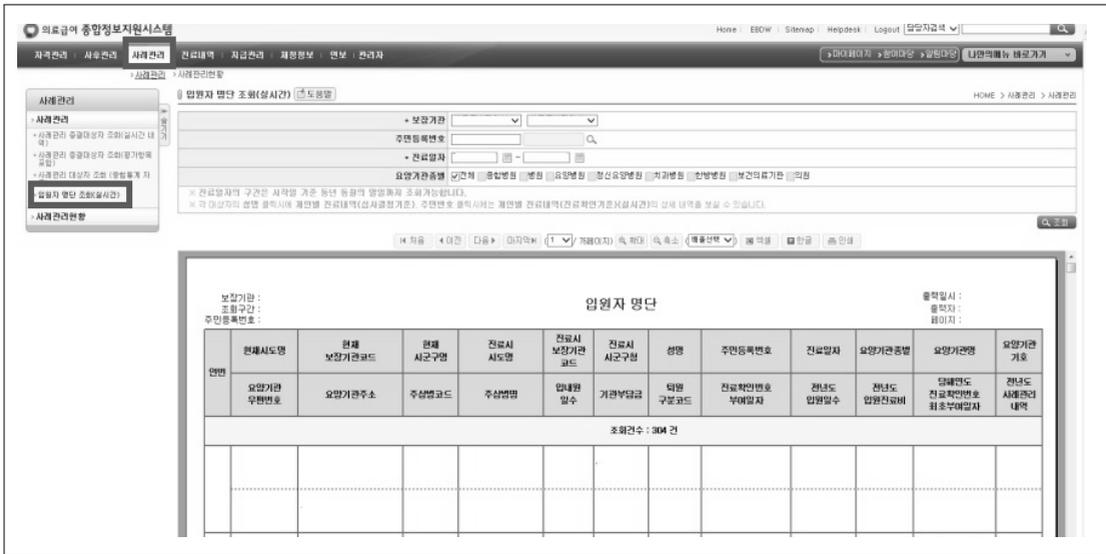
장기입원자 명부 조회 : DW시스템 → 진료내역 → 급여내역 → 장기입원자 명부(공단)



② 입원자 명단 조회 (※ 진료확인자료 기준)



입원자 명단 조회 : DW시스템 → 사례관리 → 사례관리 → 입원자 명단 조회(실시간)



2)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장기입원자 현황자료 요청하여 명단 확보

예시 : (장기)입원자 현황자료 제출 요청 공문 (수신자 : 의료급여기관)

○○시·군·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장기)입원자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군·구에서는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 도모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법 제32조2(자료의 제공)에 근거하여, 귀 기관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자료를 요청하오니 20○○년 ○월 ○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원환자 현황 서식 1부. 끝.

시·군·구청장

예시 : (장기)입원자 현황자료 제출 요청 공문 (수신자 : 사회복지시설)

○○시·군·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장기)입원자 현황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우리 시·군·구에서는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대상자 중 (장기)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장기)입원자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20○○년 ○월 ○일(월)까지 우리 시·군·구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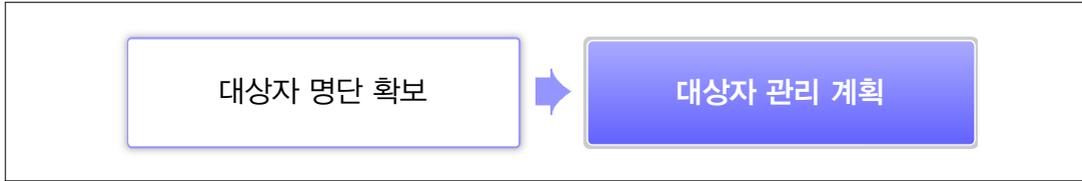
- 붙임 1. (장기)입원자 현황 조사표
 2. (장기)입원자 안내문(시설용). 끝.

시·군·구청장

사례관리 대상자 개인정보 요청 및 취급 관련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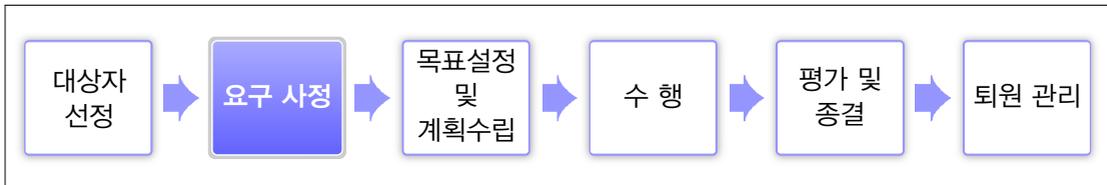
- 「의료급여법」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구청장,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5조의2 제3항 또는 이 영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나. 대상자 관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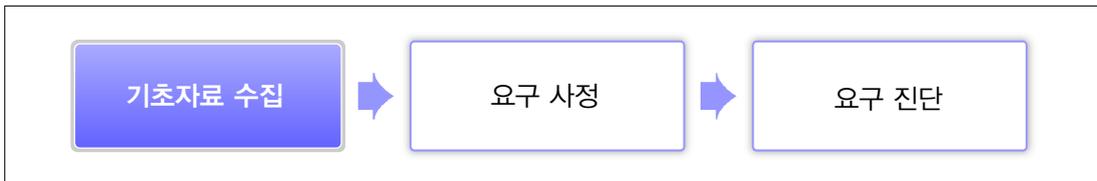


- 장기입원자 목표관리 업무량 등 고려하여 사례관리 계획표 작성

2. 요구 사정



가. 기초자료 수집



1) 행복e음 활용

① 기초정보 조사



의료급여수급권자 정보 조회 : 행복e음 → 의료급여 → 자격관리 → 수급권자 정보 조회

The screenshot shows the '행복e음' (Happy eum) social welfare information system interface. The left sidebar contains a navigation menu with the following items:

- 의료급여
 - 신청관리
 - 요양비지급청구(출산비기타)
 - 요양비지급청구(영노소모품)
 - 의료급여기관외래진료본인부담면제신청
 - 자격관리
 - 수급권자 정보 조회**
 - 의료급여 차종종사 제외대상자 목록 조회
 - 수급권자 목록 조회
 - 관리자료 출력
 - 급여대상인 대상자 관리
 - 의료급여수급자 급여일수 관리
 - 의료급여제한 관리
 - 의료급여증 관리
 - 의료급여증 교부 등록 및 출력
 - 의료급여증 발급 출력
 - 의료급여증 교부 현황 및 반납 처리
 - 수급권자지정
 - 요양비지급 관리-출산기타
 - 요양비지급 관리-산소치료
 - 요양비지급 관리-영노소모품
 - 임신 출산 진료비 관리
 - 임신 출산 진료비 환급금관리
 - 장애인보장구 지급 관리
 - 장애인보장구 기준 관리
 - 본인부담완화
 - 본인부담구분 대상자 관리
 - 수급권자별 선택병의원 조회
 - 건강생활유지비 전액 지급 관리
 - 산정특례대상자관리
 - 산정특례근로수선내역관리
 - 노인돌니지원대상자관리
 - 노인돌니유지관리내역
 -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관리
 - 의료급여 처석제거관리
 - 본인부담분상급 관리
 - 본인부담분상급 관리
 - 의료급여비용 관리
 - 상해요인 진료비 관리
 - 사망실상자 급여비용 관리
 - 중복청구 급여비용 관리
 - 투여기간 관리의약품 조과 수급권자 관리

The screenshot shows the '행복e음' (Happy eum) social welfare information system interface for searching beneficiary information. The search criteria are: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The search results are displayed in three sections:

③ 수급자 기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나이)	소재행정동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취업상태	직장명	직장전화	최종학력
근로능력	건강상태	질병종류	종합장애등급
장애등록일자	장애종지일자	주장애유형	부장애유형

④ 의료급여 취득 정보

가구주성명	가구주주민번호	가구주취득일자	가구주와의관계
대상자구분	급여유형	종별	전산관리번호
취득일자	취득사유	상실일자	상실사유
입대일자	제대일자	시설명	
양부모성명	양부모주민번호	지원방식	자격상태

⑤ 본인부담구분 & 선택병의원 정보

본인부담구분	신청일자	작업구분	시작일자	종료(예정)일자	선택기준년도	질환구분	질병명	복합질환 여부	출산(예정)일시	재학증명 여부
1.선택의료급여기관										
3.선택한의원										
2.추가선택의료급여기관										
4.선택치과의원										

5
장기입원 사례관리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 조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 조회 1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장기입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자 조회

※ 해당 정보는 (노인)업무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판정자 조회 화면이 연동되는 것으로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 정보 확인에 각별히 주의 요망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 조회 3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 관리 → 장기입원 →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등록 → 장기요양등급 조회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등록
수령기록지관리 자재평가서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

● 기초조사서 등록내역

순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재등록여부	비상연락관계코드	의료급여관리사	전송여부

인적사항	대상자 기본정보	합리적의미용	건강상태의 질	자가건강관리 능력	지지체계 구축	수행계획
외래 사례관리 유무 <input type="radio"/> 유 <input type="radio"/> 무 사례관리 시작일자 <input type="text"/> (년-월-일) 등록일자 2017-12-05 (년-월-일) 관외개입 보장기관 --- 시도선택 --- 비상연락번호 --- --- 결혼구분 선택 종교 선택 거주지여부 <input type="radio"/> 있다 <input type="radio"/> 없다 의사소통능력 <input type="radio"/> 가능 <input type="radio"/> 불가능	재등록여부 <input type="radio"/> 최초등록 <input type="radio"/> 재등록 사례관리 종결일자 <input type="text"/> (년-월-일) 지역구분 <input type="radio"/> 관내 <input type="radio"/> 관외 --- 시군구선택 --- 비상연락관계 선택 동거인관계 선택 직업 <input type="radio"/> 있다 <input type="radio"/> 없다 흡소독 <input type="text"/> 원 장애유형 선택	의료급여관리사 <input type="text"/> 종결예정일자 <input type="text"/> (년-월-일) 근로능력 <input type="radio"/> 있다 <input type="radio"/> 없다 관외개입 의료급여관리사 <input type="text"/> 직계가족수 <input type="text"/> 명 동거인수 <input type="text"/> 명 최종학력 선택	장기요양등급조회 장기요양등급조회 복지서비스조회 장애등급 <input type="text"/> 급			

사례관리 시작일자는 입력일자 전 1개월 이내로 입력해야 합니다. 재원일수는 사례관리 시작일자에서 입원일을 뺀 기간만큼 자동 설정됩니다.
 종결예정일은 사례관리 시작일자로부터 6개월+10일로 자동 설정됩니다.
 종결예정일 이내에만 수정 및 자재평가서의 공단전송이 가능합니다.

자원연계의뢰
삭제 추가등록 저장

③ 복지서비스 조회



복지서비스 조회 1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장기입원 →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관리 → 복지서비스 조회

복지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업무장 · My메뉴 · 새창 · 운영관리

변동 사항 의료급여

장기입원기초조사서관리

관할시도 [] 관할시군구 [] 관할행정동 []

지역구분 관내 관외

의료급여관리사 [] 사례관리시작일자 [] ~ [] 관외 의료급여관리사 []

수행계획구분 [선택] 예상계획일자 [] ~ [] 수급권자주민등록번호 []

조회

검색결과 [총 6건] *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사례관리시작일자 기간을 한달 및 의료급여관리사 이름을 입력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조회 복지서비스조회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내/관외	시작일자	종결 예정일자	종결일자	의료급여종별	최초/재등록	퇴원여부	관리행정동	대상자 연락처	의료급여관리사	관외 계

엑셀 수정 신규등록

복지서비스 조회 1-① : 복지서비스 상세 조건

복지서비스 조회

복지서비스 조회 서비스별 모의계산

① 지역 [] 시군구 [] 행정동 [] 조회구분 [] 내가등록한제공주체

검색어 제공주체명 제공서비스명 프로그램명 서비스상세설명

조회

조회결과 상세조건 최근 6개월 이내 활용되지 않은 자원입니다.

순번	제공주체명	제공서비스명	프로그램명	서비스유형	최종활용일자	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

자원(엑셀) 다운로드

확인 닫기

복지서비스 조회 1-① : 복지서비스 상세 조건

복지서비스 조회

복지서비스 조회 서비스별 모의계산

① 조회조건

지역 내가등록한제공주체
 조회

검색어 제공주체명 제공서비스명 프로그램명 서비스상세설명
 🔍

주요문제영역

서비스분류

상세등록구분

<input type="checkbox"/> 희망	<input type="checkbox"/> 드림	<input type="checkbox"/> 범정부	<input type="checkbox"/> 디딤돌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공동모금회	<input type="checkbox"/> 지자체계별사업	<input type="checkbox"/> 전국단위민간자원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	<input type="checkbox"/> 푸드뱅크

② 대상기준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특성 일반 여성 임산부 장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실업자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득구분 일반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가구유형 일반 한부모 다문화 조손 새터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서비스유형 현금 현물 바우처 프로그램 자원봉사 시설입소 대여/감면

③ 조회결과
상세조건
최근 6개월 이내 활용되지 않은 자원입니다.

순번	제공주체명	제공서비스명	프로그램명	서비스유형	최종활용일자	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

자원(엑셀) 다운로드
확인 닫기

복지서비스 조회 1-② : 서비스별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조회

복지서비스 조회 서비스별 모의계산

2

서비스별 모의계산

- 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 초·중·고교육비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연금
 - 한부모가족지원
 - 기초연금
 - 산모·산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지자체 복지사업은 대상이 아니며, 중앙부처 9개 사업에 대해서만 모의계산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모의산정 결과는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해 입력된 소득·재산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실제 정확한 자격선정 여부 판단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④ 기본사항
(금액단위: 원)

지역구분

재산특례 제외여부

⑤ 소득사항 (필)
가구원수 명

선택	가구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미전소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value="가주주"/>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value="배우자"/>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⑥ 가구특성 지출요인 (필)
*미전소득: 공적미전소득, 사적미전소득 행추가 행삭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input type="text" value="0"/>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할보조금	<input type="text" value="0"/> 원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input type="text" value="0"/> 원

⑦ 근로소득공제액 (필)
근로소득공제액 원

소득평가액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원	
소득인정액	원	
생계기준금액	원	
의료기준금액	원	
주거기준금액	원	
교육기준금액	원	
부양의무자기준		
선정결과		

상세보기

복지서비스 조회 2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장기입원
→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등록 → 복지서비스 조회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등록 수령기록지관리 자체평가서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초조사서 등록내역

순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재등록여부	비상연락관계코드	의료급여관리사	전송여부

인적사항 대상자 기본정보 합리적의료이용 건강상의 질 자가건강관리 능력 지지체계 구축 수행계획

외래 사례관리 유무 유 무 재등록여부 최초등록 재등록 의료급여관리사

사례관리 시작일자 사례관리 종결일자 종결예정일자

등록일자 2017-12-05 지역구분 판내 판외 근무능력 있다 없다

관외개입 보장기관 --- 시도선택 --- --- 시군구선택 --- 의료급여개입

비상연락번호 비상연락관계 선택 직계가족수 명

결혼구분 선택 통거인관계 선택 통거인수 명

종교 선택 직업 있다 없다 최종학력 선택

거주지역부 있다 없다 흡소득 원 장기요양등급조회 **장기요양등급조회** 복지서비스조회

의사소통능력 가능 불가능 장애유형 선택 장애등급 급

사례관리 시작일자는 입력일자 전 1개월 이내로 입력해야 합니다. 재원일수는 사례관리 시작일자에서 입원일을 뺀 기간만큼 자동 설정됩니다.
종결예정일은 사례관리 시작일자로부터 6개월+10일로 자동 설정됩니다.
종결예정일 이내에만 수정 및 자체평가서의 공단전송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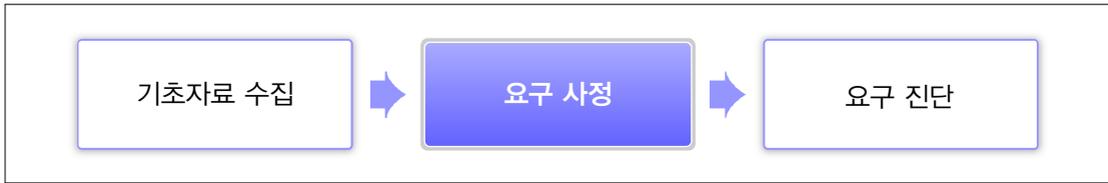
자원연계의뢰 삭제 추가등록 저장

2) DW시스템 활용

- ① 대상자 진료내역 확인 후 의료이용 행태 분석
- ②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조회



나. 요구 사정



- 대상자 요구 성과지표에 의거하여 사정
 - 요구 점수 사정은 영역별 세부 항목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의료급여수급자 요구 사정 지표별 측정기준표’ 및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 성과지표’를 확인하여 (장기)입원자 기초조사서[서식5] 작성
 - 각 영역별 세부 기준에 맞춰 측정

요구점수 사정 영역

영역	세부 항목
I. 제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입원 사례관리 이해
II. 합리적 의료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입·퇴원 정도 • 입원기간의 적정성 • 입원 의료이용의 합리성
III. 건강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상태 • 우울, 통증 정도 • 일상생활수행 정도 • 튜브관리 정도 • 상처관리 정도
IV. 자가 건강관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변화 관찰·확인 • 규칙적 식사 가능 여부 • 정기적 신체활동 가능 여부 • 규칙적 약물복용 여부 • 외래방문 약속일 준수 가능 여부
V. 지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되는 자원서비스 • 요구되는 자원연계기관 • 사회적 고립도

의료급여수급자 요구 사정 지표별 측정기준표

I. 제도 이해	1. 장기입원 사례관리 이해	의료급여제도 및 장기입원 사례관리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 정도 1. 전혀 모른다 2. 잘 모른다 3. 보통 4. 잘 안다 5. 매우 잘 안다
II. 합리적 의료이용	1. 반복적 입·퇴원 정도	동일 질병으로 타 의료기관 또는 동일 의료기관을 반복적으로 입·퇴원하는 정도 1. 매우 문제있다 2. 문제있다 3. 보통 4. 적정하다 5. 문제없다
	2. 입원기간의 적정성	대상자 건강상태 대비 불필요한 입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1. 매우 문제있다 2. 문제있다 3. 보통 4. 적정하다 5. 매우 적정하다
	3. 입원 의료이용의 합리성	대상자 질병상태 및 증상 대비 재원일수, 반복적 입·퇴원 의료기관 수, 입원한 의료기관 종류 등 의료이용의 합리성 정도 1. 매우 문제있다 2. 문제있다 3. 보통 4. 적정하다 5. 매우 적정하다
III. 건강 삶의 질	1. 주관적 건강상태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 판단 1.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 2. 매우 나쁘다 3. 나쁘다 4. 보통이다 5. 좋다 6. 매우 좋다
	2. 우울 정도	최근 일주일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정서 상태에 대해 각 항목의 내용을 질문한 후 우울 정도 판단 1.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 2. 자살을 자주 생각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다 3.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희망이 없다 4. 때때로 지루하다고 생각하나 그런대로 삶에 만족한다 5. 희망적이며 주위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6. 매사에 활력이 있으며 삶에 만족하고 있다
	3. 통증 정도	최근 일주일을 기준으로 통증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 판단 1.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 2. 매우 심한 통증 3. 심한 통증 4. 보통 5. 가벼운 통증 6. 전혀 없다

	4. 일상생활 수행 정도	<p>일상수행능력에 대해 각 항목을 질문한 후 의료급여관리사가 판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전히 무력하다.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고 전적으로 침대나 의자에 누워있어야 한다. 2. 단지 제한적으로만 자신을 돌볼 수 있다.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있거나 앉아있다. 3. 보행이 가능하고 자신을 돌보는 모든 일은 가능하지만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4.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은 제한 받으나 보행은 가능하고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다. 5. 제한 없이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5. 튜브관리 정도	<p>산소 흡입, 비위관 영양공급 등 튜브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못함 2. 부분적 가능 3. 보통 4. 잘함 5. 튜브 없음
	6. 상처관리 정도	<p>욕창, 당뇨병성 발궤양 등 신체 내 상처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못함 2. 부분적 가능 3. 보통 4. 잘함 5. 상처 없음
IV. 자가 건강 관리 능력	1. 신체변화 관찰, 확인	<p>스스로 건강상태 및 신체 이상증후 등을 관찰·확인할 수 있는 정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못함 2. 부분적으로 가능 3. 보통 4. 잘함 5. 매우 잘함
	2. 규칙적 식사 가능 여부	<p>스스로 규칙적인 식사 할 수 있거나 보조를 받아 식사 할 수 있는 정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못함 2. 부분적으로 가능 3. 보통 4. 잘함 5. 매우 잘함
	3. 정기적 운동 및 신체활동	<p>보행 또는 이동 등 정기적으로 신체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못함 2. 부분적으로 가능 3. 보통 4. 잘함 5. 매우 잘함
	4. 규칙적 약물 복용	<p>의사의 처방을 준수하여 스스로 규칙적인 약물 복용을 할 수 있는 정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못함 2. 부분적으로 가능 3. 보통 4. 잘함 5. 매우 잘함
	5. 외래방문 약속일 준수	<p>스스로 외래 방문일에 약속을 준수하여 방문할 수 있는 정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혀 못함 2. 부분적으로 가능 3. 보통 4. 잘함 5. 매우 잘함

V. 지지 체계 구축	1. 요구되는 자원서비스	대상자 초기 면담 시 퇴원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원서비스 내용 모두 체크
	2. 요구되는 자원서비스 수	대상자 초기 면담 시 퇴원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원서비스 수 1. 매우 많음(10개 이상) 2. 많음(6~9개) 3. 보통(3~5개) 4. 적음(1~2개) 5. 없음
	3. 요구되는 자원연계기관	퇴원 후 거주지가 없어 퇴원을 못하는 경우 초기 면담 시 대상자에게 거주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연계기관 모두 체크
	4. 사회적 고립도	의료급여관리사가 대상자에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질문한 후 체크 (체크된 항목 개수 = 해당 점수, '해당사항 없음' 항목은 제외)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할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도와줄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밖에 나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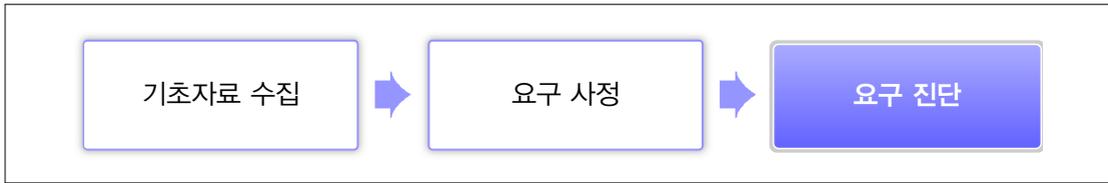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 성과지표

I. 자가 건강관리능력 (25점)	
1. 신체변화 관찰, 확인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으로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2. 규칙적 식사 가능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으로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3. 정기적 신체활동 가능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으로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4. 규칙적 약물복용 가능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으로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5. 외래방문 약속일 준수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으로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II. 합리적 의료이용 (35점)	
1. 장기입원 사례 관리 이해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 ④ 잘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2. 반복적 입·퇴원 정도	① 매우 문제있다(2점) ② 문제있다(4점) ③ 보통(6점) ④ 걱정하다(8점) ⑤ 문제없다(10점)
3. 입원기간의 적정성	① 매우 문제있다(2점) ② 문제있다(4점) ③ 보통(6점) ④ 걱정하다(8점) ⑤ 문제없다(10점)
4. 입원 의료이용의 합리성	① 매우 문제있다(2점) ② 문제있다(4점) ③ 보통(6점) ④ 걱정하다(8점) ⑤ 문제없다(10점)
III. 지지체계 구축 (10점)	
1. 자원 연계	<p>〈요구되는 자원서비스 수〉</p> <p>① 매우 많음(10개 이상) ② 많음(6~9개) ③ 보통(3~5개) ④ 적음(1~2개) ⑤ 없음</p> <p>2. 사회적 고립도</p> <p>〈점수 : 체크된 항목 개수, '해당사항 없음' 항목 제외〉</p> <p><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할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도와 줄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밖에 나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p>

IV. 건강 삶의 질(30점)

1. 주관적 건강상태	①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 ④ 보통	② 나쁘다 ⑤ 좋다	③ 조금 나쁘다 ⑥ 아주 좋다
2. 우울 정도	①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 ② 자살을 자주 생각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다. ③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희망이 없다. ④ 때때로 지루하다고 생각하나 그런대로 삶에 만족한다. ⑤ 희망적이며 주위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⑥ 매사에 활력이 있으며 삶에 만족하고 있다.		
3. 통증 정도	①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 ④ 보통	② 매우 심한 통증 ⑤ 가벼운 통증	③ 심한 통증 ⑥ 전혀 없다
4. 일상생활 수행정도	① 완전히 무력하다.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고 전적으로 침대나 의자에 누워 있어야 한다. ② 단지 제한적으로만 자신을 돌볼 수 있다.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거나 앉아있다. ③ 보행이 가능하고 자신을 돌보는 모든 일은 가능하지만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④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은 제한 받으나 보행은 가능하고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다. ⑤ 제한 없이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5. 튜브관리 정도	① 전혀 못함 ④ 잘함	② 부분적 가능 ⑤ 튜브 없음	③ 보통
6. 상처관리 정도	① 전혀 못함 ④ 잘함	② 부분적 가능 ⑤ 상처 없음	③ 보통

다. 요구 진단



○ 요구 사정된 항목을 문제영역에 따라 분류, 그에 따른 요구진단을 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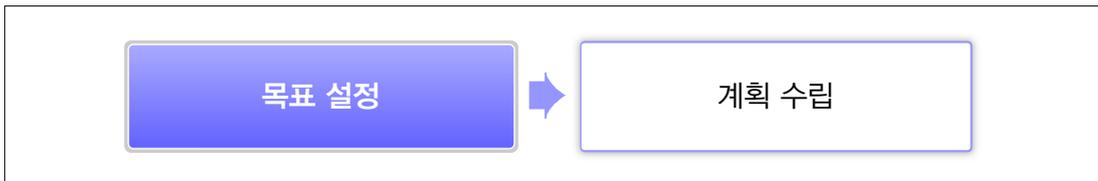
🔍 문제영역별 요구 진단

영역	세부 항목	요구 진단
I. 제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입원 사례관리 이해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입원 사례관리 이해 부족
II. 합리적 의료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의료이용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입·퇴원 정도 - 질병 관련 입원기간의 적정성 - 입원 의료이용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합리적 의료이용
III. 건강 삶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능력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 - 우울 정도 - 통증 정도 - 일상수행능력 정도 - 튜브관리 정도 - 상처관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능력 부족
IV. 자가 건강관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건강관리능력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변화 관찰·확인 - 규칙적 식사 가능 여부 - 정기적 신체활동 가능 여부 - 규칙적 약물복용 여부 - 외래방문약속일 준수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건강관리능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변화 관찰 곤란 - 불규칙적 식사 - 정기적 신체활동 곤란 - 규칙적 약물복용 불이행 - 외래방문약속일 준수 불이행
V. 지지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연계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되는 자원서비스 - 요구되는 자원연계기관 • 사회적 고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연계 부족 • 사회적 고립

3.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가.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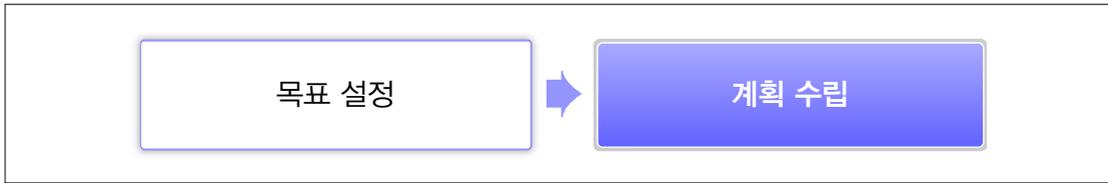


- 사정 영역에 의거, 요구 진단 목록 작성하여 목표 설정

요구 진단에 따른 목표 설정

요구 진단 목록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입원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입원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합리적 의료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입·퇴원 - 부 적정 입원기간 - 입원 의료이용의 비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의료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능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불건강상태 - 일상수행능력 저하 - 통증 - 우울 - 튜브관리 미흡 - 상처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건강관리능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변화 관찰 곤란 - 규칙적 식사 곤란 - 정기적 신체활동 곤란 - 규칙적 약물복용 불이행 - 외래방문 약속일 준수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연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연계

나. 계획 수립



- 요구 진단별 설정 목표에 따라 수행 가능한 활동 위주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사례관리 기간, 수행방법 및 내용, 상담일 등 기재
 - 대상자와 함께 목표를 설정·계획하여 상호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함
- 장기입원자를 포함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행활동 계획 수립

예시 :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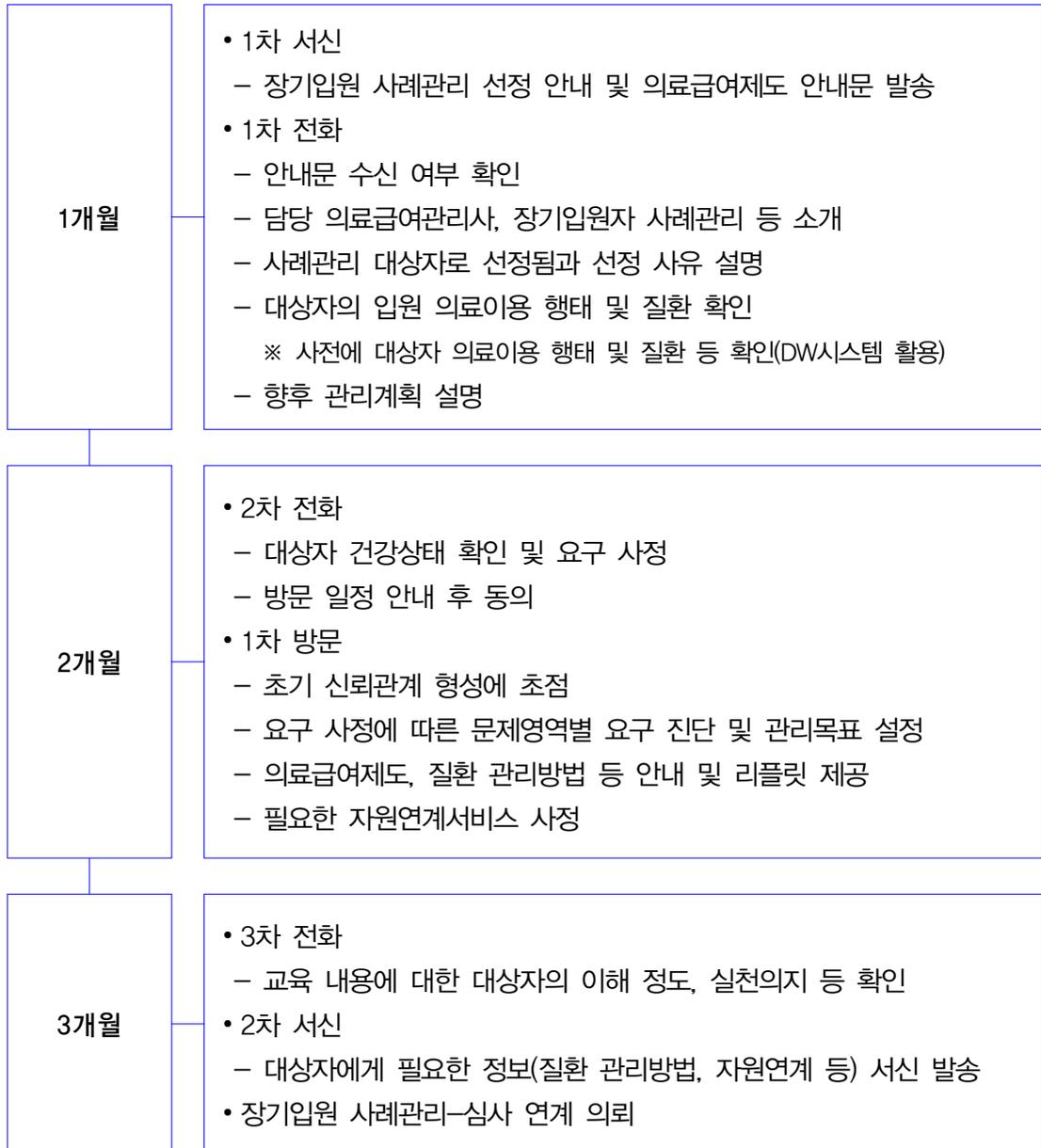
< 대상자 사례관리 계획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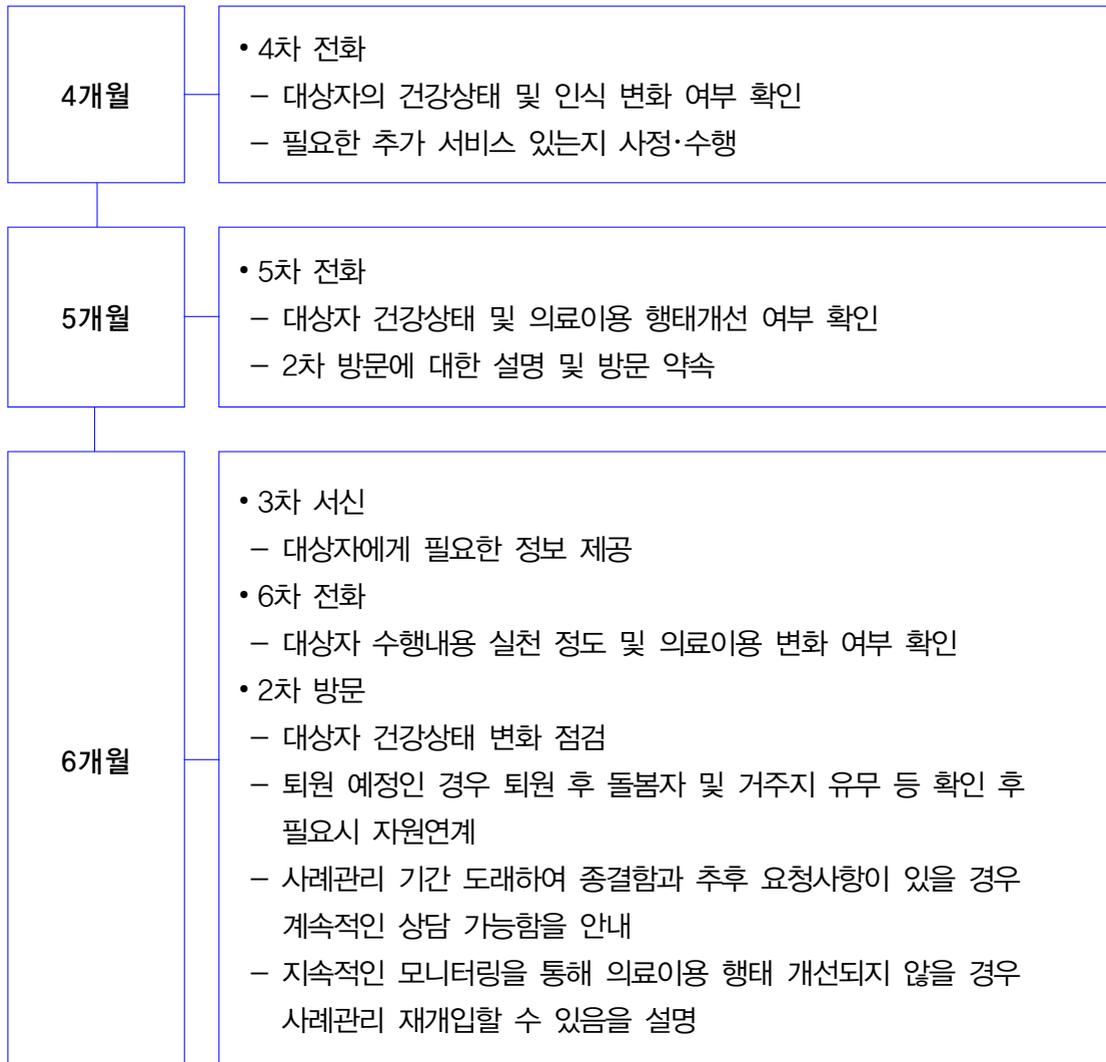
1. 입원자 : □□□
2. 의료기관 : ◇◇◇요양병원
3. 사례관리 기간 : 6개월(20○○년 1월 2일 ~ 6월 30일)
4. 사례관리 수행 계획 일자
 - 서신 횟수 : 3회(20○○.01.02. / 03.02. / 06.02.)
 - 전화 횟수 : 6회(20○○.01.02. / 02.02. / 03.02. / 04.02. / 05.02. / 06.02.)
 - 방문 횟수 : 2회(20○○.02.01. / 06.15.)
 - 자원연계 횟수 : 1회(20○○.06.20.)
 - 마지막 평가일자(종결일자) : 20○○.06.30.
5. 수행 내용
 - 요구 진단에 따른 수행

4. 수행



가. 서비스 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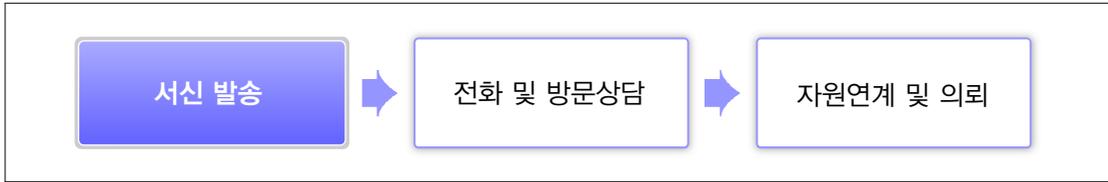




※ 상기 내용은 표준 절차 예시로, 대상자 특성에 따라 서비스 수행 내용 및 절차는 다르게 진행할 수 있음

나. 서비스 수행 내용

1) 서신 발송



- 장기입원자에게 의료급여제도 및 사례관리 대상 선정 안내문 발송

2) 전화 및 방문상담



-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일정 약속
- 의료급여기관 및 시설 방문하여 대상자 기초정보 조사
- 필요시 주치의 면담, 진료·간호기록지 열람 등을 통해 대상자 현 건강상태, 치료내용, 퇴원 가능 날짜 등 파악
- 대상자 사정 내용 참고하여 사례관리 수행
 -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퇴원사정도구[서식기 참조]
- 부 적정 장기입원자의 경우 사정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입원 원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 후 퇴원 유도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의료급여수급자용)」 리플릿

03 퇴원 후에도 사례관리 및 지역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내용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 신청 :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시설입소 서비스

- 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내용 : 촉탁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생활지도 교사 등의 전문적 지원, 안정적인 생활유지,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참여 등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판정자로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 내용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환자가족돌봄지원서비스 등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내용 : 신체수발지원, 신변활동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1~2급 장애인
-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간호, 구강위생 등)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과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당 시군구청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연락주세요.

_____ 청
_____ 과
_____ 의료급여관리사
_____ 연락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삶 의료급여관리사가 함께합니다.

의료급여제도안내, 올바른 의료이용방법 및 건강관리 상담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장기입원 사례관리란?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부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 자원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



장기입원 사례관리 진행 과정

01 이런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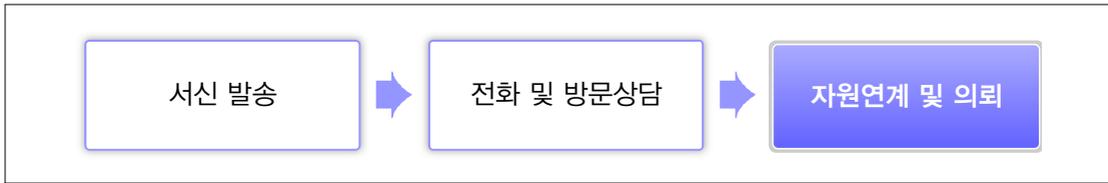
- 동일 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 1일 이상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
- 숙식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 동원진료가 가능함에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입원하는 경우
- 가족이 불필요하게 동반 입원하는 경우
- 항후 부적정 입원이 지속되는 경우 의료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2 서신, 전화, 방문을 통하여 상담합니다.

- 정보제공**
 - 의료급여제도, 의료이용방법 등
- 건강상담**
 - 자가 건강관리, 질환관리, 약물 복용법 등 안내
- 자원연계**
 - 사회복지시설 입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 재가서비스
 - 방문보건 서비스
 - 기타 서비스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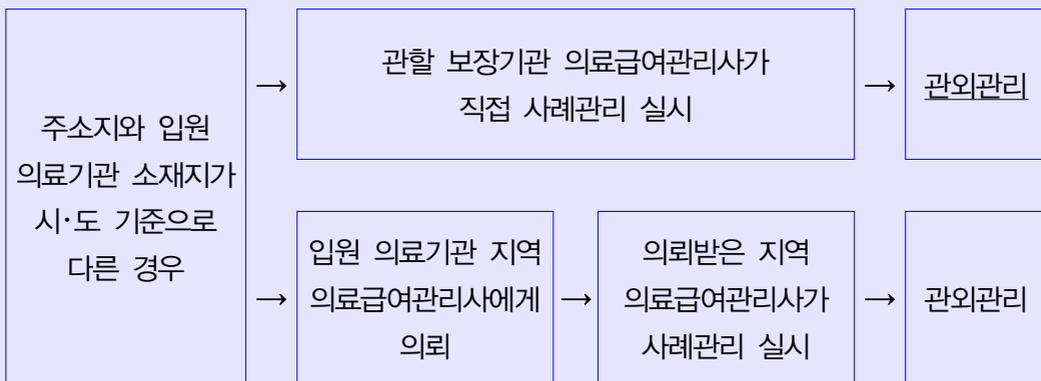


3) 자원연계 및 의뢰



- 퇴원 시 필요한 자원연계
- 관외 (장기)입원자 관리 및 의뢰
 - 시·도 단위 기준으로 관할 보장기관에서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타 시·도 입원 시 해당 보장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음
 - 의뢰받은 보장기관에서 사례관리 실시한 경우 의뢰한 보장기관과 실제 사례 관리 수행한 보장기관 모두 실적으로 인정

관외 (장기)입원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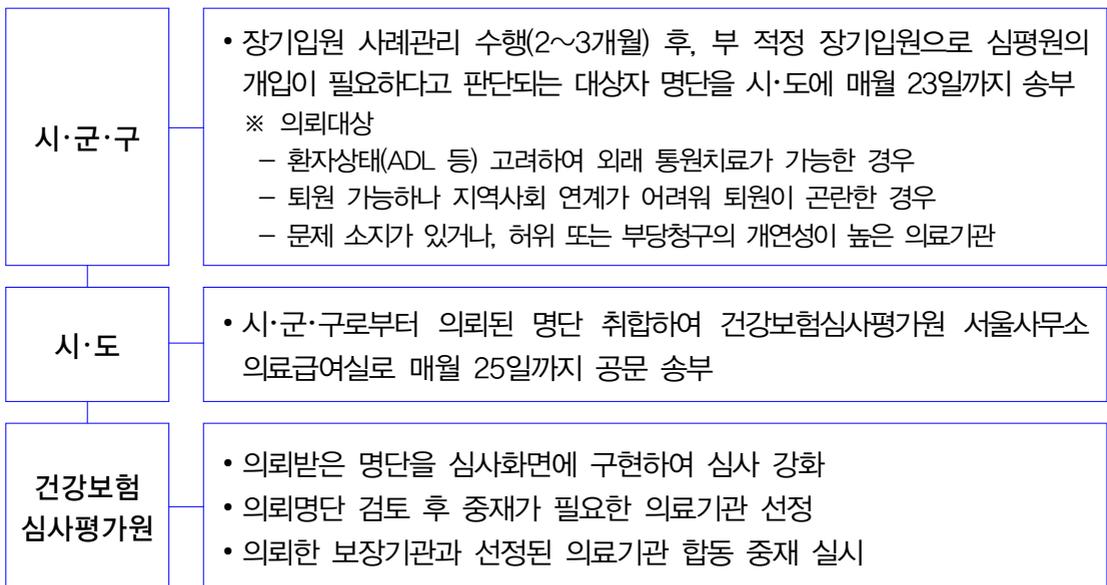
- 예) 주소지는 서울시 서초구로 경기도 수원시에 입원 중인 수급자
- 서울시 서초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사례관리 한 경우 : **관외관리**
 - 경기도 수원시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의뢰·수행한 경우 : **관외관리**

관외 (장기)입원자 기초조사서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장기입원 → 장기입원 기초조사서 등록 → 인적사항 → 지역구분 : '관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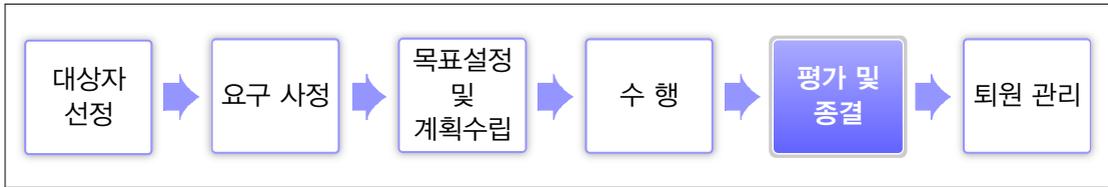
○ 장기입원 사례관리 - 심사 연계

- 장기입원 사례관리 중 수급자 측면 사유 외에 의료급여기관의 협조가 안 되어 퇴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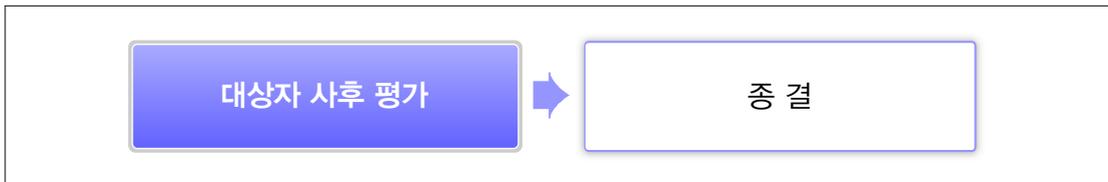
〈 장기입원 사례관리 - 심사 연계 수행 절차 〉



5. 평가 및 종결



가. 대상자 사후 평가



- 대상자 요구 성과지표 활용하여 사후 평가 실시
- 모든 수행 종료 후 대상자 요구 변화를 최종 평가하고 사전 평가점수와 비교
- 행복e음 자체평가서는 수행기록지 마지막 차수의 수행 평가점수가 최종 사후 점수로 기록됨
 - ※ 요구 사정 부분의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 성과지표(p.107)' 참조
- 자원연계를 한 경우 반드시 '자원연계서비스' 란에 표시 여부 확인 후 최종 사후 평가함
 - ※ 행복e음 자체평가서 자원연계서비스 체크 화면은 추후 변경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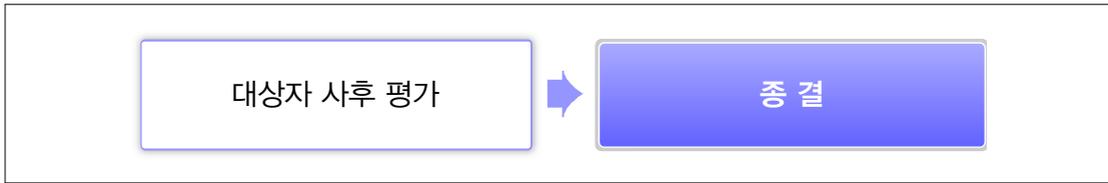
퇴원예정자 관리

- ◆ 퇴원 후 거주지(집, 시설 등)에 따라 사례관리 실시
- ◆ 건강상태 변화, 부적절한 질환 관리 등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재입원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방적 측면의 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실시
- ◆ 퇴원 후 필요한 자원연계

🔄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측정표

영역	분류	점수
I. 자가 건강관리능력	1. 신체변화관찰 확인 가능	5
	2. 규칙적 식사 가능	5
	3. 정기적인 운동, 신체활동 가능	5
	4. 규칙적 약물복용 가능	5
	5. 외래방문 약속일 수행 가능	5
	소계	25
II. 합리적 의료이용	1. 제도 이해	5
	2. 반복적 입·퇴원 정도	10
	3. 입원기간의 적정성	10
	4. 의료이용의 합리성	10
	소계	35
III. 지지체계 구축	1. 사회적 고립도	5
	2. 자원연계 정도	5
	소계	10
IV. 건강 삶의 질	1. 건강상태	5
	2. 일상생활수행 능력	5
	3. 통증	10
	4. 우울	10
	소계	30
총계(100점)		100

나. 종결



1) 종결기준

- 일반종결
 -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기간과 목표관리 횟수가 끝난 경우
- 조기종결
 -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기간 내 퇴원한 경우
 - ※ 퇴원 당일 타 의료급여기관으로 전원 간 경우 계속 입원이므로 조기종결에 해당되지 않음
- 중도종결
 - 대상자 사망, 전출, 수급 중지 등으로 인해 사례관리가 어려운 경우
 - ※ 사망은 퇴원이 아니므로 중도종결에 해당
 - 의료급여관리사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적극적 개입에도 행태변화 가능성이 없어 의료급여관리사가 종결하기로 판단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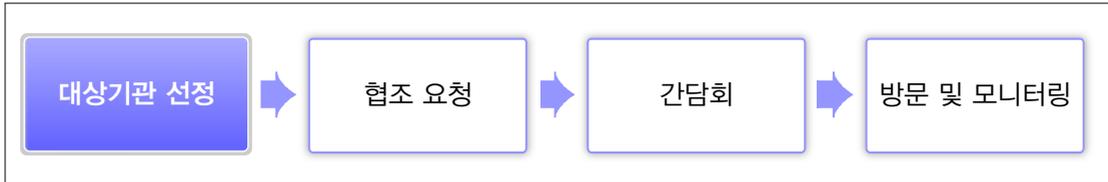
2) 재개입

- 사례관리 종결 후 재개입이 필요한 경우 종결 1개월 후 개입

Ⅲ

의료급여기관 사례관리

1. 의료급여기관 대상 선정



가. 지역 내 전체 의료급여기관

나. 동일상병 31일 이상 (장기)입원자가 다수인 의료급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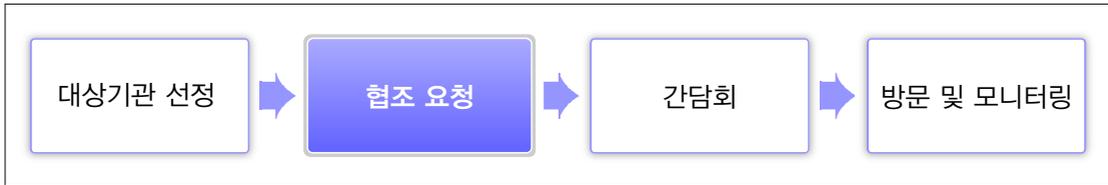
의료급여기관 명부 조회 : DW시스템 → 자격관리 → 의료급여기관 → 의료
급여기관 명부



다. DW시스템에서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기초정보 조사 후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의료급여기관 명단 작성

시도	시군구	의료급여기관 정보							비고
		기관명	기관기호	대표	기관유형	병상 수	(장기)입원 수급자 수	연락처	

2. 협조 요청



- 장기입원자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에 장기입원 사례관리 안내문, 리플릿 등 첨부하여 협조 공문 발송

예시 :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협조 요청 공문 (수신자 : 의료급여기관)

○○시·군·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관련 의료급여기관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군·구에서는 외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의료급여기관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부 적정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장기)입원자와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 이오니 귀 기관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붙임 1. 의료급여기관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협조 안내문 1부
2.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의료급여기관용) 리플릿 1부. 끝

시·군·구청장

예시 :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협조 안내문 (수신자 : 의료급여기관)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협조 안내문

평소 의료급여 업무에 대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별다른 치료 없이 숙식을 목적으로 하는 부 적정 (장기)입원자로 인해 의료급여 입원진료비가 매년 급증하여 의료급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에 의거, 우리 시·군·구에서는 부 적정(장기)입원 중인 대상자와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도모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귀 기관에 전화, 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시 사례관리 대상자 진료·간호기록지 열람을 요청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00년 0월 0일

□□시·군·구청 ◇◇◇◇과 (☎ 000-123-1234)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의료급여기관용)」 리플릿

장기입원 사례관리 서비스 내용

- 정보제공**
 - ☞ 의료급여제도, 의료이용방법 등
- 건강상담**
 - ☞ 자가 건강관리, 질환관리, 약물 복용법 등 안내
- 자원연계**
 - ☞ 사회복지시설 입소
 -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 ☞ 재가서비스
 - ☞ 방문보건 서비스 등
- 기타 서비스 지원**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 목적**
 - ☞ 장기입원 사례관리사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 효과성 증대
- 대상**
 - ☞ 장기입원 사례관리 시 수급권자 측면 사유 외에 의료기관의 협조가 안되어 퇴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
- 내용**
 - ☞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2~3개월 진행 후, 부적정 장기입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전문 심사 및 의료기관 중재 또는 현지조사 연계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장기입원 사례관리란?

입원 치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부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 자원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

장기입원 사례관리 대상

- 장기입원자**
 - ☞ 동일 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한 자
- 부적정 입원자**
 - ☞ 동일 상병으로 1일 이상 반복 입·퇴원자
 - ☞ 숙식 목적으로 입원하는 자
 - ☞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입원 하는 자
 - ☞ 입원 시 가족이 불필요하게 동반 입원 하는 자 등

장기입원자 및 부적정 입원자가 있는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장기입원 사례관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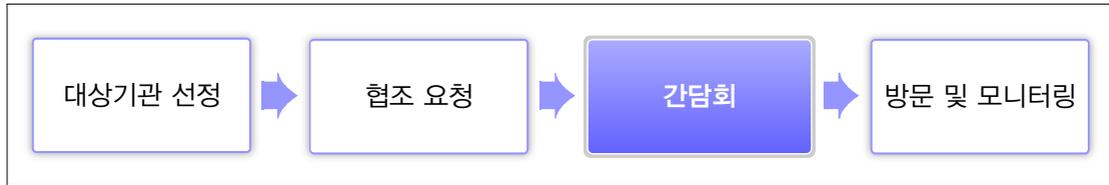
```

        graph TD
            A[대상선정] --> B[사례관리 홍보]
            B --> C[간담회 및 협조요청]
            C --> D[상담 및 자원연계]
            D --> E[퇴원 후 관리]
            
```

장기입원 사례관리의 필요성

- ☞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하여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요구 증대 및 의료급여기관 증가
- ☞ 특정 치료 없이 입원료만 발생시키는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증가
 - ※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연간 입원진료비 (14년 기준) : 670만원
- ☞ 부적정 과다 의료이용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 노출 증가

3. 간담회 개최



가. 개요

- 대상 : 관내 의료급여기관 입·퇴원 담당자 및 대표(원장), 의사, 간호사 등
- 횟수 : 보장기관과 의료급여기관 상황을 고려하여 연 1~2회 개최

나. 방법 및 절차

• 사전 협의

- 전화로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관련 협조 요청
- 간담회(방문교육) 개최 일정, 참석자, 교육 내용 등 협의

• 계획 수립

- 의료급여기관 담당자 의견 반영, 보장기관 여건 등 고려하여 계획 수립

• 자료 준비

- 『20○○ 의료급여사업안내』
-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안내문(리플릿)
 -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홈페이지 → 자료실 → 홍보자료 → 리플릿 게재
-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 현황 자료
- 의료급여기관 관계자 교육용 자료, 대상자 상담 기록지 등
- 퇴원 시 필요한 자원연계 목록
- 입소 가능한 요양시설 현황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절차 안내문(신청서, 의사소견서 양식)

• 간담회 개최 협조 공문 발송

□□시·군·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의료급여기관 실무자 간담회 참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 적정 (장기)입원 또는 수시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3. 관내 의료급여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0.0.0. (수) 14:00 ~

나. 장 소 : □□시·군·구청 ○층 ◇◇◇회의실

다. 참석 대상 : 관내 의료급여기관 입(퇴)원 담당자 및 대표자(원장),
의사, 간호사, 의료급여 담당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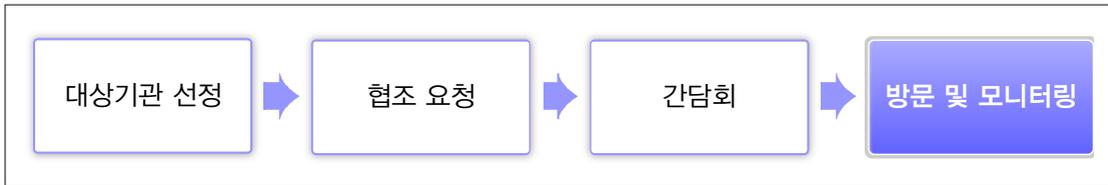
라. 주요 내용

- 의료급여사업 및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현황
- 의료급여기관 방문(교육) 필요성 및 협조 요청
- (장기)입원자 퇴원 시 필요한 자원연계 안내
- 기타 건의사항 등

붙임 간담회 계획안 1부. 끝.

시·군·구청장

4. 방문 및 모니터링



가. 월 1회 공문으로 장기입원자 현황 파악

나. 필요시 의료급여 담당자 방문 실시

예시 : (장기)입원자 명단 요청 및 방문 협조 공문 (수신자 : 의료급여기관)

○○시·군·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장기)입원자 명단 요청 및 방문일정 안내

1. 우리 시·군·구에서는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에 의거, 부 적정 (장기) 입원자에게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입원자 현황 파악 및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귀 기관에서 현재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명단을** 붙임 서식에 맞춰 작성 후 20○○년 ○월 ○일(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3. 추후 귀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입원자 및 입·퇴원 담당자와 면담할 예정이오니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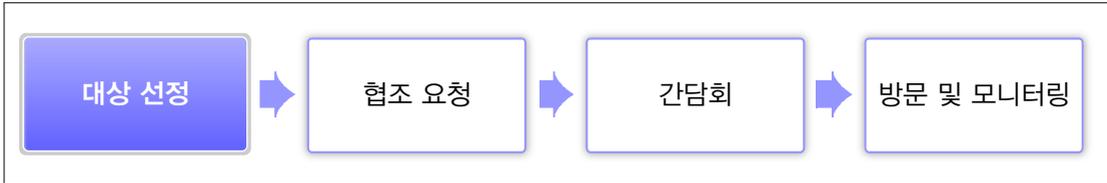
- 붙임
1. 재원환자 명단(양식)
 2. 의료급여기관 방문 일정표
 3.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협조 안내문(의료급여기관용)
 4.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의료급여기관용) 리플릿. 끝.

시·군·구청장

IV

사회복지시설 사례관리

1. 사회복지시설 대상 선정



가. 지역 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나. 장기입원자가 다수 입소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 복지시설현황 조회 : 행복e음 → 시설·법인 → 사회복지시설 관리 → 복지 시설 → 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대장 상세조회



☞ 사회복지시설대장 상세조회 도움말

시설신고(관리)번호

● 시설개요 닫기

시설유형	<input type="text"/>	시설종류	<input type="text"/>
시설명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설소재지	<input type="text"/>		
시설장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시설장명	<input type="text"/> <input type="radio"/> 내국인 <input type="radio"/> 외국인
시설장주소	<input type="text"/>	시설장자격번호	<input type="text"/>
설치주체구분	<input type="text"/>	시설설치일자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위탁여부	<input type="radio"/> 직영 <input type="radio"/> 위탁	법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대표자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대표자명	<input type="text"/>
대표자주소	<input type="text"/>	급여지급현황기준	<input type="text"/>
입소정원	<input type="text"/> 명	입소정원비고	<input type="text"/>
운영형태	<input type="text"/>	시설의료급여코드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방문목욕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checkbox"/> 단기보호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checkbox"/> 재가노인지원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checkbox"/>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input type="text"/> 명
특이사항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자활사업참여	<input type="checkbox"/> 자활사업참여함		

●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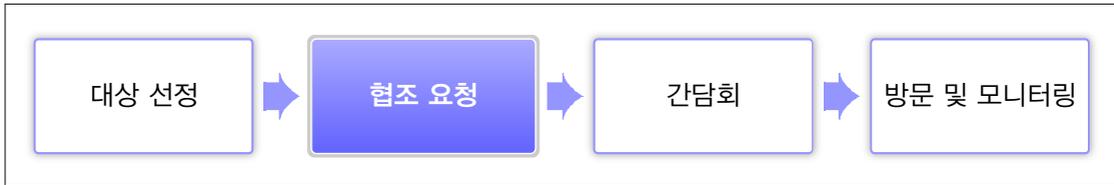
출인원	<input type="text"/> 명	자격증소지자	<input type="text"/> 명	요양보호사	<input type="text"/> 명
사무국장	<input type="text"/> 명	간호사	<input type="text"/> 명	간호사	<input type="text"/> 명
생활지도원	<input type="text"/> 명	생활복지사	<input type="text"/> 명	직업치료사	<input type="text"/> 명
영양사	<input type="text"/> 명	사무원	<input type="text"/> 명	정신보건전문요원	<input type="text"/> 명
조리원	<input type="text"/> 명	위생원	<input type="text"/> 명	관리인	<input type="text"/> 명

※ 사회복지시설대장 상세조회 유무는 보장기관별 행복e음 권한 부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 행복e음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기초정보 조사 후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명단 작성

사회복지시설 정보									비고
시설명	유형	시설장	주소	연락처	담당자	입소 정원	입소 현원	입원 수급자수	

2. 협조 요청



- 장기입원 대상자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장기입원 사례관리 안내문, 리플릿 등 자료 첨부하여 협조 공문 발송

예시 :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협조 요청 공문 (수신자 : 사회복지시설)

○○시·군·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장기)입원자 관리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협조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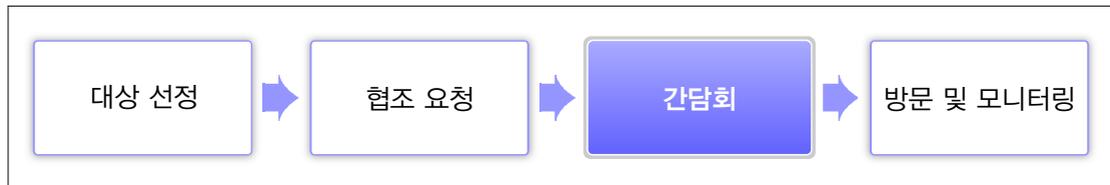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군·구에서는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추후 귀 기관을 방문하여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 담당자를 면담할 예정이니 귀 시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붙임 1. 사회복지시설 협조 안내문 1부
2.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리플릿 1부. 끝.

시·군·구청장

사회복지시설 협조 안내문 : ‘의료급여기관 협조 안내문 예시’ 참조 (p.124)

3. 간담회 개최



가. 개요

- 대상 : 시설장, 사무국장, 담당자(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
- 횟수 : 보장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상황을 고려하여 연 1~2회 개최

나. 방법 및 절차

- 사전 협의
 - 전화를 통해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관련 협조 요청
 - 간담회(방문교육) 개최 일정, 참석자, 교육내용 등 협의

- 계획 수립
 -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의견 반영, 보장기관 여건 등 고려하여 계획 수립

- 자료 준비
 - 『20○○ 의료급여사업안내』
 -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안내문(리플릿)
 -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 현황 자료
 -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교육용 자료 등

- 간담회 개최 공문 발송

○○시·군·구

수신자 사회복지시설장 외 □□

(경유)

제 목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간담회 참석 요청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관련, 관내 사회복지시설 간 긴밀한 정보 교류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 관계자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목) 14:00~18:00

나. 장 소 : ○○시·군·구청 3층 대회의실

다. 참석자 :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의료급여 담당공무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라.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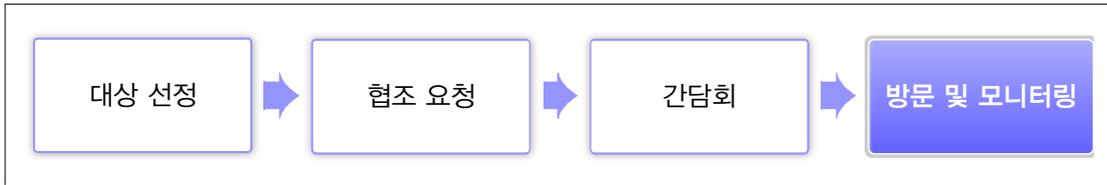
- 의료급여제도 및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안내
- 시설 자체교육 운영(낙상, 약물복용 등)
- 기타 협조사항 등

붙임 1. 장기입원 사례관리 안내문 1부

2. 퇴원 시 자원연계 목록 1부. 끝.

시·군·구청장

4. 방문 및 모니터링



가. 장기입원자 및 장기입원자가 입원 중인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중점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나. 필요시 의료급여 담당자 방문 상담

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자체교육 운영 독려

예시) 장기입원 발생 원인이 부주의에 의한 골절, 낙상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해당
주제에 대해 자체 교육

🔄 사회복지시설 재원환자 명단 제출 협조 요청 공문 : ‘의료급여기관 (장기)
입원자 명단 제출 협조 공문 예시’ 참조 (p.128)



PART

6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I. 개요

- 1. 정의 139
- 2. 목적 139
- 3. 관리대상 139
-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140
- 5. 업무 흐름도 141

II.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실제

- 1. 대상자 선정 142
- 2. 요구 사정 143
- 3.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145
- 4. 수행 148
- 5. 평가 및 종결 149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I 개 요

1. 정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질병대비 불필요한 의료이용 또는 복합적 의료복지 문제를 가진 대상자로서 단기간의 관리로는 의료이용 행태가 변화되지 않고 지속적 관찰 및 개입으로 대상자 변화를 지지·지원하는 종합적 사례관리 활동

2. 목적

- 복합적 의료복지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종합적 접근으로 건강 삶의 질 향상
- 과다 의료이용 대상자에게 밀착 개입과 지속적 관찰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관리대상

질병대비 과다 의료이용자로서 단기간의 개입으로는 의료이용 행태가 변화되지 않아 지속적 관찰 및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

※ 사례관리 대상자 통보명단의 질병대비 부 적정 과다 의료이용자 중 상위 30% 이내인 자 우선

4.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관리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

사례관리 기간	목표관리 횟수	수행 방법
연중 관리 (12월 일괄종결)	서신, 전화, 방문을 자율 수행하되 고위험군 수행서비스 기준 이상 개입	대상자 맞춤형 사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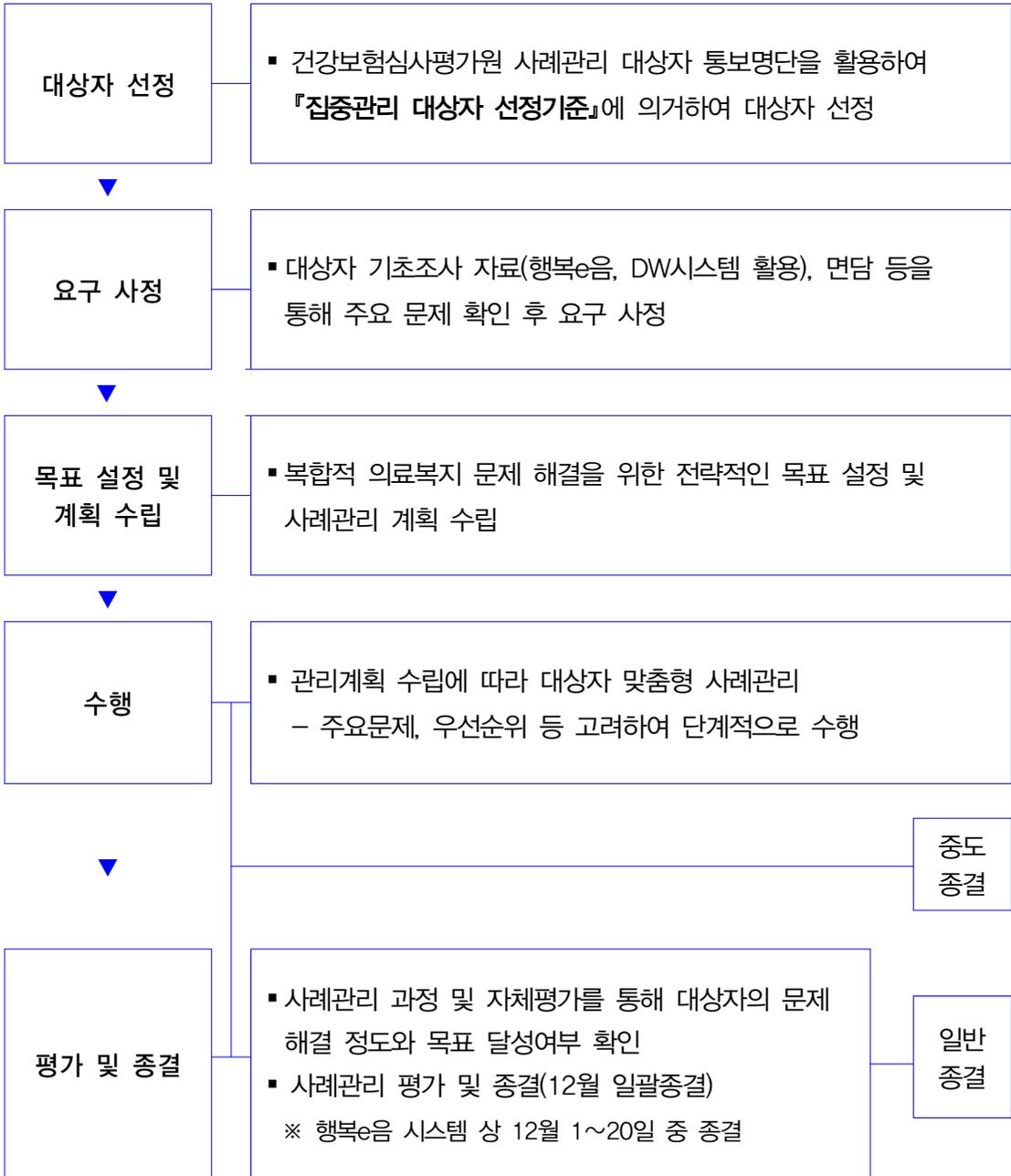
※ 행복e음 시스템 상 12월 1~20일 중 종결

〈 고위험군과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비교 〉

구분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래 이용자 중 질병대비 부 적정 의료 이용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례관리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래 또는 입원대상자 중 지속적인 관찰과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례관리 개입
대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급여일수 700일 이상자 중 질병 대비 부 적정 의료이용자 <p>※ 심평원 통보명단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급여일수 700일 이상자 중 우선 순위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질병 대비 과다한 부 적정 의료이용자 그 외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p>※ 심평원 통보명단 기준</p>
사례관리 목표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래고위험지역 : 75~85명 입원고위험지역 : 50~60명 혼합지역 : 65~7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유형과 관계없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
관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관리(12월 일괄종결)
수행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신 : 수시 전화 : 4회 이상 방문 :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특성에 따라 자율 수행하되, 최소 고위험군 수행서비스 기준 이상 개입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월 말(1분기) 이내 사례관리 시작 신규 의료급여관리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사례관리 시작하되, 이후 관리기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p>※ 중도종결 미 해당건은 시작일 관계없이 연도 말 종결</p>

※ 사례관리 목표인원 : 연간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목표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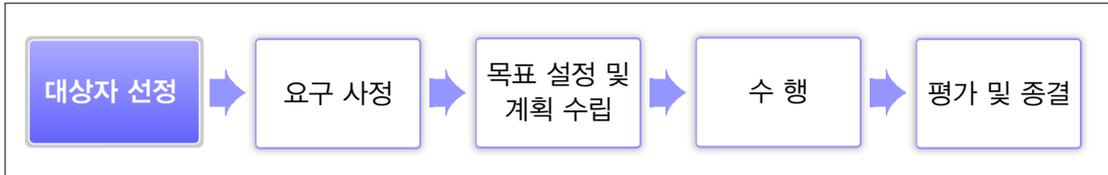
5.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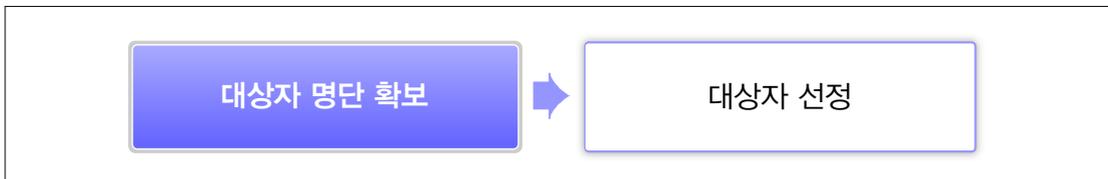
II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실제

1.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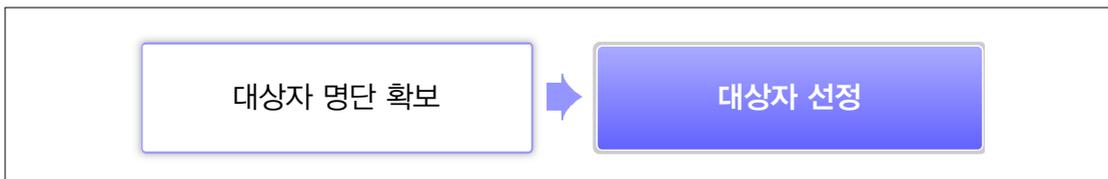


가. 대상자 명단 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례관리 대상자 통보명단 활용
 - 고위험군 통보명단
 - 일회용 점안제·물리치료 이용 상위자 명단
 - ※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자 명단 확보(p.51~55) 참고

나. 대상자 선정



- 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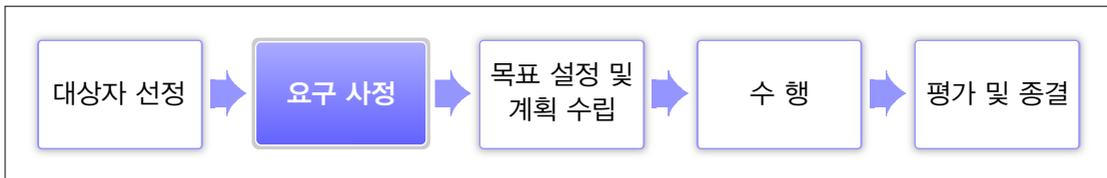


대상자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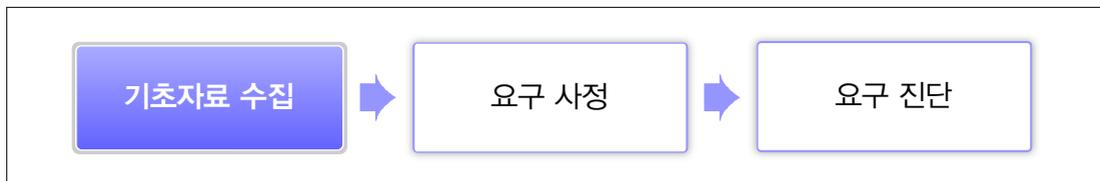
- ◆ 대상자 통보명단 우선순위 상위 30% 이내 대상자 중 부 적정 의료이용자
- ◆ 대상자 통보명단 우선순위 상위 30% 초과 대상자 중 부 적정 의료이용자
- ◆ 대상자 통보명단 외 대상자 중 부 적정 의료이용자
- ◆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췌한 부 적정 입원자
- ◆ 의료기관 현황조사, 의뢰 등을 통해 발췌한 부 적정 입원자

※ 전년도 고위험군 또는 집중관리군으로 개입한 대상자라도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재개입 가능하나, 가급적 새로 진입한 대상자 우선 관리할 것

2. 요구 사정



가. 기초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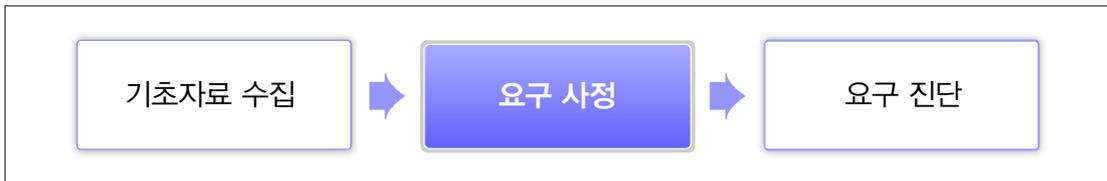


- 행복e음 활용
 - (기초조사서) 주소, 연락처, 급여유형, 취득일자, 사례관리 받은 이력 등 대상자 기본 정보 확인
 - (통합조사 및 결정화면) 주거환경, 기초생활보장정보, 근로능력유무 등 파악
- DW시스템 활용
 - 대상자 질환별·의료기관별 의료이용 현황 파악

집중관리군 기초조사서 관리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집중관리 → 집중관리군 기초조사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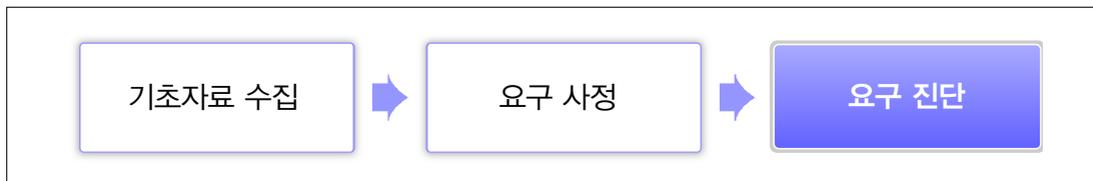


나. 요구 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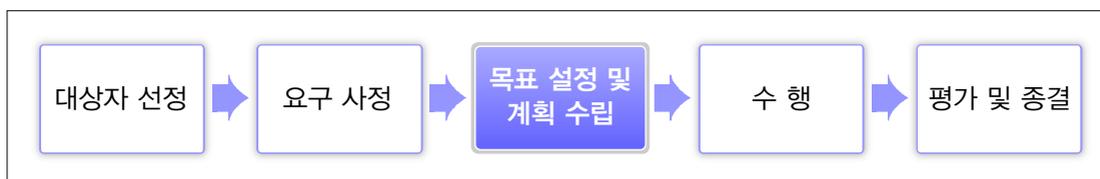
- 대상자 질환, 급여일수, 진료비, 이용 의료기관 수 등 의료이용 행태 파악
- 요구되는 자원 파악

다. 요구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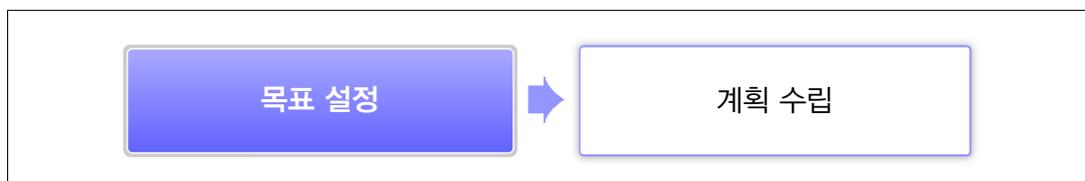


- 요구 사정한 영역별 세부항목에 대해 주요 문제 확인 후 그에 따른 요구 진단 내림

3.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가. 목표 설정



- 건강상태, 의료이용행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목표 설정
- 대상자 특성(건강상태,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행태변화 유도를 위한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
- 목표 달성 여부 평가를 위해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로 기술
- 목표 설정 개수는 제한이 없으나 주요 문제 우선순위 및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목표 수립
- 목표 설정 시 대상자를 참여시켜 책임감 및 동기 부여

〈 SMART한 목표 설정방법 〉

(made by 조지 도란)

S (specific)	• 구체적인 목표
M (measurable)	• 측정 가능한 목표
A (attainable)	• 달성할 수 있는 목표
R (realistic)	• 현실적인 목표
T (timely)	• 시기 적절한 목표

〈 목표 설정 예시 〉

적절한 목표 설정 예시

□ 측정 가능하고 객관적인 목표

- 요통으로 이용하는 의료급여기관 수가 3개월 동안 8개에서 2개로 감소한다.
- 고혈압질환으로 복용하는 약물명, 용량, 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알고 설명한다.
- 무릎통증 정도가 8점에서 4점으로 감소한다.(통증측정도구 활용)

부적절한 목표 설정 예시

□ 목표달성 여부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 목표 주체가 대상자가 아닌 경우

- 3개월에 한번 방문 상담하여 심리적 지지를 해준다.

□ 하나의 문장 안에 두 개 이상의 목표를 설정한 경우

-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용하는 의료급여기관 수를 7개에서 2개로 감소시키고, 기타질환 약물투약일수를 946일에서 500일 이하로 감소시킨다.

집중관리군 기초조사서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집중관리 → 집중관리군 기초조사서 등록 → 목표설정/수행계획

집중관리군 기초조사서 등록

수행기록지관리 | 자제평가서관리

성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조회

기초조사서 등록이력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리구분	사례관리시작일자	사례관리종결일자	의료급여관리사	전송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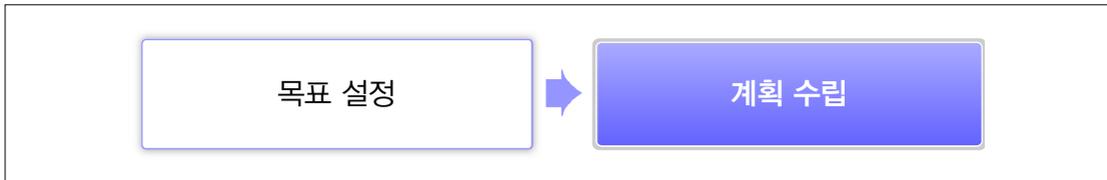
대상자 기본정보 | 인적사항 | 선정기준/사정결과 | **목표설정/수행계획**

목표설정

구분	세부문제	목표 설정	우선순위	목표
의료이용	비합리적 이용 의료기관 전문수준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의료기관 이용 과다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의약품 중복처방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물리치료 부적정 이용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부적정 입원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자가건강관리	제도이해부족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부적절한 질병관리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약물 복용 불이행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지지체계	부적절한 생활습관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가족 내 지지체계 부족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환경관리	자원연계 부족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주거환경 불량	<input type="radio"/> 유 <input checked="" type="radio"/>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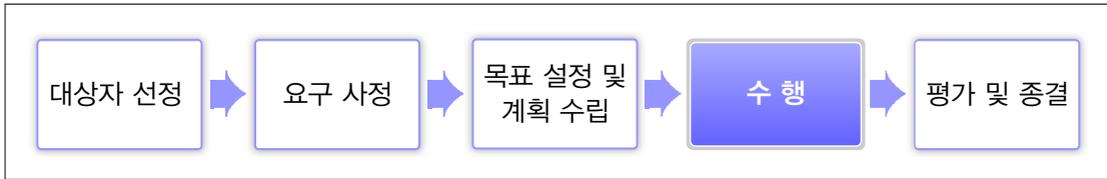
추가등록 | 저장

나. 계획 수립



- 대상자 요구 사정 결과 및 목표 설정을 토대로 수행 시기, 내용, 방법, 횟수 등 고려하여 수행 가능한 활동 위주의 구체적인 수행 계획 수립
- 계획 수립 후 세부 계획내용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 독려

4. 수행



-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 자료 선택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행
- 계획된 목표에 맞는 수행 활동 진행, 추가 필요한 수행 내용 여부 등 확인
- 대상자의 생활습관 관리, 의료이용행태 등 실천 정도 파악 및 지지
- 필요시 재상담 실시

집중관리군 수행기록지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집중관리 → 집중관리군 수행기록지 등록

② 집중관리군 수행기록지 등록 ③ 기초조사서관리 ④ 자체평가서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 등록내역

차수	사례관리 시작일자	수행일자	수행방법	의료급여관리사

③ 수행내용

수행일자 수행방법

차수	우선순위	세부문제	목표	수행내용
1	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3			

기타 상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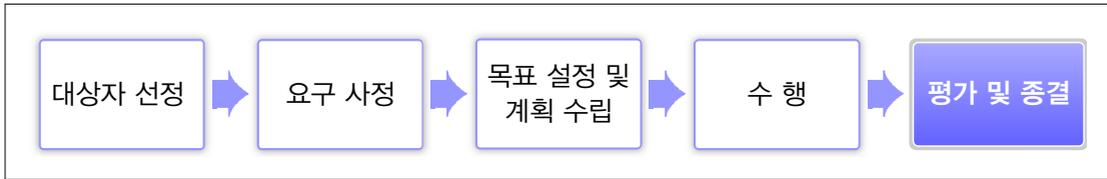
영역

연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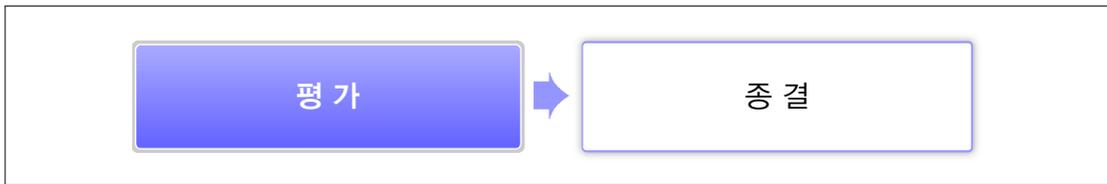
자원연계서비스 *중복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1. 일자리	<input type="checkbox"/> 2. 주거	<input type="checkbox"/> 3. 일상생활
	<input type="checkbox"/> 4.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input type="checkbox"/> 5.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input type="checkbox"/> 6. 보호 및 돌봄-요양
	<input type="checkbox"/> 7. 보육 및 교육	<input type="checkbox"/> 8. 문화 및 여가	<input type="checkbox"/> 9. 안전 및 권익보장
시설 입소 시 자원연계 기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정신보건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숙인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숙인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회복지시설(한센, 결핵)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text"/>)		

* 자원연계서비스 항목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세부내용이 보여집니다.

5. 평가 및 종결



가. 평가



- 대상자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관심도, 건강 삶의 질 항목을 사례관리 전·후로 비교
- 목표대비 달성 여부 평가 실시
- 목표대비 달성 기인요인 및 미진사유 등 파악하여 향후 사례관리 시 활용

📍 집중관리군 자체평가서 등록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집중관리 → 집중관리군 자체평가서 관리 → 사례관리 평가

집중관리군 자체평가서 등록

기초조사서관리 | 수행기록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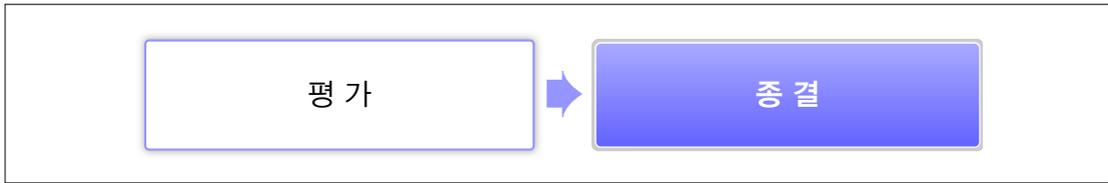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례관리평가 | 수행실적/결과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사례관리기간	[] ~ []
종결형태	선택	중도종결사유	선택		
대상자 퇴원여부	<input type="radio"/> 퇴원 <input type="radio"/> 미퇴원	퇴원 못하는 사유	선택		
퇴원일자	[]-[]-[]	퇴원 후 거주지	선택	퇴원 후 불명체공자	<input type="radio"/> 있다 <input type="radio"/> 없다
주관적 건강상태	전 선택 후 선택	건강관심도	전 선택 후 선택		
건강 삶의 질	항목	전	후		
	운동능력	나는 걷는 데 다소 지장이 있다.	선택		
	자기관리	나는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 데 지장이 없다.	선택		
	일상활동	나는 일상활동을 하는 데 다소 지장이 있다.	선택		
	통증/불편감	나는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선택		
불안/우울	나는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선택			

입시저장 | 공단전송

나. 종결



1) 종결기준

- 일반종결
 - 목표관리 횟수가 끝나고 사례관리 기간이 도래한 경우
- 중도종결
 - 대상자 사망, 전출, 수급 중지 등으로 인해 사례관리가 어려운 경우
 - 의료급여관리사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당해 연도 12월에 일괄 종결하므로 조기종결 없음

2) 재개입

- 전년도에 사례관리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연도 집중관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재개입 가능



자원연계

1. 개요	155
2. 목적	155
3. 내용	155
4. 종류	155
5. 연계대상	156
6. 연계방법	157
7. 기타 협조사항	158



자원연계

1. 개요

대상자의 욕구,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사정·파악하여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 및 서비스 연계

2. 목적

타 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 수준 향상 도모 및 사례관리 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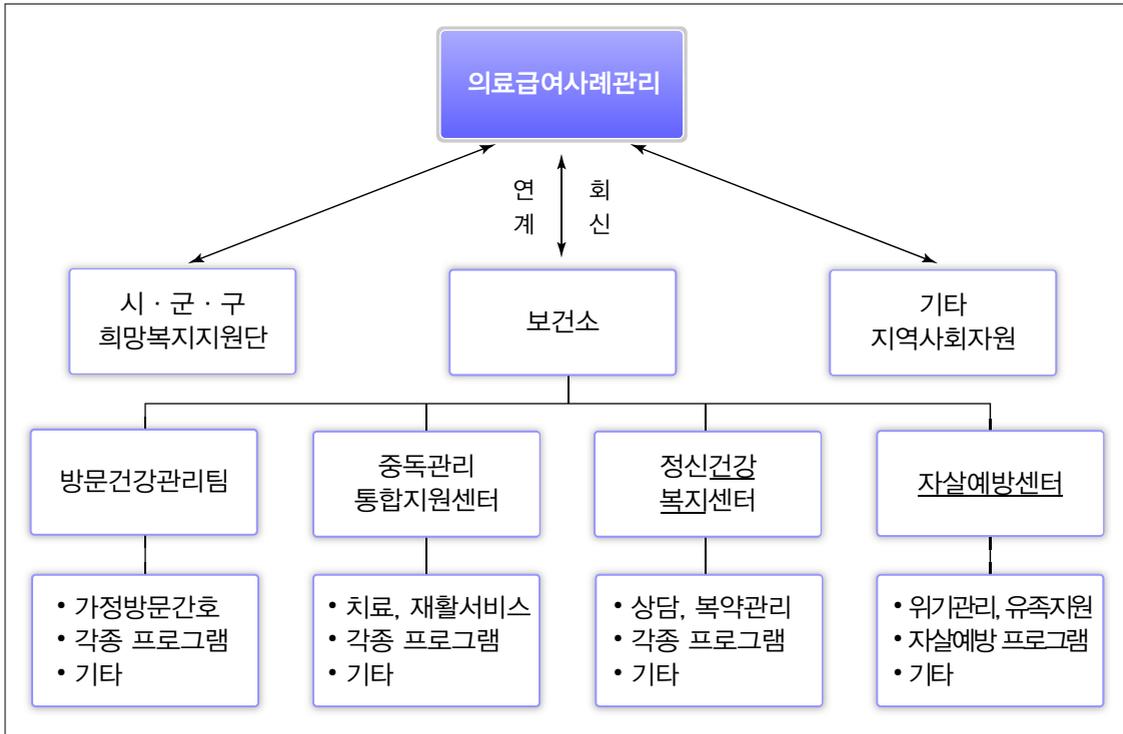
3. 내용

- 자원연계 전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와 구비서류 목록 확인
- 지역사회 내 민간 복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는 서비스일 경우 자원연계 의뢰서 [서식10] 작성
- 서비스 제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기본 정보 제공
 - ※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의거, 서비스 수혜자의 정보가 요청한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

4. 종류

- 방문건강관리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
- 희망복지지원단

〈 자원연계 종류 〉



5. 연계대상

○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로, 관리 및 등록에 동의한 대상자 연계

- 방문건강관리사업 : 가정방문서비스 등 보건소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자
-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전문적 상담 및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 조현병(F20~F209), 양극성 정동장애(F31~F319)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 알코올 상담센터) :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F10~F109)
 - ※ 도박, 인터넷, 마약, 기타 중독 예방서비스 시행
 - ※ 연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환 : 알코올의 금단상태(F103), 섬망을 동반한 알코올의 금단 상태(F104), 알코올 잔류 및 만기발병 정신병적 장애(F107)

6. 연계방법

가.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가 설치된 지역과 보건소를 통해 자원연계 의뢰양식에 의거하여 연계하고 회신 결과 확인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역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홈페이지(www.macmc.or.kr)/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 자살예방센터 설치 지역 : 「2018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부록 참조

- 대상자 연계

- 연계 주기 : 매월 1회

- 양식 : 연계 대상자 명단 및 기초조사서 사본

(연계일 : 년 월 일)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질병 분류(필요한 서비스)	비고

※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대상자의 정보가 요청한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결과 회신

- 회신 주기 : 매월(방문건강관리사업) / 분기 1회(정신건강증진사업)

- 회신 내용

(연계일 : 년 월 일)

성명	성별	나이	연계 내용 및 연계 결과	비고

※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연계 결과는 아래 번호로 표시되어 회신

- ① 등록 후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
- ②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기관으로 연계
- ③ 대상자가 서비스 거부

- 사례관리 회의

- 참석자 : 의료급여관리사, 방문건강관리 담당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살예방 담당자 등
- 내용 : 연계 대상자 관리 현황, 연계체계, 운영 등

나. 「희망복지지원단」

- (대상자 연계) 대상자 자원연계 의뢰양식에 의하여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고 처리결과 확인
 - ※ 연계 전 연계대상, 연계시기, 연계방법 등 구체적 내용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 (합동방문) 의료급여사업 대상자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사전 협의 후 협력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합동방문 및 다각적 관리 실시
- (회의체 참석) 각 사업 사례회의 등 관련 회의 참석

7. 기타 협조사항

-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교육 및 지원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시 혈압, 혈당 체크 등 만성질환 조기 발견
 - ※ 서비스 대상 또는 인근 가구 중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시·군·구 관련 업무담당 팀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 연간 의료급여사례관리 계획 수립 시 보건소 등 관련 기관장을 협조자로 지정하여 추후 단위사업 추진에 활용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증진 도모 및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I. 개요

- 일 시 : 2000.0.0.(목) 15:00~17:00
- 장 소 : □□시·군·구청 3층 대회의실
- 대 상
 - □□시·군·구청 : 의료급여 담당자, 의료급여관리사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 : 담당공무원, 방문간호사

II. 주요내용

- 의료급여제도 및 사례관리사업 소개
- 의뢰한 대상자 관리 현황 공유
- 각 사업별 협조사항
- 기타 현안문제 등

III. 기대효과

-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예시 : 서비스 연계 의뢰 관련 공문 (수신자 : 보건소)

□□시·군·구

수신자 ◇◇◇과

(경유)

제 목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 방문보건서비스 연계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년 ○월에 실시한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어 의뢰하오니 붙임 참고하여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3. 의뢰 명단에 대해 서비스 연계 여부를 ○○일(수)까지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질병 분류(필요한 서비스)	비고

- 붙임
1. 자원연계 의뢰 결과서 1부
 2. 자원연계 의뢰서 1부
 3. 의뢰대상자 기초조사서 1부. 끝.

시·군·구청장

 자원연계 의뢰 결과서

성명	성별	나이	연계 내용 및 연계 결과	비고

- 서비스 의뢰대상자 기초조사서 출력 : 행복e음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례관리 → 외래 → 외래 기초조사서 관리 → 기초조사서 등록 → 대상자 기본정보 → 내용출력

기초조사서 등록 수행기록지관리 자재평가서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초조사서 등록내역 내용출력 추가등록 삭제 저장 수정

순번	사례관리 시작일자	등록일자	종결일자	의료급여관리사ID	대상자분류	재등록여부	비상연락관계코드
1							
2							

대상자 기본정보 인적사항 합리적인료이용 건강상태의 질 자기건강관리 능력 지지체계 구축 수행계획

관리행정동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시설명	<input type="text"/>		
기초생활정책정일자	<input type="text"/>	기초생활중지일자	<input type="text"/>	장애인등록일자	<input type="text"/>
의료급여세대주명	<input type="text"/>	세대주취득일자	<input type="text"/>	세대주와의관계	<input type="text"/>
대상자구분	<input type="text"/>	급여유형	<input type="text"/>	종별	<input type="text"/>
취득일자	<input type="text"/>	취득사유	<input type="text"/>	취득유형	<input type="text"/>
상실일자	<input type="text"/>	상실사유	<input type="text"/>		

 의뢰대상자 기초조사서 출력물 : 기초조사서 등록 화면에서 내용출력 클릭

의뢰대상자 기초조사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Tel(1) :
					Tel(2) :
급여유형		종별		장애유형	장애등급
소 속	의료급여 관리사명			연락처	
의뢰 서비스명					
1. 건강상태					
질병코드(1)		질병명		심각정도	- 선택 -
질병코드(2)		질병명		심각정도	- 선택 -
질병코드(3)		질병명		심각정도	- 선택 -
질병코드(4)		질병명		심각정도	- 선택 -
질병코드(5)		질병명		심각정도	- 선택 -
기타 주요증상					
일상수행능력	- 선택 -				
우울	- 선택 -				
약물 복용	<input type="checkbox"/> 전혀 처방을 따르지 못 한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처방을 따르지 못 한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잘 복용한다		<input type="checkbox"/> 처방대로 매우 잘 관리한다		
2. 자가 건강관리 수준					
건강관심도	<input type="checkbox"/> 매우 낮다	<input type="checkbox"/> 낮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높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높다
생활습관관리	<input type="checkbox"/>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관리한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잘 관리한다
흡연여부	<input type="checkbox"/> 한 갑 이상		<input type="checkbox"/> 한 갑 이하		<input type="checkbox"/> 금연
음주여부	<input type="checkbox"/> 폭력적 문제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절주
운동여부	<input type="checkbox"/> 안함		<input type="checkbox"/> 불규칙적		<input type="checkbox"/> 규칙적
3. 지지자원					
기수급자원					
요구되는자원					
출력일 : 2000년 0월 0일					



PART

8

서 식

[서식1]

의료급여사례관리 기초조사서 (외래)

I. 제도이해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II. 합리적 의료이용					
1) 전반적 의료이용 상태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과다 <input type="checkbox"/> 과소 <input type="checkbox"/> 혼재				
2) 문제영역	<input type="checkbox"/> 외 래	<input type="checkbox"/> 약 물			
3) 세부문제	<input type="checkbox"/> 동일질병 의료쇼핑	<input type="checkbox"/> 중복 처방			
	<input type="checkbox"/> 다수 의료기관 이용(기관 수 ____개)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복용			
	<input type="checkbox"/> 필요보다 전문기관 이용	<input type="checkbox"/> 잉여 약물			
	<input type="checkbox"/> 필요보다 일차기관 이용				
	<input type="checkbox"/> 과소이용				
1. 의료쇼핑	① 매우 심하다 ④ 거의 문제가 없다	② 조금 심하다 ⑤ 전혀 문제가 없다	③ 보통이다		
2. 이용 기관 전문수준	① 매우 심하다 ④ 거의 문제가 없다	② 조금 심하다 ⑤ 전혀 문제가 없다	③ 보통이다		
3. 이용 기관 수	① 매우 심하다 ④ 거의 문제가 없다	② 조금 심하다 ⑤ 전혀 문제가 없다	③ 보통이다		
4. 중복처방 정도	① 매우 심하다 ④ 거의 문제가 없다	② 조금 심하다 ⑤ 전혀 문제가 없다	③ 보통이다		
5. 전반적 의료 이용의 합리성					
III. 건강상태					
1. 질병명 및 심각도	1) 질병 현황				
	건강 여부	질병코드	질병명	심각정도	
	<input type="checkbox"/> 건강				
2) 기타 주요증상					

2. 건강상태	① 전혀 모른다 ④ 잘 아는 편이다	② 잘 모른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3. 일상수행능력	① 완전히 무력하다.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고, 전적으로 침대나 의자에 누워있어야 한다. ② 단지 제한적으로만 자신을 돌볼 수 있다.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있거나 앉아있다. ③ 보행이 가능하고 자신을 돌보는 모든 일은 가능하지만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④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은 제한 받으나 보행은 가능하고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다. ⑤ 제한 없이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4. 통증	① 매우 심한 통증이 있다. ② 심한 통증이 있다 ③ 가벼운 통증이 있다 ④ 아주 가벼운 통증이 있다 ⑤ 전혀 없다		
5. 우울	① 자살을 자주 생각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다. ②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희망이 없다. ③ 때때로 지루하다고 생각하나 그런대로 삶에 만족한다. ④ 희망적이며 주위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⑤ 매사에 활력이 있으며 삶에 만족하고 있다.		
6. 신체증상관리 /상태 조절	①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④ 잘 관리한다	② 가끔 관리한다 ⑤ 스스로 매우 잘 관리한다	③ 보통이다
7. 약물복용	① 전혀 처방을 따르지 못 한다 ② 가끔 처방을 따르지 못 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복용한다 ⑤ 처방대로 매우 잘 복용한다		
IV. 자가 건강관리 수준			
1. 전반적 질병 이해 정도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2. 건강 관심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3. 현 생활습관	1) 흡연	① 1갑 이상 ② 1갑 이하	③ 금연
	2) 음주	① 안함 ② 불규칙적	③ 규칙적
	3) 운동	① 폭력 등 문제 ② 보통	③ 절주
	4) 식이	① 불균형 ② 보통	③ 균형
4. 생활습관관리	①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② 가끔 관리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관리한다 ⑤ 스스로 매우 잘 관리한다		
5. 위생 및 예방	1) 개인위생 청결정도	① 불결 ② 보통	③ 청결
	2) 예방접종 유무	① 유 ② 무	
	3) 정기 건강검진 유무	① 유 ② 무	
6. 위생 및 예방에 대한 관리 정도	①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② 가끔 관리한다 ③ 보통이다 ④ 잘 관리한다 ⑤ 스스로 매우 잘 관리한다		

V. 지지자원		
1. 지원 사정	기 수급자원	<input type="checkbox"/> 긴급지원 <input type="checkbox"/>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 <input type="checkbox"/> 암 검진 <input type="checkbox"/> 도시락 배달 <input type="checkbox"/> 이동목욕 <input type="checkbox"/> 밑반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문보건 <input type="checkbox"/> 정신보건 <input type="checkbox"/> 암환자 의료비지원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 의치보철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보조 <input type="checkbox"/> 집 수리서비스(도배, 장판) <input type="checkbox"/> 복지관연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서비스(병원동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없음
	요구되는 자원	<input type="checkbox"/> 긴급지원 <input type="checkbox"/>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 <input type="checkbox"/> 암 검진 <input type="checkbox"/> 도시락 배달 <input type="checkbox"/> 이동목욕 <input type="checkbox"/> 밑반찬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문보건 <input type="checkbox"/> 정신보건 <input type="checkbox"/> 암환자 의료비지원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 의치보철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보조 <input type="checkbox"/> 집 수리서비스(도배, 장판) <input type="checkbox"/> 복지관 연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서비스(병원동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사회적 고립도	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②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할 사람이 있다. ③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도와줄 사람이 있다. ④ 밖에 나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⑤ 아플 때 돌봐 줄 사람이 있다. ⑥ 해당사항 없음	
3. 자원연계 정도	① 매우 부족 ② 약간 부족 ③ 보통 ④ 양호 ⑤ 매우 양호	
VI. 생활환경		
1. 주거환경 (양호한 경우 체크)	<input type="checkbox"/> 채광·환기 <input type="checkbox"/> 냉난방 <input type="checkbox"/> 부엌 상태 <input type="checkbox"/> 안전 상태 <input type="checkbox"/> 화장실/목욕시설	
VII. 수행계획		
1. 예상관리기간	<input type="checkbox"/> 1개월 <input type="checkbox"/> 2개월 <input type="checkbox"/> 3개월	
2. 서신 횟수	<input type="checkbox"/> 0회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3. 전화 횟수	<input type="checkbox"/> 0회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4. 방문 횟수	<input type="checkbox"/> 0회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5. 기타		

[서식2]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입원내역 요청 서식 [의료급여기관용]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입원내역 [의료급여기관용]				
보장기관명		수급자명		생년월일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환자평가군
입원내역	입원일자	입원일수	상병명(기호)	경유 병(의)원
	1. 상기 대상자가 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한 주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작성)			
	2. 상기 대상자는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① 예() - 3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5번 문항으로			
	3.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현 증상 및 요구되는 처치 또는 치료 방법 등)			
	4.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더 입원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5. 질환 외 기타 외부적인 요인 및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외부요인 - 통원치료의 어려움, 거동 불가 및 돌봄 제공자 없음 등)			
6. 진료과 : _____ 담당 의사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_____				
<p>상기 소견은 우리 의료급여기관에서 (장기)입원 한(중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의학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요청한 입원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병원장</p>				

[서식4]

사회복지시설 현황조사표

- 방문 일시 : 년 월 일
- 기본 현황

구 분	내 용	비고
시설명/시설유형		
입소자격		
정원/현원(명)		
비고		

- 입원 현황 :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 방문 시 현 시점 기준)

연번	대상자명	진단명	입원 일자	입원 의료기관명	기타 사항	비고

- 교육 현황

1. 시설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 시설 입소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3. 의료급여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4. 기타(건의사항)

[서식5]

[장기]입원자 기초조사서

수급자명		생년월일		관리행정동	
주소				시설명	
지역구분	<input type="checkbox"/> 관내 <input type="checkbox"/> 관외	관외개입 보장기관		관외개입 의료급여관리사	
시작일자		재등록여부	<input type="checkbox"/> 최초등록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수급자 전화번호	
비상연락번호		비상연락관계		직계가족 수	
결혼 구분		동거인관계		동거인 수	
종교		직업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학력	
거주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월 소득			
의사소통능력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장애유형		장애등급	
입원 의료기관 유형	<input type="checkbox"/> 의원 <input type="checkbox"/> 2차병원 <input type="checkbox"/> 3차병원 <input type="checkbox"/> 정신병원 <input type="checkbox"/> 노인병원 <input type="checkbox"/> 요양병원 <input type="checkbox"/> 재활병원 <input type="checkbox"/> 한방병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의료기관명		입원일		재원일수	
기관 사례관리협조도	<input type="checkbox"/> 매우 협조적 <input type="checkbox"/> 부분적 협조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별로 협조적이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협조적이지 않다				
기관 의료급여담당자		연락처			
입원 경로	<input type="checkbox"/> 응급실 <input type="checkbox"/> 외래 <input type="checkbox"/> 타병원에서 전원 <input type="checkbox"/> 시설에서 의뢰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의뢰 <input type="checkbox"/> 자발적 입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원 전 14일 이내 타 기관 입원여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면담자	<input type="checkbox"/> 수급권자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관 관계자 <input type="checkbox"/> 의료인 <input type="checkbox"/> 기타(입력)		

1. 제도이해	장기입원사례관리 이해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 ④ 잘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입원분류	<input type="checkbox"/> 장기입원 <input type="checkbox"/> 다빈도입원 <input type="checkbox"/> 불필요입원 <input type="checkbox"/> 과소이용
2. 합리적 의료이용	반복적 입·퇴원 정도	① 매우 문제있다 ② 문제있다 ③ 보통 ④ 걱정하다 ⑤ 문제없다
	입원기간의 적정성	① 매우 문제있다 ② 문제있다 ③ 보통 ④ 걱정하다 ⑤ 매우 걱정하다
	입원 의료이용의 합리성	① 매우 문제있다 ② 문제있다 ③ 보통 ④ 걱정하다 ⑤ 매우 걱정하다

	질병 현황	질병코드	진단명	
3. 건강 삶의 질	주관적 건강상태	①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 ④ 보통	② 나쁘다 ⑤ 좋다 ③ 조금 나쁘다 ⑥ 아주 좋다	
	우울 정도	①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 ② 자살을 자주 생각하고 무력감에 빠져있다 ③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별로 희망이 없다 ④ 때때로 지루하다고 생각하나 그런대로 삶에 만족한다 ⑤ 희망적이며 주위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⑥ 매사에 활력이 있으며 삶에 만족하고 있다		
	통증 정도	① 무의식으로 소통 불가능 ④ 보통 ② 매우 심한 통증 ⑤ 가벼운 통증 ③ 심한 통증 ⑥ 전혀 없다		
	일상생활수행 정도	① 완전히 무력하다.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고 전적으로 침대나 의자에 누워있어야 한다 ② 단지 제한적으로만 자신을 돌볼 수 있다. 깨어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있거나 앉아 있다 ③ 보행이 가능하고 자신을 돌보는 모든 일은 가능하지만 깨어 있는 시간의 50%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④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은 제한 받으나 보행은 가능하고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다 ⑤ 제한 없이 모든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튜브 관리 정도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튜브 없음		
	상처 관리 정도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상처 없음		
	4. 자가 건강관 리능력	신체변화를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다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식사할 수 있다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의사가 처방한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할 수 있다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외래방문 약속일을 지킬 수 있다		① 전혀 못함 ② 부분적 가능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5. 지지체 계구축	요구되는 자원서비스 (※ 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방문보건 <input type="checkbox"/> 정신보건 <input type="checkbox"/>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긴급지원 <input type="checkbox"/> 암환자 진료비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지원 <input type="checkbox"/> 도시락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밀반찬배달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사간병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암검진 <input type="checkbox"/> 노인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이동목욕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노인의치보철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보조 <input type="checkbox"/> <u>거처마련(임대주택)</u> <input type="checkbox"/> <u>주거관련 비용지원</u> <input type="checkbox"/> 복지관연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차량지원서비스(병원동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없음			
	요구되는 자원서비스 수	① 매우 많음(10개 이상) ② 많음(6~9개) ③ 보통(3~5개) ④ 적음(1~2개) ⑤ 없음			
	요구되는 자원연계기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정신요양시설 <input type="checkbox"/> 부랑인시설 <input type="checkbox"/> 여성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여성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성폭력피해자시설 <input type="checkbox"/> 가정폭력피해자시설 <input type="checkbox"/> 한센시설 <input type="checkbox"/> 결핵요양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없음			
	사회적 고립도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할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도와줄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밖에 나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다			
6. 수행계 획	예상 관리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서신 횟수	<input type="checkbox"/> 0회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전화 횟수	<input type="checkbox"/> 0회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방문 횟수	<input type="checkbox"/> 0회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기타				

※ 「요구되는 자원서비스」 화면은 추후 변경 예정이며, 시스템상 비활성화 부분 미반영

[서식6]

장기입원 사례관리 - 심사연계 사업 대상자 의뢰서

보장기관명(기호)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의료기관명(기호)		연계	① 퇴원 가능 ② 시설연계 미흡		

진단명(현재)					
입원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총 일)
입원 전 14일 이내 타 기관 퇴원여부	① 없음 ② 시설 ③ 의원 ④ 병원, 종합병원 ⑤ 상급종합병원				

순번	평가지표	환자 상태				
1	의식수준	① 명료 ② 기면 ③ 혼미 ④ 반혼수 ⑤ 혼수				
2	상처간호 필요 여부	① 불필요 ② 필요				
3	통증의 정도	① 없음 ② 경미한 통증 ③ 중증도 통증 ④ 심한 통증				
4	퇴원 후 거처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5	퇴원 후 돌봄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6	일상생활 수행능력	완전 자립	감독 필요	약간의 도움	상당한 도움	전적인 도움
	① 옷 벗고 입기	()	()	()	()	()
	② 세수하기	()	()	()	()	()
	③ 목욕하기	()	()	()	()	()
	④ 식사하기	()	()	()	()	()
	⑤ 방 밖으로 나오기	()	()	()	()	()
7	장기요양등급 및 신청 여부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 ⑥ 신청 중 ⑦ 미 신청				
8	기타 의견 (미 퇴원 사유 등)					
		년	월	일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인)

※ 의뢰서는 엑셀파일 사용 가능

[서식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퇴원사정도구

퇴원 사정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	----	------	----

질병 특성

진 단 명(현재)	
입원 시 주 호소	
입원 경로	<input type="checkbox"/> ① 응급실 <input type="checkbox"/> ② 외래 <input type="checkbox"/> ③ 타병원 <input type="checkbox"/> ④ 시설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입원 기간	_____개월 _____일
입원 전 14일 이내 타 기관 퇴원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없음 <input type="checkbox"/> ② 시설 <input type="checkbox"/> ③ 의원 <input type="checkbox"/> ④ 병원,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⑤ 상급종합병원

간호요구도

1) 의식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명료(alert) ② 기면(drowsy) ③ 혼미(confusion)
 ④ 반혼수(semicoma) ⑤ 혼수(coma)

2) 상처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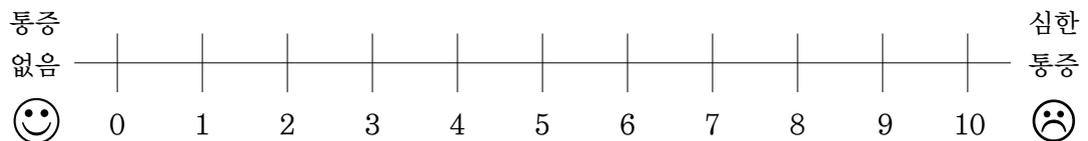
2-1) 상처간호가 필요한 부위가 있습니까?

- ① 유 (2-2 문항으로 이동) ② 무

2-2) 있다면 조직손상의 정도는?

- ① I 단계 ② II 단계 ③ III 단계 ④ IV 단계

3) 지난 1주일 간 통증의 정도는?



4)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에 ✓표로 표시하시오.

항 목	기능자립 정도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① 옷 벗고 입기			
② 세수하기			
③ 양치질하기			
④ 목욕하기			
⑤ 식사하기			
⑥ 체위 변경하기			
⑦ 일어나 앉기			
⑧ 옮겨 앉기			
⑨ 방 밖으로 나오기			
⑩ 화장실 사용하기			
⑪ 대변 조절하기			
⑫ 소변 조절하기			
⑬ 머리감기			

5) 영양공급경로는 어느 것입니까?

- ① 경구 □② 위관영양(L-tube, Gastrostomy 등) □③ 총 비경구영양(TPN)

6) 튜브(tube) 관리

구 분	유	무
인공호흡기(Ventilator)		
산소 공급(O ₂)		
기관절개관(Tracheostomy)		
중심정맥관(C-line, port 등)		
유치도뇨관(Foley catheter)		
동정맥루관(Shunt)		
장루(Stoma)		
기타(자세하게 기술하세요)		

환경

11) 퇴원을 한다면 누구와 함께 살 예정입니까? (모두 선택)

- ① 환자 혼자/아무도 없음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 ④ 아들 부부 ⑤ 딸 부부 ⑥ 부모
- ⑦ 손자녀 ⑧ 친인척/친구 ⑨ 간병인
- ⑩ 기타()

12) 퇴원을 한다면 환자를 주로 돌보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 선택)

- ① 환자 혼자/아무도 없음 ② 배우자 ③ 미혼 자녀
- ④ 아들 부부 ⑤ 딸 부부 ⑥ 부모
- ⑦ 손자녀 ⑧ 친인척/친구 ⑨ 간병인
- ⑩ 필요없음 ⑪ 기타()

13) 퇴원을 한다면 거주할 곳은 어디입니까?

- ① 환자 소유/전·월세(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 ② 가족 소유/전·월세(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 ③ 일반생활시설(양로시설/장애인시설/부랑인시설/아동·청소년 양육시설)
- ④ 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중증장애인시설)
- ⑤ 요양병원/재활병원/일반병원
- ⑥ 기타()
- ⑦ 없음

의료급여관리사의 종합의견

항 목	구 분
14) 퇴원사정 결과	<input type="checkbox"/> 퇴원 불가 <input type="checkbox"/> 퇴원 가능 <input type="checkbox"/> 퇴원 필수
15) 자원연계	<input type="checkbox"/> 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등) <input type="checkbox"/> 일반생활시설(양로시설, 장애인시설, 부랑인시설, 아동·청소년양육시설 등) <input type="checkbox"/> 재가서비스(가정간호, 방문건강관리[보건(지)소/보건진료소], 재가복지, 노인장기요양방문 등)
16) 종합 의견 (기술하시오)	

[서식8]

집중관리군 기초조사서 (외래)

수급자명		생년월일		관리행정동	
주소				전화번호	
시작일자		비상연락번호		비상연락관계	
동거인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동거인 돌봄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의사소통능력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교육수준		주거형태		종교	

1. 선정 기준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통보명단 우선순위 상위 30% 이내 대상자 중 부 적정 의료이용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통보명단 우선순위 상위 30% 초과 대상자 중 부 적정 의료이용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통보명단 외 대상자 중 부 적정 의료이용자				
	2. 질병 현황		진단명		
		질병코드			
3. 주관적 건강상태		①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 ③ 보통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4. 건강관심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5. 건강 삶의 질	운동능력	① 나는 걷는데 지장이 없다. ② 나는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③ 나는 종일 누워있어야 한다.			
	자기관리	① 나는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지장이 없다. ②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③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을 수 없다.			
	일상활동	①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②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③ 나는 일상 활동을 할 수 없다.			
	통증/불편감	① 나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 ② 나는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③ 나는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불안/우울	① 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② 나는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③ 나는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6. 의료이용	이용 의료기관 전문수준	
	이용 의료기관 수	
	의약품 처방정도	
	물리치료 이용정도	
	입원 이용정도	
	제도 이해정도	
7. 자가 건강관리	질병관리	
	약물복용상태	
	생활습관관리	
8. 지지 체계 관리	가족 내 지지체계	
	사회적 지지체계	
	자원연계	
9. 환경관리	주거환경	
10. 수행계획	서신 횟수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input type="checkbox"/> 7회(/) <input type="checkbox"/> 8회(/) <input type="checkbox"/> 9회(/) <input type="checkbox"/> 10회(/)
	전화 횟수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input type="checkbox"/> 7회(/) <input type="checkbox"/> 8회(/) <input type="checkbox"/> 9회(/) <input type="checkbox"/> 10회(/)
	방문 횟수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input type="checkbox"/> 7회(/) <input type="checkbox"/> 8회(/) <input type="checkbox"/> 9회(/) <input type="checkbox"/> 10회(/)
	기타	

[서식9]

집중관리군 기초조사서 (입원)

수급자명		생년월일		관리행정동	
주소				전화번호	
시작일자		비상연락번호		비상연락관계	
동거인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동거인 돌봄여부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의사소통능력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교육수준		주거형태		종교	
입원일		재원일수		입원 전 14일 이내 타 기관 입원여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담당자		연락처	
기관 사례관리 협조도	<input type="checkbox"/> 매우 협조적 <input type="checkbox"/> 별로 협조적이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부분적 협조 <input type="checkbox"/> 전혀 협조적이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퇴원시 거주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주 면담자	<input type="checkbox"/> 수급권자 <input type="checkbox"/> 의료인	<input type="checkbox"/>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입력)	<input type="checkbox"/> 기관 관계자

1. 선정기준	<input type="checkbox"/>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체한 부 적정 입원자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현황조사, 의뢰 등을 통해 발체한 부 적정 입원자			
	질병코드	진단명		
2. 질병 현황				
3. 주관적 건강상태	①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 ③ 보통 ④ 좋다 ⑤ 아주 좋다	4. 건강관심도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5. 건강 삶의 질	운동능력	① 나는 걷는데 지장이 없다. ② 나는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③ 나는 종일 누워있어야 한다.
	자기관리	① 나는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지장이 없다. ②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③ 나는 혼자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을 수 없다.
	일상활동	①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② 나는 일상 활동을 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③ 나는 일상 활동을 할 수 없다.
	통증/불편감	① 나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 ② 나는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③ 나는 매우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
	불안/우울	① 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다. ② 나는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③ 나는 매우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6. 의료이용	이용 의료기관 전문수준	
	이용 의료기관 수	
	의약품 처방정도	
	물리치료 이용정도	
	입원 이용정도	
7. 자가 건강관리	제도 이해정도	
	질병관리	
	약물복용상태 생활습관관리	
8. 지지체계 관리	가족 내 지지체계	
	사회적 지지체계	
	자원연계	
9. 환경관리	주거환경	
10. 수행계획	서신 횟수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input type="checkbox"/> 7회(/) <input type="checkbox"/> 8회(/) <input type="checkbox"/> 9회(/) <input type="checkbox"/> 10회(/)
	전화 횟수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input type="checkbox"/> 7회(/) <input type="checkbox"/> 8회(/) <input type="checkbox"/> 9회(/) <input type="checkbox"/> 10회(/)
	방문 횟수	<input type="checkbox"/> 1회(/) <input type="checkbox"/> 2회(/) <input type="checkbox"/> 3회(/) <input type="checkbox"/> 4회(/) <input type="checkbox"/> 5회(/) <input type="checkbox"/> 6회(/) <input type="checkbox"/> 7회(/) <input type="checkbox"/> 8회(/) <input type="checkbox"/> 9회(/) <input type="checkbox"/> 10회(/)
	기타	



부 록

1. 타 사례관리사업 현황	189
2. 지역별 자살예방센터 목록	192
3. 연도별 주요 연구용역 목록	196

타 사례관리사업 현황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희망복지지원단

구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 및 가구원을 발견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 관리 제공,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 사업을 총괄 관리하여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
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 1항 5호」	「사회복지 사업법 제2장의2」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유지 및 건강행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생활 실천 유도, 건강지식 향상 •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문제 스크리닝, 증상 조절, 치료 순응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수요 발굴·통합적 지원을 통한 지역 주민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빈곤층의 탈 빈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응 • 민·관,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운영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복지전달체계 기반 구축
제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 취약계층 (지자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 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 우선
업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문제 스크리닝 • 건강관리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 -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관리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 - 장애인 재활관리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 자원관리 • 방문형서비스 사업 협력체계 운영 • 읍면동 복지업무 지원, 관리

 노인돌봄서비스, 드림스타트

구분	노인돌봄서비스	드림스타트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힘든 노인의 가사·활동지원, 주간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활동지원, 주간 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의 질 및 심신기능 향상, 기타 잔존 기능 활용, 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양육환경, 아동 발달영역(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및 발달연령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전인적 발달 도모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 간의 팀 접근을 통해 취약계층 가족 전체 문제해결능력 향상
제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 의료인, 영양보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 간호·복지·보육 학위 소지자 우선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중증질환자, 치매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교 재학생 포함) 아동 및 가족,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정 한부모 가정 등
업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환자 가족지원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기관 연계

중독관리 통합지원, 자활사례관리

구분	중독관리 통합지원	자활사례관리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자활과 자립지원,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취업 알선 등 자활프로그램 지원 및 사후평가
근거	「정신건강 복지법 제13조 및 제5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안전망 조성 위기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성 구현, 필요서비스 직접 수행, 필요 인프라 설치 지역사회복지기관,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적인 의뢰연계 체계 개발로 신규 발견 및 등록체계 활성화,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도모, 내·외부 수퍼비전 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근로 기회 제공을 통한 탈 빈곤 지원 공익증진 사업을 통해 살림과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원자립 협동경제사회 도모
제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독관리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활센터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사업·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통합사례 관리자 경력 1년 이상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자와 그 가족 의료기관 또는 시설에서 퇴원한 중독자 중 사회적응훈련 필요한 중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이상~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자, 자활급여 특례자, 특례 수급가구원
업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독문제가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상담·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퇴원명령 대상자의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 관리, 집단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독질환 관리사업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 자활 근로사업(자활고용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 조건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 평가 및 사후 관리 등 읍면동 자활 근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능력수급자 관리

지역별 자살예방센터 목록

자살예방센터

지역	센터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서울	중앙 자살예방센터	02-2203-0053	www.spckorea.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5길 24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02-3458-1000	blog.naver.com/ smaum108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5층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02-916-9118	www.salja.or.kr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21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4층
	성동구 자살예방센터	02-2298-7119	www.lifecare.or.kr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14 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 3층
부산	부산광역 자살예방센터	051-242-2575	suicide. busaninmaum.com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9 루미너스타워 12층
대구	대구광역 자살예방센터	053-256-0199	www.dgmhc.or.kr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라파엘관 5층
인천	인천시광역 자살예방센터	032-468-9917	www.icmh.or.kr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4 가천뇌과학연구원 5층
	인천남구 자살예방센터	032-421-4047	www.ingmhc.or.kr	인천광역시 남구 독정리로 95 남구청 본관3청사 2층
광주	광주광역 자살예방센터	062-600-1900	www.gmhc.kr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7 한일빌딩 5층
울산	울산북구 자살예방센터	052-288-0043	www.bukgumental. or.kr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북구보건소 2층
경기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031-212-0437	www.mindsave.org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9 리치프라자II 3층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031-247-3279	www.csp.or.kr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해피마음터 3층
	성남시 자살예방센터	031-754-3220	www.smhc.or.kr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수정구보건소 5층

지역	센터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경기	화성시 자살예방센터	031-369-2892 (항남분소)	www.hsmind.or.kr	(항남)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1층
		031-8015-2766 (동탄분소)		(동탄)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26-9 동탄보건지소 2층
		031-369-6244 (봉담분소)		(봉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4층 정신건강실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02-2618-8255	www.gspc.kr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3 광명시보건소 광명시립요양센터 1층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031-418-0123	www.assp.or.kr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길 5 상록수보건소 3층 생명사랑센터
	시흥시 자살예방센터	031-316-6661	www.shhealth.go.kr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55 시흥시보건소 2층
가평군 자살예방센터	031-581-8881	www.gpmhc.com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5 가평군건강증진센터 1층	
강원	강원광역 자살예방센터	033-251-1970	www.gwmh.or.kr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06-5
	강릉시 자살예방센터	033-651-9668	www.gnmind.com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13번길 6 동부도시보건지소 1층
충남	천안시 자살예방센터	041-571-0199	www.cancaspi.or.kr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29 구보건소 2층
	충남광역 자살예방센터	041-633-9183~5	www.chmhc.or.kr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별관동 3층
전북	전북광역 자살예방센터	063-251-0650	www.jbmhc.or.kr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7 아이원빌딩 4, 5층

자살예방 관련 기관

지역	센터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서울	한국 자살예방협회	02-413-0892	suicideprevention.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5번길 24 유니팜타워 9층
	한국 자살예방센터	02-439-2384	www.자살예방.com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4동 377-45
	한국 생명의전화	02-763-9195	www.lifeline.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3-8번지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070-8749-2114	www.lifehope.or.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9길 5 1층
	생명나눔 자살예방센터	02-735-10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22 대성스카이렉스 101동 305호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02-318-3079	www.3079.or.kr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노원구노인 자살예방센터	02-948-0754	www.ndsp.kr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3동 321번지 사슴아파트 1단지
	서대문구노인 자살예방센터	02-363-3119	www.i-snsp.or.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117-3번지
부산	부산 생명의전화	051-804-0896	www.bsllifeline.or.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608-1 신우빌딩 4층
대구	한국자살예방센터 대구경북지부	070-7758-8898	cafe.daum.net/KSPAK	-
	대구 생명의 전화	053-475-9193	www.dglifeline.or.kr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49길 25
인천	인천 생명의전화	032-438-9190~1	www.iclifeline.or.kr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73 인성빌딩 3층
광주	광주 생명의전화	062-232-9192	www.gjulifeline.or.kr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60
울산	울산 생명의전화	052-265-5570	www.ulsanlifeline.or.kr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91-1 삼성빌딩 5층
경기	고양시노인 자살예방센터	031-969-7784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49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지역	센터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경기	일산종합사회 복지관 자살예방센터	031-975- 3322	www.ilsanwelfare. or.kr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54
	이천시노인 자살예방센터	031-637- 2330~1	www.imhc.co.kr	경기도 이천시 중일동 이섭대천로 1119 상공회의소 2층
	부천 생명의전화	032-325- 2232	cafe.daum.net/ bclifeline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145-2 네이버시티빌딩 9층
	수원 생명의전화	031-237- 3120	www.holyhouse.org/ suwonlifeline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80 정연메이저빌딩 지하1층
	고양 생명의전화	031-901- 1391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75-6 3층
	안양 생명의전화	031-383- 9114	-	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266 샤르망오피스텔 8층
충북	충주 생명의전화	043-842- 9191	-	충청북도 충주시 관아1길 21
전북	전주 생명의전화	063-286- 9192	www.jeonjulifeline. or.kr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31-6
경북	포항 생명의전화	054-252- 9177	cafe.daum.net/ ph91line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1가 74-39 2층
경남	경남 생명의전화	055-321- 9195	www.gnlife.line.or.kr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 69번길 15 대명빌딩 4층
제주	제주 생명의전화	064-744- 919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 15 제주기독교선교회관 5층

연도별 주요 연구용역 목록

연구목록

연번	연구명	년도	연구기관	책임 연구원	연구 주체기관
1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	2004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익섭	보건복지부
2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분야별 사례관리사업의 연계체계 구축	2006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	고일선	보건복지부
3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직무분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2007	단국대학교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오진주	보건복지부
4	의료급여 장기이용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	2007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	김의숙	보건복지부
5	의료급여사례관리 효과분석 I	2007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신영석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6	의료급여사례관리 효과분석 II	2008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신영석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7	의료급여 관리인력 개발 개선 방안	2008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원섭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지원단
8	의료급여사례관리 기획 및 지침개발	2008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	김의숙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지원단
9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수준 조사	2009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진주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지원단
10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2009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지원단
11	의료급여 제도변화에 따른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및 건강실태	2009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진주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지원단
1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사례관리 방향	2009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김의숙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지원단

연번	연구명	년도	연구기관	책임 연구원	연구 주체기관
13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례관리 요구도 측정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분석	201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양희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지원단
14	의료급여 패널데이터 구축에 관한 연구	2010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지원단
1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운영 및 평가체계	2010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김의숙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지원단
16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지표개발	2011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김진수	보건복지부
17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별 중재방안 연구	201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양희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지원단
18	의료급여 재정절감에 효과적인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연구	2011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임지선	보건복지부
19	효율적인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중재방안 개발 연구	201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양희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20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실태분석	2011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신형웅	보건복지부
21	의료급여 사례관리 수행 및 평가개선 연구	2012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현주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지원단
22	의료급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2013	서울대학교	김진현	보건복지부
23	의료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방안	2013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신현웅	보건복지부
24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의료이용 실태에 대한 연구	2014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황도경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지원단
25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입원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2015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황도경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지원단
26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2015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고 영	의료급여사례 관리사업지원단
27	의료급여관리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2016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지윤	보건복지부

2018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발행일 2018년 1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전 화 : 02) 3495-2913 / 팩스 : 02) 521-2624

홈페이지 : www.mohw.go.kr (보건복지부)

www.macmc.or.kr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